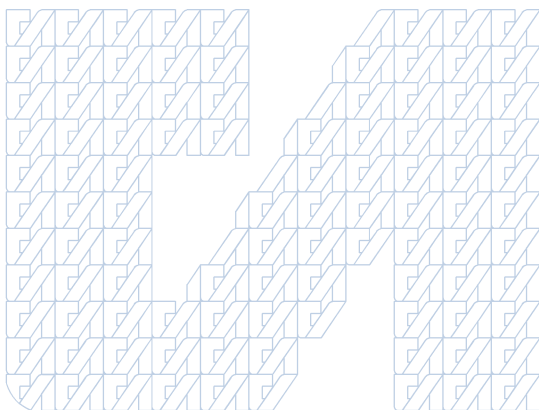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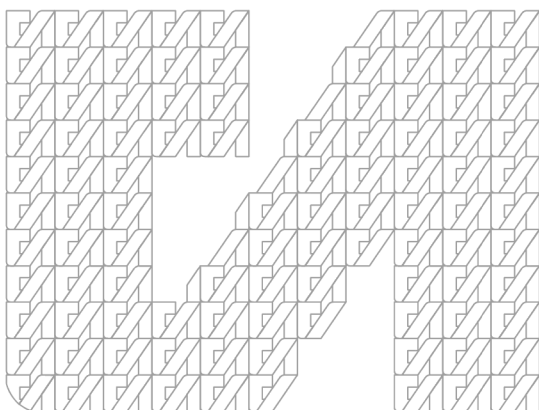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최성은 외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최성은 외



연구책임	•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자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서환석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비상임	• 윤성일 /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연구지원	• 안제현·남병호 / 세종연구실 조사원 • 류형원 / 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GIS 협조)

정책연구 2023-5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 042) 530-3500 팩스 : 042)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디자인하우스 바꿈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 연구 배경과 목적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 역할 찾기

-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 제시하고자 함
 - 2022년 5월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에서는 인구정책 청사진으로서 “인구정책 완화정책 ⇒ 적응정책 ⇒ 기획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영역인 적응과 기획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음(머니투데이, 2022년 5월 2일자)
 - 적응과 기획정책이란, 미래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인구정책을 의미함

저출산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세종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인구감소 위기에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세종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대안 제시
 - 세종시가 갖는 합계출산율 1위의 상징성은 비단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의 희망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합계출산율 감소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완화 정책을 제시함
-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 모색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 강조
 - 세종시를 포함한 전 지역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체계 제시

- 저출산 위기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시각의 교차점 모색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원칙과 전략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아,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냄
 - 지역 개인주의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양육미혼한부모 지원 등)함으로써 지역 간 무분별한 인구경쟁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① 세종시만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②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설계하여, 중앙정부와의 공동해법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부 목적 ❶: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 세부 목적 ❷: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기획·완화 정책 아이디어 제시
 - 세부 목적 ❸: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응·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양육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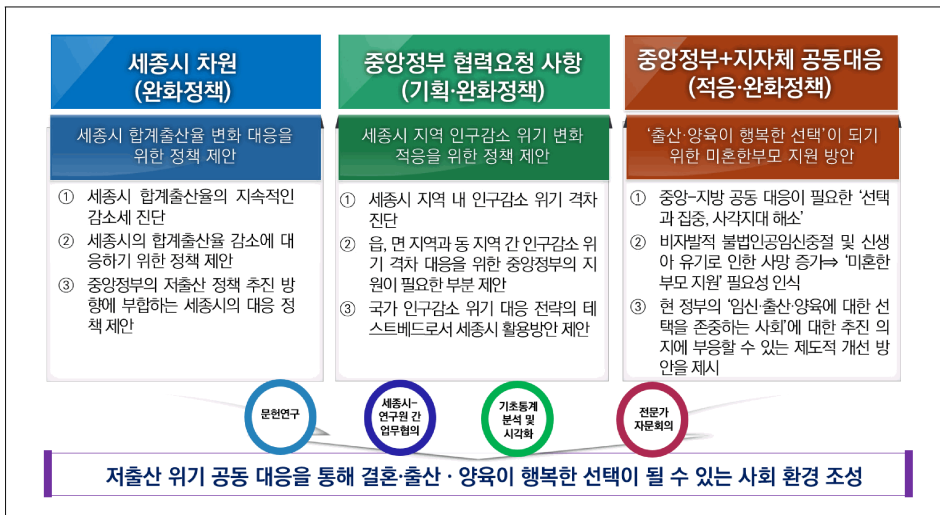
■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 추진 방식의 차별성: 인구정책 유형에 맞춘 옴니버스 형태 구성

- (옴니버스 형태의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각각의 장별로 정부의 인구정책 3가지 유형, ‘완화, 적응, 기획’을 고려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의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구성과는 상이한 구성으로 추진되어, 주제별 범위가 크고 다양함
 - 이에 따라 기존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의 정책 제안 사항을 적극 활용하였고, 선행연구에게 제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진단을 추진하였음. 따라서 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근거 및 분석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힘

- (세종시-대전세종연구원 간 협업의 결과물) 세종시(단체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규제혁신담당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등),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2023년 2월)에 따라 일부 인구이동 현황 자료에 대한 충청지방통계청의 분석 지원이 이루어짐



[연구 세부 목적별 주요 내용]

■ (정책 제언) 세종시 합계출산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 (세종시 차원) 출산지원(출산축하금)에 대한 차등적 지급 방안 검토 필요

- 출산지원(출산축하금) 둘째아부터 지급액 확대 또는 인접 지자체(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금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함
 - 출산 지원의 방식은 반드시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다만,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 결정에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세종시 차원⇒ 중앙정부 공동 대응)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검토 필요

- 아빠 장려금(「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나 공무원은 제외 대상임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고, 자녀도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신청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180만원),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의 공동 대응 필요 사항)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시행'을 통해 출산의도가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다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므로,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
 - 세종시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저출산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물론, 해당 제도 적용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첩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 대상 적용 시 지원 내용을 일반 시민과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차원) 적극적인 경력단절 해소로 출생-돌봄-교육-노동의 생애전반 환경의 공정성 제고**

- 현 정부는 출생-돌봄-교육-노동 생애전반 환경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인구정책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해소는 이것의 주요한 전략이자 목표임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활성화 추진과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을 통한 근로환경에서의 공정성 제고
 - 세종시에서 현재 시정 4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지향하는 바는, 세종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세종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대표 사업계획의 하나임. 세종시 관내에서 기존 제도(가족친화인증 등)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최성은 외, 2023)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신설·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사업은 세종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운영 중이므로, 관련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 우수 사례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중앙-지자체 공동)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생애 전 주기적인 지원 강화 필요**

- 첫아이 출산연령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임신(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시: 국가 지원에 세종시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난임 여성 중 건강보험 횡수 소진자가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후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다자녀 또는 다태아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 검토 필요
- 높은 교육열을 고려한 출산장려책 마련 검토 필요(예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발전특구 혜택)
 - 2022년 기준, 자녀 1인당 사교육비 평균 금액,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4위 차지(41.8만원, 전국평균 41만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사교육비를 고려하여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중앙-지자체 공동) 세종시를 다태아 출생과 다둥이 양육에 있어 최적의 도시로 만들기

- 다둥이 돌보미 지원 사업
 - 난임증가로 인하여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다태아임신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다둥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사회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국가차원에서 다태아 관련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지원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출산전후 휴가가 30일 더 길게 부여되는 것일 뿐, 다둥이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서비스는 찾기 어려움
 - 이에 다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최대 40일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자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는 산후조리기에 국한되지 않음. 따라서 그 기간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까지 고려한 생애 전 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다태아 출산에 따른 출산크레딧 확대 및 난임치료 및 시술 의료특구 조성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중앙-지자체 공동) 국정과제 + 시정 4기 단체장 공약 + 정책 아이디어 연계

- 교육발전특구 조성 시 다동이 또는 다자녀 가구와 연계된 혜택 마련
- 세종미래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추가(청년 부부, 다자녀·다동이 가정 지원 방안 연계)
 - 3장에서 제안한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으로 다자녀·다동이 가정을 위한 특화된 **마을돌봄지원** 참조(본 보고서 74~76쪽 참조)

□ (세종시 차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출범 10년이 넘어서면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유형의 분화현상이 나타남. 대도시권 지역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경우 젊은 세대의 일자리, 교육 등으로 인한 유입이 많고 비/미혼율이 높은 곳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임
 - 지역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경청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년들의 인구이동을 관찰해야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정책 제언)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운영(중·장기적 관점)

-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그 재원의 조달과 활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의 국가적인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인구불균형과 인구감소 위기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구 분산을 위한 적극적인 완화, 기획, 적응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적극적 관점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각 지역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은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함
- 다만, 이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기초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 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세종시 배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임

□ 지역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 (대 정부 건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00분의 10(광역지원계정 B)’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할 중앙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 드림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시기·행정체계의 특수성,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설치 목적 달성,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먼저 할당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어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이 세종시에 배분될 경우,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으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과 (가칭)광역인구미래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조망해보고자 함
 - 세종미래마을조성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도농복합도시 인구감소위험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함

□ 농촌 정주환경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한 과제

-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은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전략 중 ‘기획정책과 적응 정책’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농촌 정주환경 모델 설립을 위한 다부처 통합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세종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에서 세종시 토론자료의 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미래 마을’을 제시하였음

- 세종시, 새마을회, 농협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 철거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빈집 별착을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건의, 빈집법 통합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래 농촌마을 모델 구축과 확산을 강조함

○ 국가 차원의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시작 모델로서의 확장

- 새마을회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 빈집정비의 선도 모델이 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새 미래 마을 운동”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예측되는 미래에 맞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며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속성을 반영하여 인구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주안점 제안

- (개념정의) 빈집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운동(movement)
- (의제 1) 세대 간 협력으로 마을 돌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1인 가구 돌봄, 고독사 예방 등
- (의제 2) 안전한 농촌 지역 만들기
- (의제 3) 다태아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 강화
- (의제 4) 워케이션 + 농촌 관광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 (재원조달 방안: 단기적)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배분받을 경우,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모델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적)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운용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 농림부(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행정안전부(보행환경개선, 마을기업 육성 등), 국토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문체부(국토여행 활성화 사업 등) 등이 있음
- 각각의 부처별 공모가 개별적·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재활성화 계획의 적기 지원에 한계
- 특히, 도농복합도시이자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경우, 도심 지역 외곽의 농촌은 인구소멸이 진행되어도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 **추진체계 제안: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 지역의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위기에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차원에서의 대안
- (추진체계 제안) 시·도연구원 활용한 전략기획 조직 운영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추진체계 마련
 - 지역 모니터링(합계출생률, 인구유입·유출, 생활인구, 체류인구, 인구 감소지역 실태조사 등), 단기 사업 추진, 중장기 전략 마련(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등), 기초 자치단체 지원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재정적 차원) 국비 및 지자체 자체 재원 매칭 활용
 -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세종시를 포함한 시·도지역에 배분함으로써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 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므로 아래 표-[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와 같이 제안하는 바임
- (기획+완화+적응정책 추진체계)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활용한 중앙-지방 공동 대응은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생활인구와 인구이동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축적하고, 출산 결정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시와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이 모든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구 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안)
근거 법·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 설치·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공공기관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도 연구원에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외에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부재. 센터 설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지원, 관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인구미래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상향식 전략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
재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0년 후 일몰)	국비(지역소멸대응기금 등) + 시비 매칭
차별성	하향식. 인구감소 지정 지역 한정.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초점. 1개 공공기관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상향식. 제외 지역 없음.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자연적 증가(출생)와 감소(사망, 고령화)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 가능

■ (정책 제언)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사업 유형별	문제점(디커플링 현상)	개 선 방 안
① 미혼모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은 여전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가진 • 미혼한부모의 경우,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금부행정의 시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신창주의 제도의 한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임신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상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잘 자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시설임소자 중심의 상담·의료 지원의 한계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일원화, 홍보 • 읍면동 주민센터 비공개 안심상담 창구 개설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교육(개인정보보호 등) 강화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거주기간 연장(임신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안정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의 장애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밖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상담 의료 및 지원 정책 마련
②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미혼모·부 지원사업을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지원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청소년에 한해 초기 지원이 강화되었음 • 출생신고도 양육지원에 기본 요건이나 출생신고가 친자부인소송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임소를 하더라도 태이상 이용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퇴소통보를 받기도 함 • 이용 대상 조건이 이용의 책임성을 풀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용통성이 없어 실제 돌봐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를 더욱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보면, 20대 이상자 비중이 크므로, 청소년 중심 지원 체계가 시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지원 대상자 연령층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출생 미신고 미혼부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절차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민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 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필요(시설보호 및 복지서비스)

사업 유형별		문제점(디커플링 현상)		개 선 방 안	
③ 양육 및 지원	미혼한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거부, 자격요건의 미스매치, 지원체계 이탈 요인 산재, 시설 인프라 부족 또한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단계별로 기본생활지원(1차 지원 시설)과 공동생활지원(2차 지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3차 지원 시설)로 구분됨(2023년 10월 12일 <u>규칙 개정 이전 기준</u>). 1차에서 2차, 그다음 3차로 이동하면서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성이었음 그러나 시설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단절이 발생하며,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한부모 지원" 직접기관 추가 설치 및 역할 확대 양육 한부모 지원 요건의 소득수준 과감히 폐지 또는 중위소득 기준 조정(예시: <u>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u>) 양육 한부모 장애이동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시설 단계별 설치 확대 		
	④ 추가 제한: 미혼한부모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미혼한부모의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 양육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일·생활균형 지원 측면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 출생 이후 일주일 이내 지난 후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 이 시기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더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당사의 조부모와 함께 동거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추약기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양육 미혼모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강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입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모자 지원 강화를 통해 원가정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입양숙려제도 원칙 대한 질적 수준 제고 필요(상담과 교육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간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과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때 법적 분쟁 및 원수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여지가 크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⑤ 추가 제한: 미혼한부모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내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필요 			

자료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무드 자료)> 및 실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정책 제안을 담음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①: 미혼모보호 측면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p>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p>	<p>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제1항은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라는 특례조항이 있음. 그러나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가 아닌,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기 위한 특례조항일 뿐, 양육 미혼한부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님 • 제5조의2제2항에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에 대한 특례를 미혼한부모를 고려하여 더 두텁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제4조(정의)에 2호를 추가하여,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직계 존속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세대를 이룬 모자 또는 부자 기구를 포함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구분	현행	제안사항
<p>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p>	<p>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2023. 4. 11.> 1. 출산지원시설: 생략 2. 양육지원시설: 생략 3. 생활지원시설: 생략 4. 일시지원시설: 생략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2023년 4월 시설유형이 가능 중심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이 재편됨. 그러나 '미혼한부모'에 정책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미혼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를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미혼모의 경우, 임신초기부터 시설 거주 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또는 기간 연장 조치 필요(예: 미혼모의 경우, 출산지원 시설 입소 시 임신초기부터 우선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 설치·운영하여 한 지역 내에서 유형별 시설을 임신·출산·양육시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예: 제19조의2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할 것)
<p>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p>	<p>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입소 중심의 미혼한부모 지원의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이 '노력하여야 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예시: '주거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본인 및 자녀의 장애나 소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②: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생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학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제12조의 ②항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와 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 제12조의 ③항 (개정안)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추가적인 복지 급여 지급 제공 시 아동의 연령을 더 높이기나(예시: 5세 이하 → 8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예시: 34세 이하 → 49세 이하)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③: 양육 및 자립에 관한 사항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간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기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임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초기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임신 초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 입소자 외의 미혼모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④: 미혼한부모 교육 관련

[미혼한부모 교육관련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양양특별법 제13조(임양동종의 요건 등)	<p>제13조(임양동종의 요건 등)</p> <p>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양의 동되는 아동의 출생일부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p> <p>※ 임양숙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p>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가 어려운 미혼한부모의 경우, 입양 등의 진 숙려기간을 충실히 보내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임양숙려기간 모가지원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예시: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양육을 위한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	행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동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특례법 제13조 제1항) • 지원대상: 미혼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⑥: 추가 제언(미혼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 관련
[추가 제언을 위해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언)]

구분	현	행	제안 사항
추가 제안 사항	<p>「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기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p> <p>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p> <p>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개정안)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혼모 등 임신,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 (정책 제언)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안

▶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세종시 지원 ⇒ 중앙정부 공동 대응)

1. (중앙-지자체 공동) 세종시 특성상 고려한 유연한 정책 보완 시도. "자녀를 낳고 양육을 희망하는 가족에게 지원을 확대" ⇒ 예시: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미 급여 제도, 다태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최적의 도시 세종시 만들기, 양육 미혼 한부모와 자녀 직극 지원 등
2. 세종시 직간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 등 (중앙-지자체 공동)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생애 전 주기적인 지원 강화 필요: 임신(전) 단계 지원 강화, 산후지원 강화,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등
3. (중앙-지자체 공동) 국장과제+ 시장4기 단계장 공약+ 정책아이디어 연계(예: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확산)
4.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중앙정부 협력요청 사항)

1. (재정지원)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가칭)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재정 설치 및 운영(중·장기적 관점)
2. (재정지원)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3. (재정지원 이후 사업안 제시) 농촌 정주환경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확산* 및 새 미래 마을 운동** 추진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 세종시 토론회로 인건·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미래마을 제시
 - 지방정부, 세마을, 동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활거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빈집 별착을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 (개념정의) 빈집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운동(movement)

** (개념정의) 빈집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운동(movement)
 - (의제 1) 세대 간 '협력'으로 마을 만들기
 - (의제 2) 안전한 농촌 지역 만들기
 - (의제 3) 데이터(가칭)의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 강화
 - (의제 4) 위계이션 + 농촌 관광 연계로 통한 생활연구, 영인 활성화 등

4. (추진체계) 인구감소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 마련: 시도연구원을 활용한 (가칭) 광역미래연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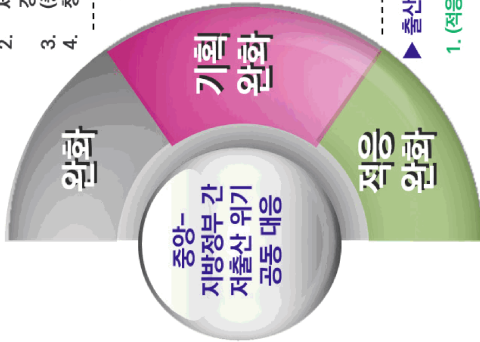
▶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국가차원의 제도 개선 ⇒ 중앙-지방 공동대응)

1. (적응+안화 정책의 대상: 양육미혼한부모)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누구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보호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직접 양육(생기전 보호)

▶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제안(광역미래연구전략센터를 활용한 중앙-지방 공동대응)

2. (기회+양육+적응정책 추진체계)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분석 추진체계 확립

-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강화(생활연구, 인구이동 등)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시행
- 출산 결정 지원/모류/거주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 세종시, 충청시범동계정, 대전시범연구결과와 협력 연구 추진



[(정책 제언 종합)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언]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저출산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세종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5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1) 공간적 범위	9
2) 시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3
2장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17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17
1. 개요	17
2. 세종시 인구 현황과 주요 특징	18
3. 세종시의 출범 이후 합계출산율의 변화	20
2절 진단: 세종시 합계출산율 감소세 원인은 무엇인가?	21
1. 개요	21
2. 모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펴본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원인	21
1) 세종시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알아보기	21
2) 여성 청년 인구이동 살펴보기(분모요인)	27
3)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변화 살펴보기(분모요인)	31
4) 혼인율과 신혼부부 수 변화 살펴보기	32

3. (사례 비교) 전남 영광군, 대전광역시	36
1)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1위 원인 분석	36
2) 대전광역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 증가 원인 분석	38
3) 사례 검토의 시사점	48
3절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제안	51
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확대와 강화	51
2. 세종시 출생아수 감소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53
3장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안	59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59
1. 개요	59
2.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로서의 세종시 다시 보기	60
2절 진단	65
1.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현황: 소멸위험지수	65
2.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지역 내 불균형 지표 “빈집 증가”	70
3절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획·완화정책 제안	73
1.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73
1)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운영(중·장기적 관점)	73
2) 지역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73
2. 세종미래마을조성 사업 시범 실시 후 전국 확산 추진	74
1)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개요	74
2) 확산 추진을 위한 과제	76
3. 추진체계 제안: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78
1) 설치·운영의 필요성	78
2) 추진 방안	78
4장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83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83
1. 개요	83
2. 미혼한부모를 둘러싼 이슈 점검: 왜 중요한 정책 대상인가?	84

1) 미혼한부모 현황: “미혼한부모 연령집단별 지원 체계 강화 필요”	84
2) 베이비박스 운영 실태	88
3) 인공임신중절 실태	91
4) 국내외 입양 현황	94
2절 진단: 미혼한부모 지원 정책	98
1. 미혼한부모 지원 현황	98
2. 미혼한부모 지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	106
1) 진단 개요	106
2) 사업 유형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	107
3) 법·제도 측면에서의 충분성 검토	110
3절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114
1. 사업유형별 정책 개선 방안	114
2. 사업유형별 법률 개정안 제안	119
1) 개정안 제안의 의의	119
2) 사업 유형별 개정안 제시	119
3.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127
5장 결론	133
1절 연구 요약	133
1.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측면	133
2. 연구의 차별성 측면	134
2절 정책 제안	136
1. 세부 목적별 정책 아이디어 요약	136
1)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136
2)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안	140
3)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145
2. 정부의 인구정책 유형별 정책 제안	153
참고문헌	155
부 록	157

표 차례

[표 1-1] 세종시 소멸위험지수(2022년 기준)	7
[표 1-2] 연구의 흐름	11
[표 2-1] 세종시 인구 현황과 주요 특징	19
[표 2-2] 통계청 출생 통계 작성 개요 일부 발췌	22
[표 2-3] 분모요인(세종시 15~49세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증가율 변화 추이	24
[표 2-4]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을 위한 기준(최성은 외, 2019)	24
[표 2-5] 세종시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2012~2022년)	26
[표 2-6] 세종시 신혼부부수와 출생아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2015~2021년)	35
[표 2-7] 분모요인(대전시 15~49세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증가율 변화 추이	40
[표 2-8] 대전시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2012~2022년)	41
[표 2-9] 최근 5년간 대전으로의 전입한 여성(15~49세)의 이주 사유	45
[표 3-1] 3장 주요 내용과 제안 배경	59
[표 3-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광역시·도	61
[표 3-3]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A, B 별 세종시 제외 사유	62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규모	63
[표 3-5]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2년)	65
[표 3-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68
[표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69
[표 3-8] 유형별 빈집 현황	71

[표 3-9]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개요	74
[표 3-10] 시범마을 현황	76
[표 3-1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79
[표 4-1] 제4장 주요 내용별 세부 사항	84
[표 4-2] 해외입양송출국 순위(2020년 기준)	95
[표 4-3] 해외 입양 발생 유형	97
[표 4-4]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중 미혼한부모 관련 내용	99
[표 4-5]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102
[표 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103
[표 4-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103
[표 4-8] 법률 검토를 위한 유형 구분	110
[표 4-9] 「한부모가족지원법률」 점검 결과	112
[표 4-10]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117
[표 4-11]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120
[표 4-12]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122
[표 4-13]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4
[표 4-14] 미혼한부모 교육관련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5
[표 4-15] 추가 제안을 위해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6
[표 4-16]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예시	127
[표 5-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143
[표 5-2]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145
[표 5-3]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147
[표 5-4]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149
[표 5-5]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0
[표 5-6] 미혼한부모 교육관련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0
[표 5-7] 추가 제안을 위해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1

[부록 표 1-1]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 현황	157
[부록 표 1-2] 대전시 주 출산연령대 여성인구 및 전입사유 및 사유별 비율	158
[부록 표 1-3] 양육 미혼한부모 가구 관련 법·제도 현황	158

그림 차례

[그림 1-1]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변화(2012~2020년)	4
[그림 1-2] 연구의 주요 구성과 내용	12
[그림 2-1] 전국 VS.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0
[그림 2-2]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 증감률(%p) 변화 추이	20
[그림 2-3]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23
[그림 2-4] 세종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27
[그림 2-5] 세종시 15~49세 여성의 시·도 간 전입과 전출 변화	28
[그림 2-6] 세종시를 떠난 20~39세 여성들의 전입지역(2013년 vs. 2022년)	29
[그림 2-7]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2013년 vs. 2022년)	30
[그림 2-8] 세종시 출산순위별 출생 변화 추이	31
[그림 2-9] (참조) 전국 혼인율 변화	32
[그림 2-10] 세종시 출생건수 및 혼인건수 연도별 변화추이	33
[그림 2-11] 충청권 신혼부부 수 변화추이(2015~2021년)	34
[그림 2-12]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과의 상관관계(2015년 기준)	34
[그림 2-13] 전남 영광군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36
[그림 2-14] 전남 영광군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 분석 결과(2012~2021년)	37
[그림 2-15] 전국 vs. 대전시 조출생률 증감 추이	38
[그림 2-16]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39
[그림 2-17] 대전광역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40

[그림 2-18] 대전으로 이주한 15~49세 여성의 전입 사유 분석 결과(2021~2022)	43
[그림 2-19] 대전·세종 신규 분양세대수 변화(2020.1.~2023.6.)	43
[그림 2-20] 전세가격지수(2014.12.~2023.04.)	44
[그림 2-21] 대전으로 이주한 세종시 15~49세 여성의 전입 사유 분석 결과(2021~2022)	44
[그림 2-22] 대전시 주 출산 연령대(25~39세) 여성 인구의 전입 사유 분석	47
[그림 2-23] 전국, 세종, 대전의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변화 추이(2013~2022년)	48
[그림 2-24] 세종시 합계출산율과 정책적 주요 이슈 변화	52
[그림 3-1] 세종시 읍면동별 소멸위험지수(2013년 ⇒ 2022년) 변화	66
[그림 3-2] 세종시 9개 면 지역 65세 인구 및 20~39세 여성 인구 변화 추이 (2012~2022년)	67
[그림 3-3] 세종시 빈집 분포 및 밀집 현황	72
[그림 3-4] 세종미래마을 추진 구상도	75
[그림 4-1] 연령별 미혼모부 현황(2015, 2017, 2019, 2021년)	85
[그림 4-2] 전국 미혼모부 연령별 현황(2021년 기준)	86
[그림 4-3] 연도별 미혼모·부 현황(2015~2021년)	86
[그림 4-4] 시·도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수 현황(2021년 기준) ·	87
[그림 4-5] 연도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수 현황	87
[그림 4-6] 연도별 베이비박스 위기영아 보호 수	88
[그림 4-7] 연도별 베이비박스 보호 후 진로	89
[그림 4-8] 연도별 주사랑공동체 위기상담 건수	89
[그림 4-9] 2022년 기준, 주사랑공동체 내방 위기임산부 연령대 및 혼인상태(단위: %)	90

[그림 4-10] 전국 출생아 수 변화추이와 임공임신중절 건수	91
[그림 4-11] 인공임신중절 경험 당시 혼인상태(단위: %)	92
[그림 4-12] 만15~49세 여성의 인공임신수술 주된 사유 (복수응답, 단위: %)	93
[그림 4-13] 국내외 입양 현황	94
[그림 4-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 현황	104
[그림 4-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104
[그림 4-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105
[그림 4-17]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129
[그림 5-1] 연구 세부 목적별 주요 내용	133
[그림 5-2]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152
[그림 5-3] (정책 제언 종합)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언	153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 역할 찾기

-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 제시하고자 함
 - 2022년 5월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에서는 인구정책 청사진으로서 “인구정책 완화정책 ⇒ 적응정책 ⇒ 기획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영역인 적응과 기획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음(머니투데이, 2022년 5월 2일자)
 - 적응과 기획정책이란, 미래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인구정책을 의미함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변화를 고려한 중앙-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

- (청년 인식의 특징)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에 있어 남녀 간 인식의 성별 격차, 결혼보다 낮은 자녀 출산 의향을 보이며,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중
- (①향후 결혼 의사) 국무조정실이 2022년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결혼 의사 있다'라고 응답함. 미혼 남성의 결혼 의사가 미혼 여성보다 높음

- 미혼남성 응답자의 79.8% > 미혼여성 응답자의 69.7% ⇒ 10.1%p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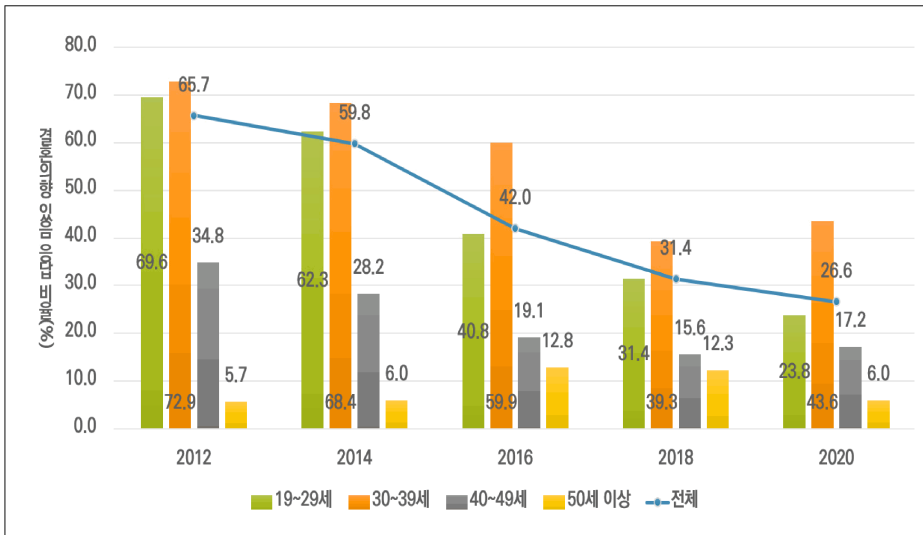
○ (②향후 자녀 출산 의향)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응답자의 63.3%가 '있다'라고 응답함. 결혼 의사보다 출산 의향은 좀 더 낮은 응답률을 보임. 미혼 남성의 자녀 출산 의향이 미혼 여성보다 높음

- 남성 응답자의 70.5% > 여성 응답자의 55.3% ⇒ 15.2%p 차이

○ (③미혼여성의 결혼 의향) 2020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의 결혼 의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9~29세 미혼 여성의 인식변화를 우려할 필요가 있음

-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결혼 의향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여성 응답자 전체 중 26.6%에 그침(2020년 기준)

- 주 출산 연령대 중 하나인 19~29세 미혼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23.8%에 그침(2020년 기준)



[그림 1-1]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변화(2012~2020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여성가족패널조사>,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 데이터 재구성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의 필요성

○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의 필요성**

-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인구 소멸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됨. 수도권 인구 집중(2019년 기준, 50.2%)은 경제적 집중 현상(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 72% 이상 차지)을 발생시켜 지역인구 감소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는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국가와 지역 사회 수준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구감소 위기는 청년의 이동에 대한 과도한 지역 간 경쟁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제로섬 게임'에 그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함

○ **따라서 지역 간 낭비적인 대립과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

○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함. 주거, 교육, 일자리, 보건 등 종합적 정책분야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자원 조달과 정책지원이 지역사회에 더 착근되어 유용한 정책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공동 대응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함

2) 저출산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세종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세종시 차원의 기초연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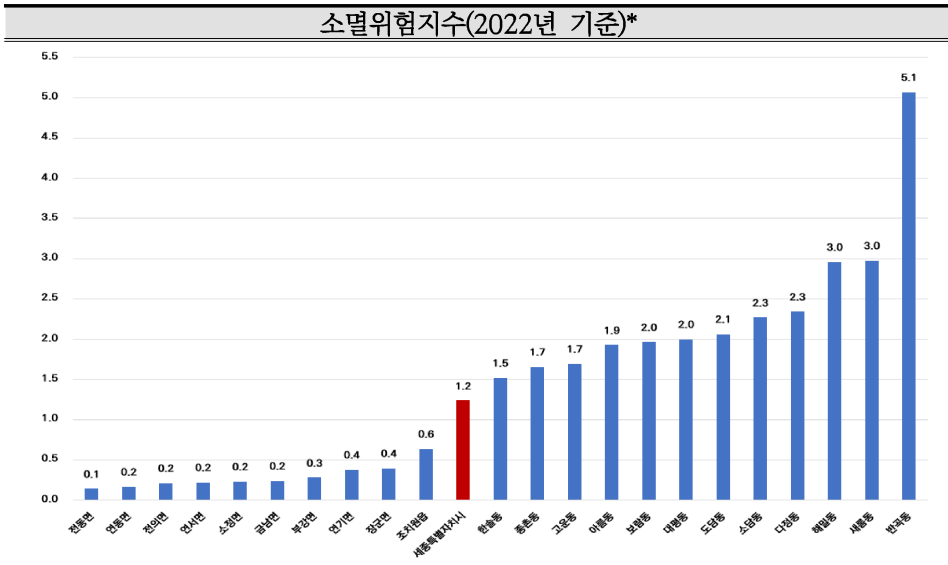
- 국가적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논의 과정의 기록이 필요함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태생적 목적과 위상을 가진 도시임. 이에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담론 활성화에 기여
- 세종시 단체장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시 안건으로 건의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분기별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
- 또한, 세종시는 2023년 9월 2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출산 감소세에 대한 공동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제안함으로써, 출산 감소와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에 필요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 방향 마련

- 세종시에 필요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정 4기 핵심 공약을 활용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실제,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행정시’조차 없는 유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지역이자, 지역 내 소멸위험지수의 격차가 큰 도농복합도시이므로, 중·장기적 인구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함
- 그러나 세종시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 재정적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함. 이것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에 기인한 결과임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표 1-1] 세종시 소멸위험지수(2022년 기준)



주*: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재구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① 세종시만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②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설계하여, 중앙정부와의 공동해법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의 의의) 인구감소 위기에 ‘비교적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본래적 목적과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세종시의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수행 과정 상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정책설계과정에 있어 단체장의 정책 추진 의지(시정 4기 공약 등)를 반영하는 정책연구 과정을 포함함
- (단층제 행정체계를 고려한 정책제안)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행정 체계를 가진 인구 38만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제도의 도입과 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특수성을 가짐
- 이러한 단층제 행정체제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있어 세종시에 적용되는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한 정책 건의안 작성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 세종시를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3년
 - 다만, 자료별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에 따라 기준연도를 조정하여 제시함

3) 내용적 범위

- (연구의 구성) 각 장별 문제 제기에 맞춘 진단과 정책 개선 과제 제시
 - 본 연구는 세종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구성을 시도하여, 각각의 장별로 정책 건의 사항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인구정책 3가지 유형, '완화, 적응, 기획'을 고려한 정책 아이디어를 옴니버스 형태로 제시하고자 함
 - 완화정책: 인구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출산과 관련된 사업의 영역을 의미함.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아수의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임
 - 기획정책: 저출산·고령화라는 예측되는 미래에 맞춘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정책을 의미함
 - 적응정책: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속성을 반영하여 인구변동이 가져올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임. 적응정책은 완화 또는 기획정책과의 연계성을 통해 추진되어짐(이윤경, 2021)

□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세종시 차원의 완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세종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정책을 진단함
-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함
 -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세종시의 출산 완화 정책 아이디어 제안

□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기획·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설치한 세종시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완화정책을 제안하여, 국가의 인구 미래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진단
- 읍, 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인구감소 위기 격차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제안
 - 지역소멸대응기금 대상지역으로서의 세종시의 적합성, 적절성 제안
 - (가칭) 광역인구미래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제안
- 국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전략의 테스트베드로서 세종시 활용방안 제안
 - 도농복합도시 인구위기 대응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활용 방안 제시
 -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및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건의

□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응·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양육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목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임
- 이러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지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미혼한부모 지원’을 선정함

- (선정 이유) 출산을 통해 인구 규모를 늘리려는 기초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한 반면, 비자발적 불법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유기로 인한 사망사건 등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함
 - 이것은 현 정부의 인구정책이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전략에도 부합함
- 이처럼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추진 의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1-2] 연구의 흐름

목 차	내 용
	서 론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p>
제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제안 배경):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왜 감소하는가?” • 원인 진단과 향후 과제 제언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시 지역 인구감소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언</p>
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제안 배경): “세종시는 인구감소 위기에서 안전한 곳인가?” • 진단과 향후 과제 제언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p>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제안 배경): “임신·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는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하는가?” • 진단과 향후 과제 제언 <p style="text-align: center;">결 론</p>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요약 • 정책 제언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연구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장별로 간략히 제시하는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의 주요 구성과 내용은 아래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연구의 주요 구성과 내용

□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이슈별 문헌 연구를 통한 차별적 전략과제 발굴
 - 정부 정책 변화(국정과제 포함) 및 법·제도 분석
 - 대내외 여건 및 타 시도 동향 조사 분석
 - 인구 및 저출산, 저출생, 한부모가족, 미혼모 관련 학술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적 한계(사각지대) 발굴
 -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연구(2018~2023년) 중 세종시 저출산, 출생, 인구, 가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선행연구의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분석

- ※ 대전세종연구원 발간 정책연구 및 수탁과제 목록(관련 키워드: 저출산, 출생, 인구, 가구)
- 세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22)
 - 세종시 사회조사로 본 1인 가구 정책지원 방안(2022)
 - 세종시 출생 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9)
 -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2018)
 -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2018)
 - 세종시 인구가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2018)

- (지자체-시정연구원 간 거버넌스 구축) 지속적인 세종시(단체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규제혁신담당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등),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진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인구정책 유형별 과제 발굴
- 기초통계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측정 및 시각화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및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GIS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 내용 보완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시 안건으로 제출
 - 세종시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공
- 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의 기초 정책연구자료로 활용
 -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인구정책 방향 수립 및 심층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2절 진단: 세종시 합계출산율 감소세 원인은 무엇인가?

3절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제안

2장

2장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1절 제언 배경 및 목적

1. 개요

- (세부 연구 목적) 제2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에 감소세가 지속되는 세종시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세종시는 인구이동과 합계출산율, 조출생률과 같은 지표에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광역시·도 중 8년 연속 1위. 전체 주민등록 인구수는 2013년 12월 기준 124,615명에서 2023년 4월 기준 385,825명에 이룸(세종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DB, 인출일: 2023년 10월 19일)
 -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감소 현상과 유사한 양상으로 세종시 역시 ‘합계출산율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함
- (차별성) 여기에서는 기존의 학술적 논문 등에서 다루어 온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들의 통계적 인과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각의 지표들의 변동 방향에 집중함
 - 이 과정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지표들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향후 통계적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설계의 포문을 여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활용이 가능함
- (주요 내용과 순서) 이 절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세종시의 인구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세종시 인구 현황과 주요 특징을 총인구수, 중위연령, 고령화 정도(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출생 지표(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학령인구 규모)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봄

- 둘째, 세종시의 출범 이후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이를 구성하는 여성의 각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의 증감폭을 살펴, 각각의 지표 변동 시기와 변화의 양상을 검토함
- 셋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변동 분석 결과의 준거집단으로서 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과 2022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증가 지역인 대전광역시를 선정함. 이를 통해 지역 간 합계출산율 수치 경쟁과 비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함
- 위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세종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함

2. 세종시 인구 현황과 주요 특징

□ 세종시 인구 현황의 특징

- 2023년 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85,825명으로 세종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통계청 보도자료(2020)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43만 명, 2030년 50만 명, 2050년 63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 2022년 기준 19~34세 세종시 청년인구는 총인구수 대비 17.3%(총인구 383,591명, 19~34세 인구 66,232명)를 차지하며 중위연령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37.8세(2020년 기준)로 나타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님
 - 그러나 세종시의 중위연령도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42.1세에서 2050년 50.9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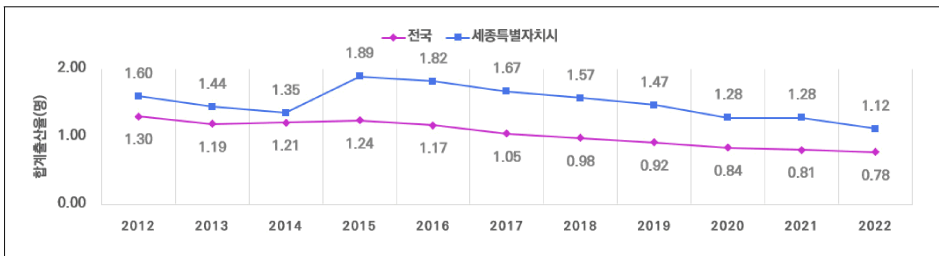
[표 2-1] 세종시 인구 현황과 주요 특징

구분	세종시	특징
인구수	385,825명 (’23.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 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19~34세 청년인구 총인구수대비 17.3%차지(’22년 기준, 66,232명)	
	’25년 43만명⇒ ’30년 50만명⇒ ’50년 63만명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	
중위연령	’20년 37.8세⇒ ’30년 42.1세⇒ ’50년 50.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중위연령 높아지고 있음.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낮음 • 세종 전체 37.8세(’20)(1st 젊은 도시 세종/전국 43.7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년 3만명⇒ ’35년 10만명⇒ ’50년 15만명 ’20년 9.2%⇒ ’35년 18%⇒ ’50년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 가장 낮은 도시이나 노인인구 증가세 • 유소년인구 1백명 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 증가율 2위 ⇒울산 447.2%, 세종 372.4%(2020년 대비 2050년) ⇒2031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질 전망(106.3명)
총부양비	’20년 41.0%⇒ ’35년 46.3%⇒ ’50년 72.4%	
노년부양비	’20년 13.0%⇒ ’35년 26.3%⇒ ’50년 49.7%	
유소년부양비	’20년 28.0%⇒ ’35년 20.0%⇒ ’50년 22.7%	
노령화지수	’20년 46.3명⇒ ’35년 131.7명⇒ ’50년 218.6명	
출생아수	3,209명(’22년)	
합계출산율	1.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출산율 광역시·도 중 1위이나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 감소세 • 인구 자연 증가율 점차 감소 전망 • 2020년 대비 2050년 유일하게 학령인구 증가할 도시 ‘세종
조출생률	8.5명(해당 시·도 1천 명당 명)	
자연증가율	’20년 0.65%⇒ ’30년 0.54%⇒ ’50년 -0.27%	
학령인구 (6~21세)	’20년 7만명⇒ ’35년 9만명⇒ ’50년 10만명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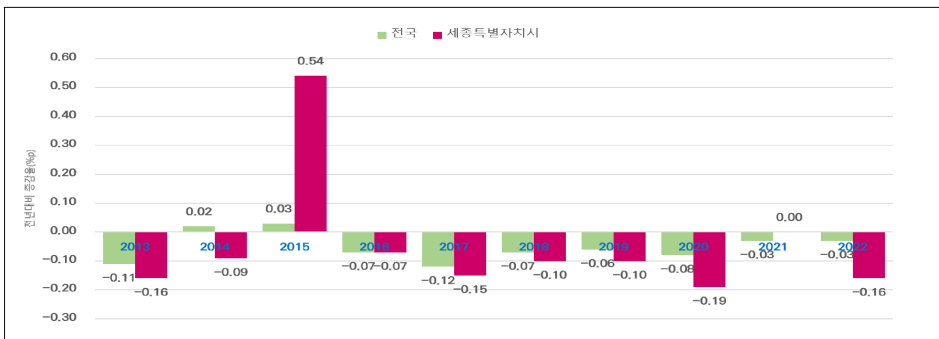
3. 세종시의 출범 이후 합계출산율의 변화

- 2012년 7월 출범 이후 합계출산율 변화 특징: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 지속적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에 합계출산율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2020년부터 세종시 ‘초저출산’ 지역 (TFR 1.28명)이 됨
 - 세종시는 2015년 합계출산율 1.89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22년 기준 1.12명에 그쳐 초저출산¹⁾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1.12명(2015년 대비 약 41%, 0.77명 감소)



[그림 2-1] 전국 VS.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그림 2-2]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 증감률(%p)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1) 합계출산율의 인구대체수준은 2.1명 이상임. 1.2~2.1명에 그치면 저출산 국가, 1.3명 미만의 경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됨

2절 진단 : 세종시 합계출산율 감소세 원인은 무엇인가?

1. 개요

- 이 절은 세종시 합계출산율 감소세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음
 - 첫째,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최성은 외, 2019; 최성은·최영준, 2022). 이에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하여,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견인한 주요 집단을 찾아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모의 연령별 출산율 분모요인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 청년 이동 현황을 진단함
 - 셋째, 출산순위별 출생 변화 진단하여 합계출산율 감소 원인을 규명함
 - 넷째, 혼인율의 변화를 추적하여 합계출산율 감소와의 연관성을 검토함
 - 다섯째,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1위(2021년)에 오른 전남 영광군 사례와 2022년 기준 유일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증가를 보인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여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을 비교·분석함

2. 모의 연령별 출산율로 살펴본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원인

1)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토크하기

모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연관성

- 합계출산율의 증감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대개 사회·경제적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공표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최성은 외, 2019; 최성은·최영준, 2022)

- 따라서 해마다 공표되는 합계출산율의 수치 변화를 정확히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출방식에 따른 세부 지표의 변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 자료에는 합계출산율의 용어 정의와 계산식이 안내되어 있음(통계청 보도자료, 2023)
 -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모의 연령별 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여, 합계출산율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함

[표 2-2] 통계청 출생 통계 작성 개요 일부 발췌

○ 연령별 출산율(年齡別出產率, 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특정 1년 간의 15~49세까지의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연령별 출산율 = $\frac{\text{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text{해당 연령별 여자 연앙인구}} \times 1,000$

○ 합계출산율(合計出產率, Total Fertility Rate : TFR)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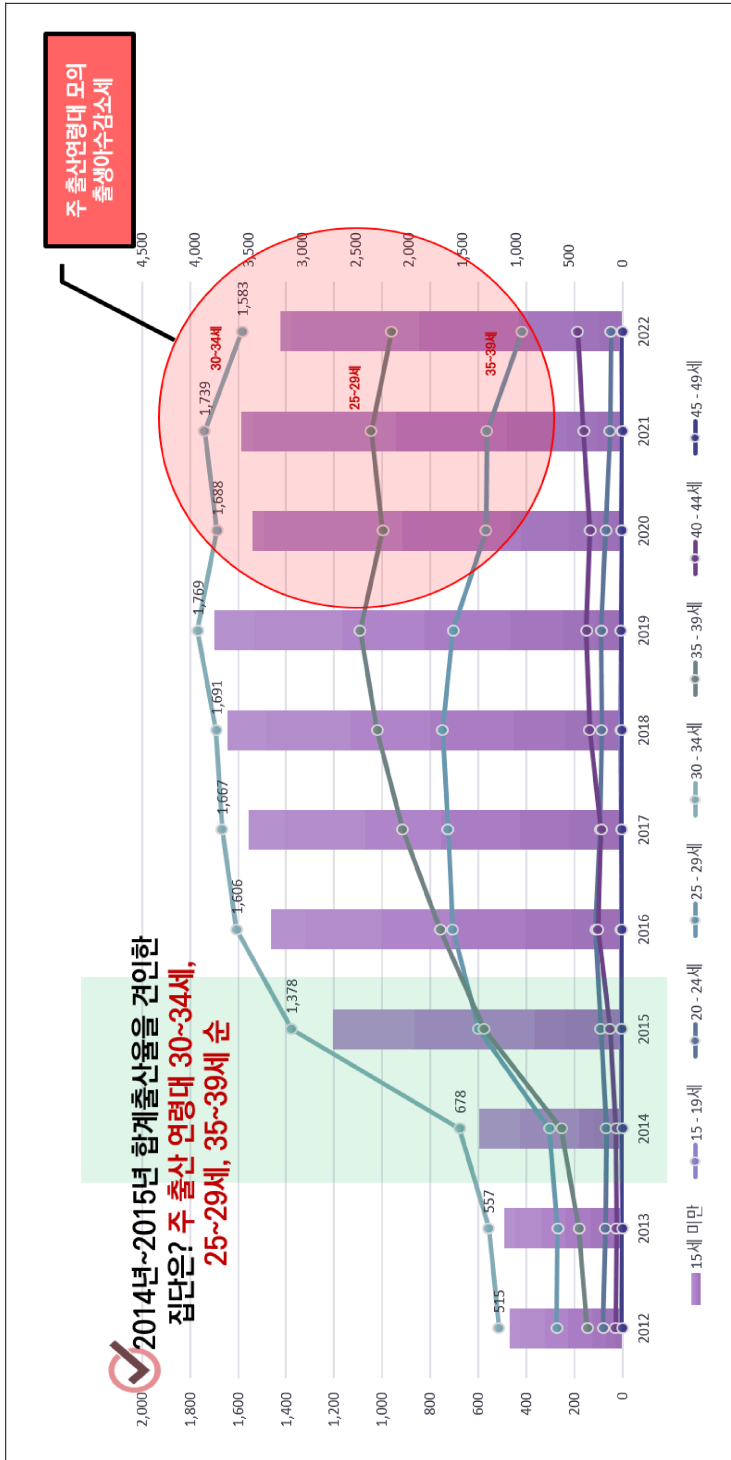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TFR) = $\sum_{i=15}^{49} (ASFR)_i \div 1,0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 세종시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변화

- 2014년~2015년 합계출산율을 견인한 집단은 30~34세, 25~29세, 35~39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연령대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주 출산 연령대'라고 할 수 있음
- (분자요인) 출생아수 변화 특징
 - 2014~2015년 주 출산 연령대 여성들의 출생아수 큰 폭으로 증가 (30~34세 > 25~29세 > 35~39세 순)
 - 2019년 출생아수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소 부침은 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출산에 대한 지연결정'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항임

-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와 특징



[그림 2-3] 세종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 (분모요인) 세종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증가율 변화 특징

-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전후 15~49세 여성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함(2014년 대비 2015년 13,131명 증가, 2015년 대비 2016년 12,514명 증가)
- 이후 전년대비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2-3] 분모요인(세종시 15~49세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증가율 변화 추이

연 도	인구 수(명)	전년대비 변화(명)	증가율(%)
2012	22,877		
2013	26,533	3,656	16.0
2014	33,024	6,492	24.5
2015	46,175	13,151	39.8
2016	58,689	12,514	27.1
2017	68,349	9,661	16.5
2018	77,993	9,644	14.1
2019	85,903	7,911	10.1
2020	90,905	5,002	5.8
2021	94,259	3,355	3.7
2022	97,367	3,108	3.3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각 년도 자료 재구성

세종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 방법

○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지표들

- 분자요인: 출생아 수 ⇒ 출생에 따른 자연증가
- 분모요인: 여성(15~49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사회적 이동의 결과

[표 2-4]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을 위한 기준(최성은 외, 2019)

구 분	분 자	분 모	방향성 유형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 증감률 방향(-)	-	유지(증감률=0)	A
	유지(증감률=0)	+	B
	-	+	C
	--	-	D
	+	++	E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 증감률 방향(+)	+	유지(증감률=0)	F
	유지(증감률=0)	-	G
	+	-	H
	++	+	I
	-	--	J

자료 : 최성은·유삼현(2019); 최성은·최영준(2022)

-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분석 결과 해석 방법
 -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을 위한 기준: 각 연령별 출산율의 분자값과 분모값의 변화량($\frac{\Delta x}{\Delta y}$)과 변동 방향성을 유형화함(최성은·최영준, 2022)
 -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의 인구수(Δy), 어머니 연령별 출생아수(Δx)의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두 변수의 증감변화 방향(-, +)에 영향을 받음

□ 세종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 결과 해석

- 세종시는 과거 출생아 수와 가임기 여성인구 수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 인구의 유입에 따른 증가율이 더 커서 연령별 출산율이 감소세를 띠는 경우도 있었음(E 유형, 2013~2019년)
- 그러나 2019년부터 해당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유입되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의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연령별 출산율 감소 C유형이 등장한 이래, 2022년의 경우 연령별 출산율 감소의 다른 유형인 A, B)유형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감소세를 만드는 원인이 보다 복잡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22년의 경우, 주 출산 연령대의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이 모두 감소 유형(A1, C1, D1³)으로 나타남. 주 출산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출생아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 감소 A 유형: 여성 인구수의 변화는 없으나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연령별 출산율이 감소한 경우임
 - 감소 C 유형: 출생아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 인구수는 증가한 경우임
 - 감소 D 유형: 출생아수와 여성 인구수의 감소인 상황에서 출생아 감소율이 여성 인구 감소율보다 더 큰 경우임
- (결과의 시사점) 세종시는 '15~49세 여성인구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 결정은 지연 또는 보류(또는 거부)하고 있는 경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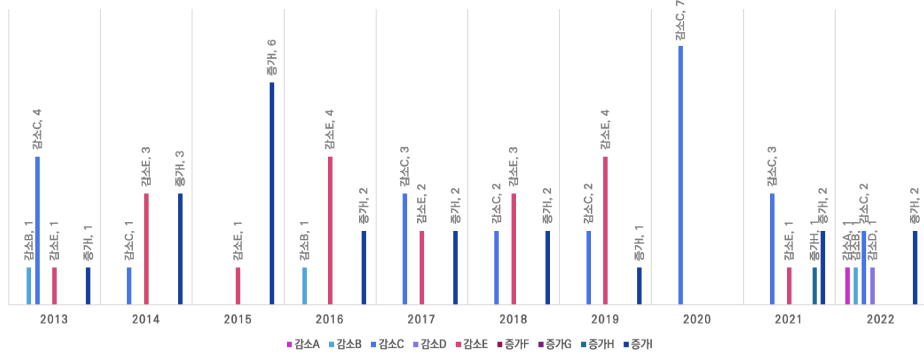
2) 감소 B 유형은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변화가 없으나, 여성 인구는 증가한 경우 나타나는 유형임

3) 유형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 유형이 5세 단위로 산출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 결과 나타난 개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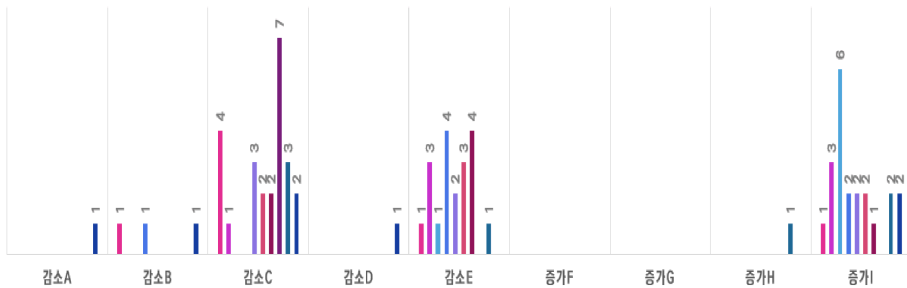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 출산 연령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임

[표 2-5] 세종시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2012~2022년)

시점	세종특별자치시 합계출산율	전년대비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	세종시 주출산연령대(25~39) 방향성 유형
2012	1.597		
2013	1.435	감소 B1, C4, E1, 증가 I1	감소 C1, E1, 증가 I1
2014	1.354	감소 C1, E3, I3	감소 E2, 증가 I1
2015	1.893	감소 E1, 증가 I6	증가 I3
2016	1.821	감소B1, E4, 증가 I2	감소 E3
2017	1.668	감소C3, E2, 증가 I2	감소 E2, 증가 I1
2018	1.566	감소 C2, E3, 증가 I2	감소 E3
2019	1.472	감소 C2, E4, I1	감소 C1, E2
2020	1.277	감소 C7	감소 C3
2021	1.277	감소 C3, E1, 증가 H1, I2	감소 C1, 증가 I1, H1
2022	1.121	감소 A1, B1, C2, D1, 증가 I2	모두 감소 A1, C1, 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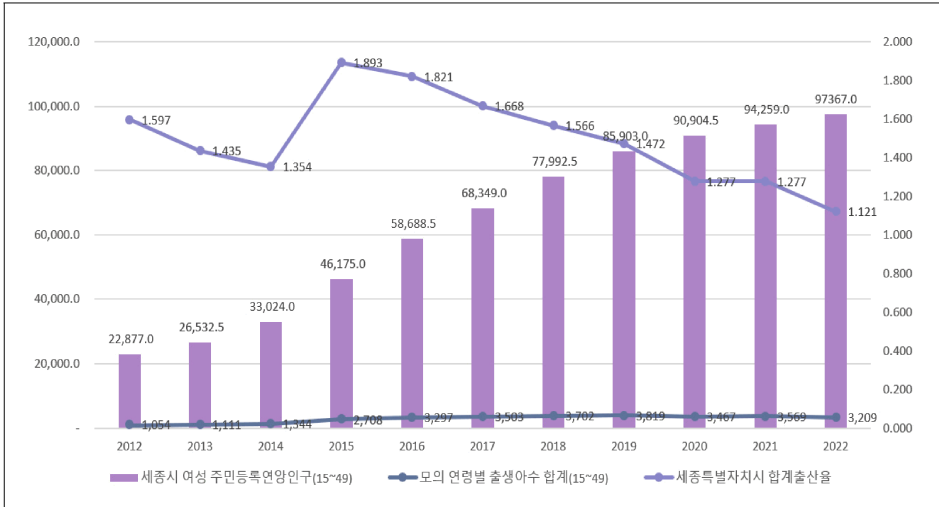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주: 유형 뒤에 붙은 숫자는 해당 유형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2012~2018년까지 결과는 최성은·유상현(2019), <세종시 출생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함. 2019~2022년 결과는 연구자가 추가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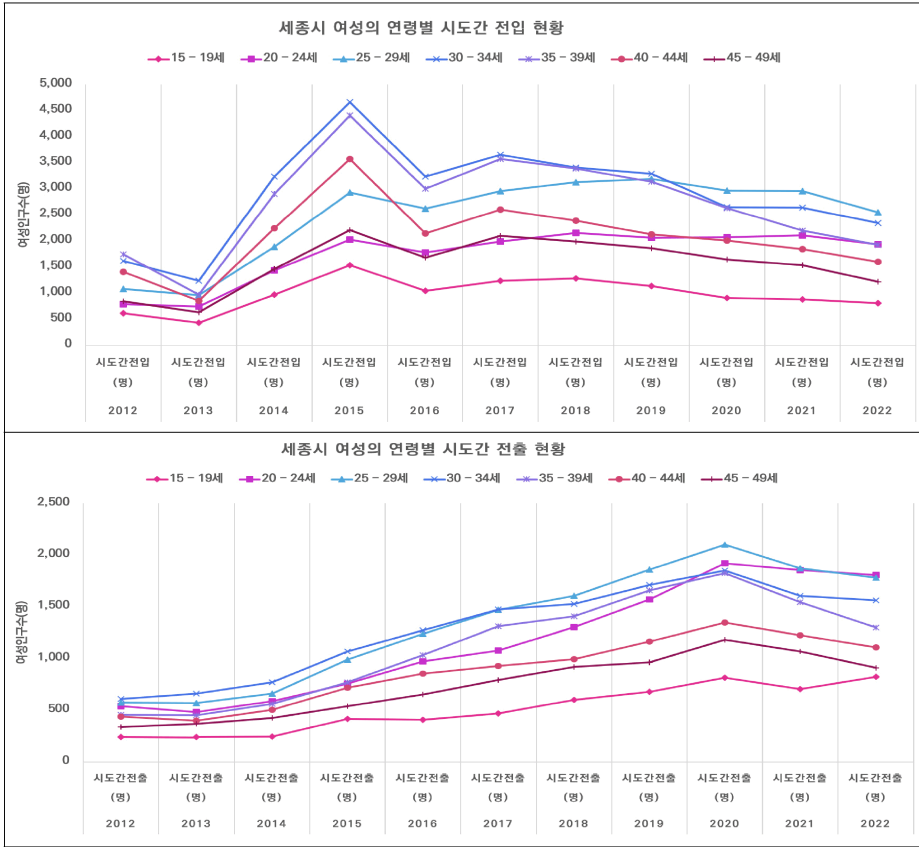


[그림 2-4] 세종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2) 여성 청년 인구이동 살펴보기(분모요인)

□ 세종시 여성 청년 인구 유입과 유출 변화 추이

- 15~49세 여성을 기준으로, 세종시로 전입해 온 흐름을 살펴본 결과, 2014~2015년 사이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유입이 대규모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2017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5] 세종시 15~49세 여성의 시·도 간 전입과 전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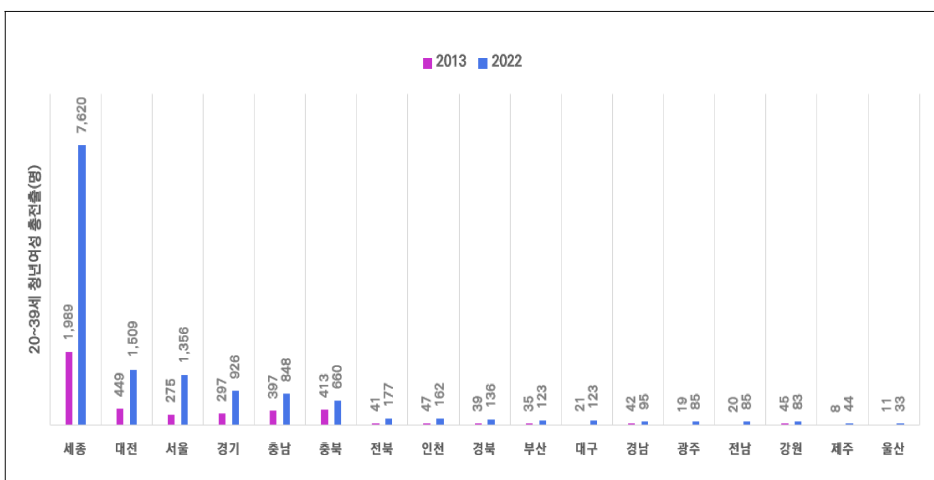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각 년도 재구성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읍, 면 지역에 거주하였던 20~39세 청년 여성이 세종시를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의 협업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음
- 2013년 대비 2022년의 주요한 청년 여성 전출의 특징은 지역 내 이동 (동 지역으로 추정)이 증가하였고, 충청권 내 이동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임
- 2013년 기준 세종시 20~39세 청년 여성 전출 사유 및 전출지 특성
 - 전출사유: (읍 거주자) 주택 > 가족 > 직업 순, (면 지역 거주자) 가족 > 주택 > 직업 순, (동 지역 거주자) 직업 > 가족 > 주택 순

- 전출지: 세종시 관내 이동이 1순위. 그 외에는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인접 지자체로 유출되는 특징을 나타냄

○ 2022년 기준 세종시 20~39세 청년 여성 전출 사유 및 전출지 특성

- 전출사유: (읍 거주자) 주택 > 직업 > 가족 순, (면 지역 거주자) 가족 > 직업 > 주택 순, (동 지역 거주자) 주택 > 직업 > 가족 순
- 전출지: 세종시 관내 이동이 여전히 1순위. 2순위부터 상이한 패턴이 나타남. 읍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아짐. 면 지역의 경우 대전, 충남, 경기, 서울 순이며 동 지역의 경우 대전,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 2013년에 비하여 수도권으로의 유출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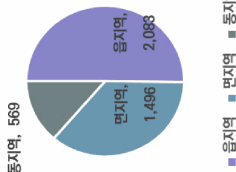
[그림 2-6] 세종시를 떠난 20~39세 여성들의 전입지역(2013년 vs.2022년)

주: 2022년 총전출수를 토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2023년 9월 2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발제 자료 일부(발제자: 최성은 책임연구위원, 주제: 세종시 인구전망과 정책방향)

□ 세종시 청년 여성(20~39세)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2013년 지역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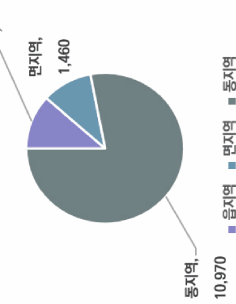


[2013 읍 지역 진출사유]
1순위: 주택 2순위: 가족, 3순위: 직업
[2013 면 지역 진출사유]
1순위: 가족 2순위: 주택, 3순위: 직업
[2013 읍 지역 진출사유]
1순위: 직업 2순위: 가족, 3순위: 주택

2013년 20~39세 세종여성의 주요 진출지

- 1순위: 세종, 2순위: 대전, 3순위 충북, 4순위 충남, 5순위 경기
 • 읍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충북>대전>경기>서울 등의 순
 • 면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충남>대전>충북>경기 등의 순
 • 읍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대전>충남>경기>서울 등의 순

2022년 지역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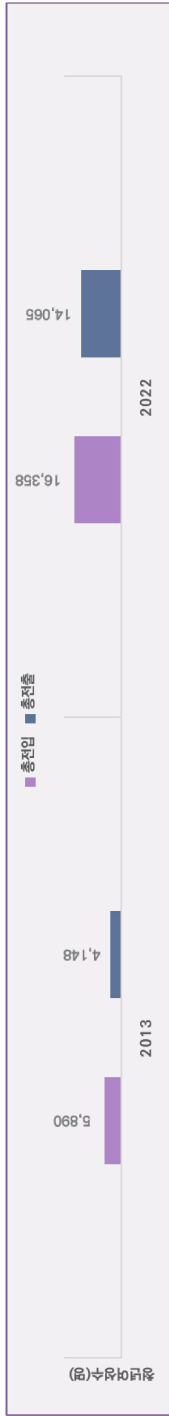


[2022 읍 지역 진출사유]
1순위: 주택 2순위: 직업, 3순위: 가족
[2022 면 지역 진출사유]
1순위: 가족 2순위: 직업, 3순위: 주택
[2022 읍 지역 진출사유]
1순위: 주택 2순위: 직업, 3순위: 가족



2022년 20~39세 세종여성의 주요 진출지

- 1순위: 세종, 2순위: 대전, 3순위 서울, 4순위 경기, 5순위 충남
 • 읍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서울>경기>충북>충남 등의 순
 • 면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대전>충남>경기>서울 등의 순
 • 읍 지역 젊은 여성 진출지: 세종>대전>경기>충남 등의 순



[그림 2-7]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2013년 vs.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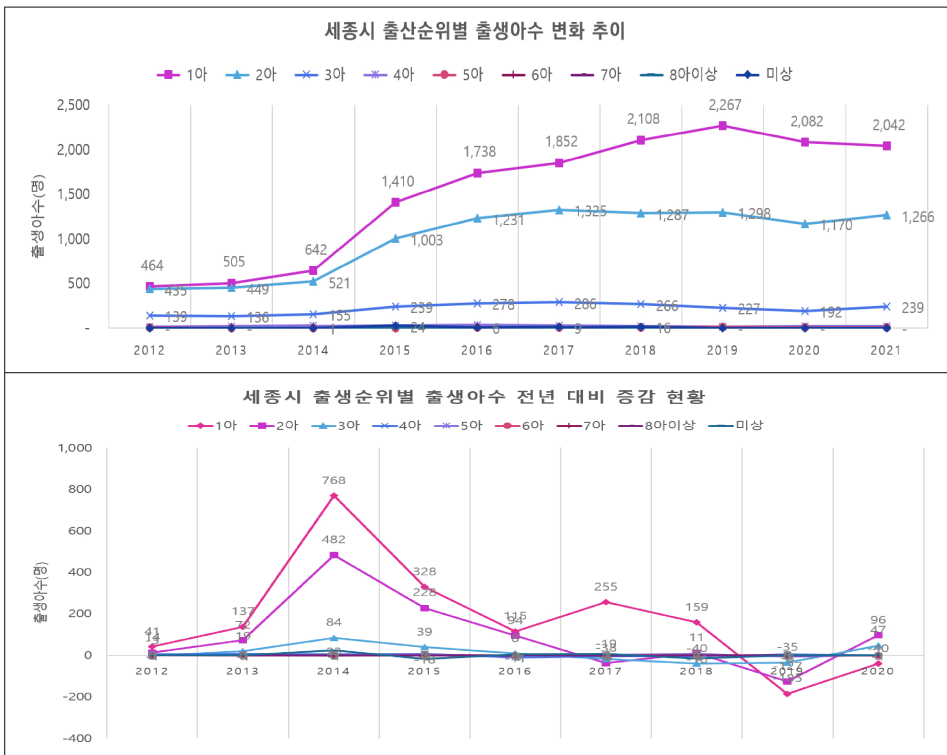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2023년 9월 2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발제 자료 일부(발제자: 최성은 책임연구위원, 주재: 세종시 인구전략과 정책방향)

3)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변화 살펴보기(분모요인)

□ 출산 순위별 출생 변화를 통해 본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

○ 세종시 출산 순위별 출생 변화 특징

- 2019년을 기점으로 출생아수 감소 추세로 돌아섬.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세종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증감을 보면, 첫째아의 변동 폭이 가장 큼. 2018년에서 2019년을 거치면서 첫째아 출생이 크게 감소했음
- 주목할 것은 둘째아의 출생 감소는 2016년과 2017년 사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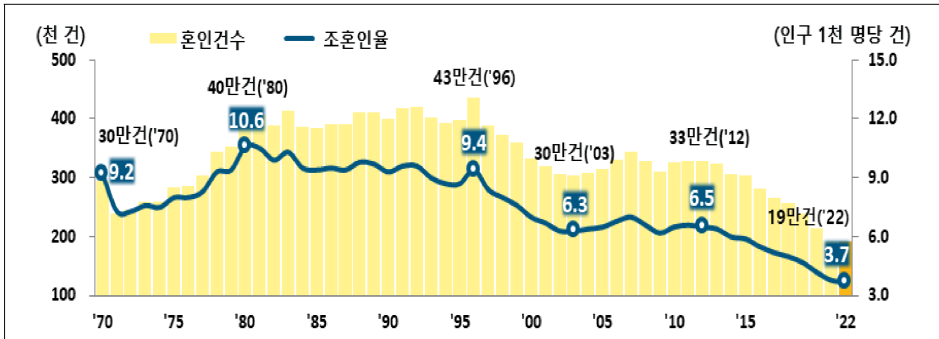
[그림 2-8] 세종시 출산순위별 출생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시사점) 세종시의 출산순위별 출생 변화를 고려할 때, 세종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혼인율과 신혼부부 수 변화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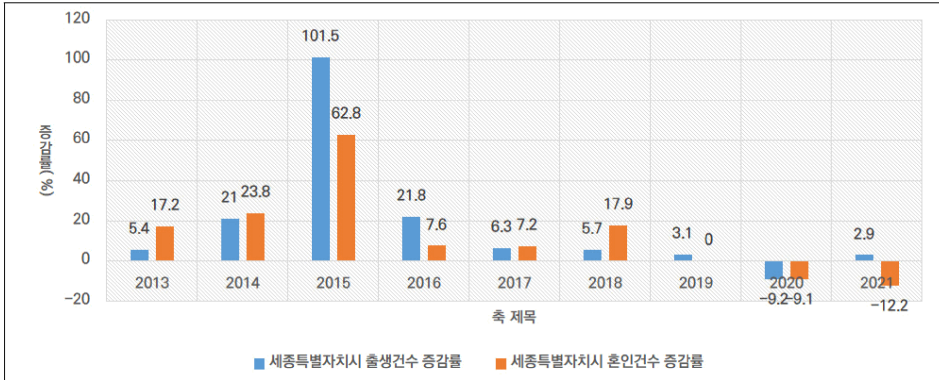
□ 혼인율 변화를 통해 본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



[그림 2-9] (참조) 전국 혼인율 변화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3년 3월 16일자

- (전국)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전년 대비 남자는 0.4세 상승, 여자는 0.2세 상승(통계청,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 세종시는 2022년 조혼인율 1위(4.4건, 인구 1천 명 당 건)를 차지, 그러나 2021년 대비 0.1건 감소
 - 세종시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세종 5.6%로 17개 시·도 중 15위)
- 혼인(예: 조혼인율)에 있어서도 세종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 등은 청년 세대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혼인과 자녀 낳기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출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최성은 외, 2019)
 - 세종시 출생건수 및 혼인건수 증감률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2012~2018년까지는 다소 부침은 있으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2014~2015년 사이 혼인건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출생건수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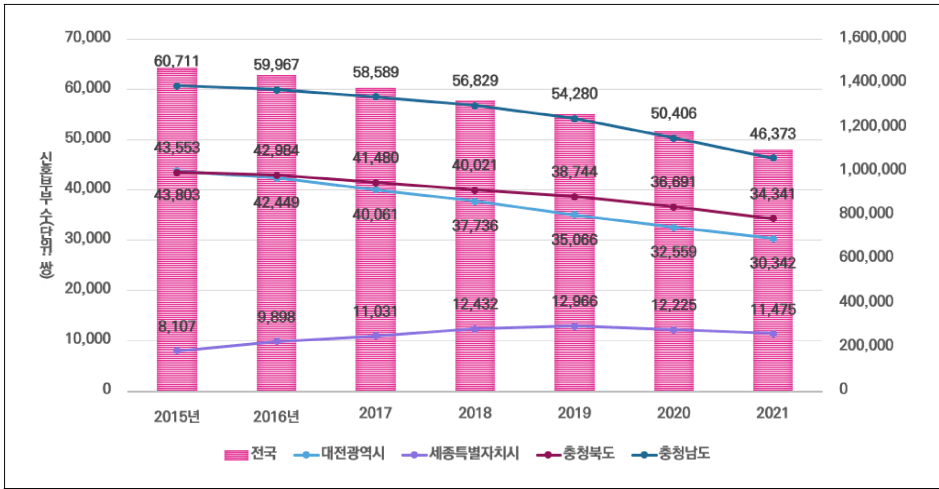


[그림 2-10] 세종시 출생건수 및 혼인건수 연도별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각 년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3년 3월 16일자.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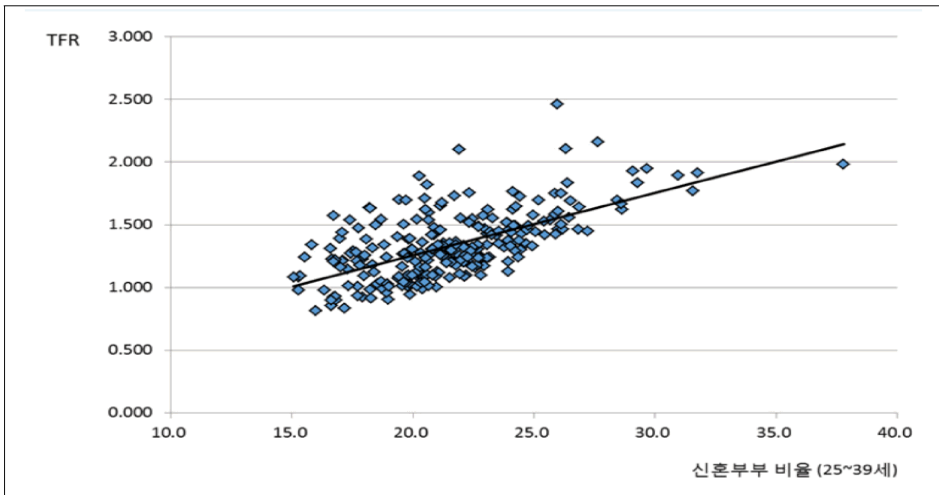
- 이는 당시 혼인과 출산의 결정을 한 젊은 세대가 세종시에 많이 이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2018~2019년 혼인 건수 증가율이 0%이고, 2019년~2020년은 혼인 및 출생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출생아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혼인율은 감소폭이 더 커짐
 - 2018~2021년까지의 변화는 코로나 19로 인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연”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출산회피 흐름과 유사
- 세종시는 지속적인 15~49세 여성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인구 증가는 양(+)의 관계가 아님
- 세종시의 경우, 이제는 인구 유입이 합계출산율의 증가를 이끄는 시기가 아님을 의미함(인구 유입 ≠ 출생률 증가)
- **신혼부부 수 변화를 통해 본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
- 실제 통계청에서 신혼부부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구득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신혼부부 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로 감소세를 띠

- 이것은 세종시 혼인율 증가 후 감소 패턴과 유사한 양상임



[그림 2-11] 충청권 신혼부부 수 변화추이(2015~2021년)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별 자료 재구성



[그림 2-12]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과의 상관관계(2015년 기준)

자료 : 이상림(2018), <시군구 지역출산율과 신혼부부비율>,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6쪽 [그림7] 발취

- 일부 연구자의 경우, 세종시 합계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신혼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함(이상림, 2018)
 - 이상림(2018)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의 80% 이상이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젊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도 강한 양(+)적 관계를 보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세종시 합계출산율 증가를 견인했던 신혼부부의 효과는 그 수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2015~2021년까지 세종시 신혼부부 수와 출생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

[표 2-6] 세종시 신혼부부수와 출생아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2015~2021년)

		신혼부부수 (단위: 쌍)	출생아수 (단위: 명)
신혼부부수	Pearson 상관계수	1	.952**
	유의수준(양쪽)	.	.001
	N	7	7
출생아수	Pearson 상관계수	.952**	1
	유의수준(양쪽)	.001	.
	N	7	7

주** : P <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신혼부부통계」 및 출생아수 세종시 각 연도별 자료 재구성

-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 지역에서도 신혼부부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충청권 전 지역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될 것임을 경고함
- 따라서 세종시 전체 인구의 증가세 유지도 중요하나, 저출산 속도를 늦추고, 그 감소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 이어서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세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전남 영광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함

3. (사례 비교) 전남 영광군,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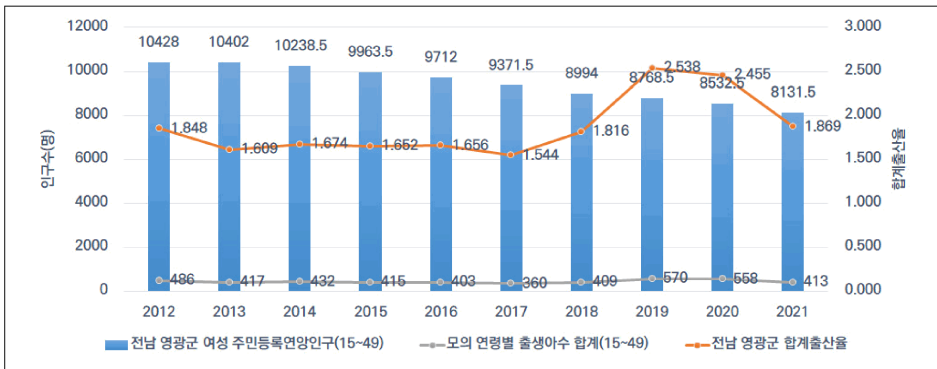
1)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1위 원인 분석

□ 사례 비교 대상 선정 개요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81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을 기록한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인구증가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가 정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에 본 연구의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여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을 분석함
- 전남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남 영광군 인구 현황([부록 표 1-1] 참고)

□ 2019년 이전 전남 영광군 저출산 대응 정책 주요 변화

-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2.538명으로 정점을 찍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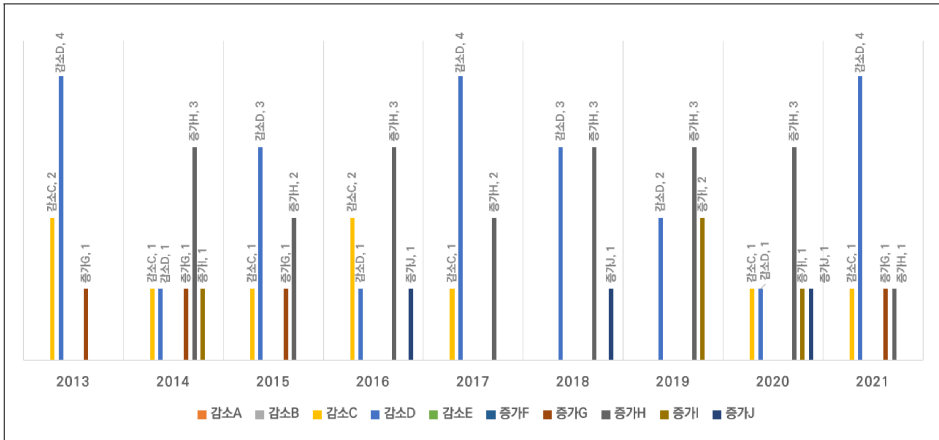


[그림 2-13] 전남 영광군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2017년부터 <전남 영광군 인구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강화
 - 2019년부터 결혼장려금 500만 원,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 원~ 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 원)
 - 2021년부터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중임

□ 전남 영광군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 결과



[그림 2-14] 전남 영광군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 분석 결과(2012~2021년)

주 : 유형 뒤에 붙은 숫자는 해당 유형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후 연구자 직접 분석

- 전남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정점을 찍었던 2019년을 보면, 연령별 출산율 방향이 증가를 띠는 모의 연령대 유형은 “여성인구는 감소, 출생아수는 증가하는 증가 H유형”이 3개로 분석됨
 - 증가 H유형의 높은 빈도는 출산장려지원금의 효과가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 “출생아수와 여성인구가 함께 증가하지만, 출생아수 증가율이 더 큼” 증가 I유형도 2개
 - 주 출산 연령대의 경우, 증가 H유형 1개, 증가 I유형 2개로 나타남
- 반면, 2021년의 경우도 합계출산율 자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으나, 분석된 증가 유형 모두 여성인구가 감소하여 나타나는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G1, H1)이어서 인구감소 위기를 염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 전남 영광군 사례의 시사점

- 전남 영광군 사례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수치 변화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인구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증가는 동일하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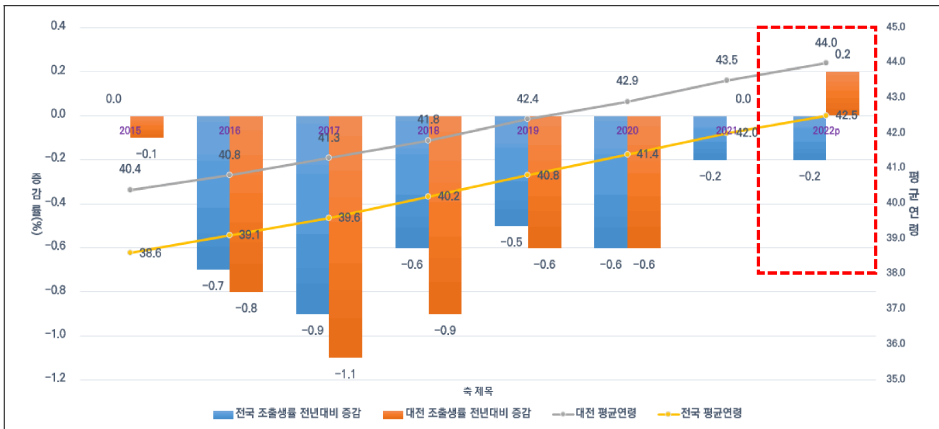
나지 않으므로 합계출산율의 수치 증가에 따른 정책 결과의 해석도 신중을 기해야 함

- 전남 영광군과 같은 현금성 지원 방식의 출산장려책이 지속 가능한지, 지역 인구 증가를 통한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임

2) 대전광역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 증가 원인 분석

□ 사례 비교 대상 선정 개요

- 2022년 기준 유일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증가 지역인 대전광역시의 사례
- 대전광역시 인구 현황(〈부록 표 1-1〉 참고)
- 대전광역시의 주목할 만한 변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증가
 - 합계출산율 2021년 0.81명⇒ 2022년 0.84명으로 0.03명 증가
 - 조출생률 2021년 5.1명⇒ 2022년 5.3명으로 증가
- 조출생률은 지역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출생지표로서 세종시와 같이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일수록 유리한 지표임. 대전시는 평균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출생률이 증가함. 이는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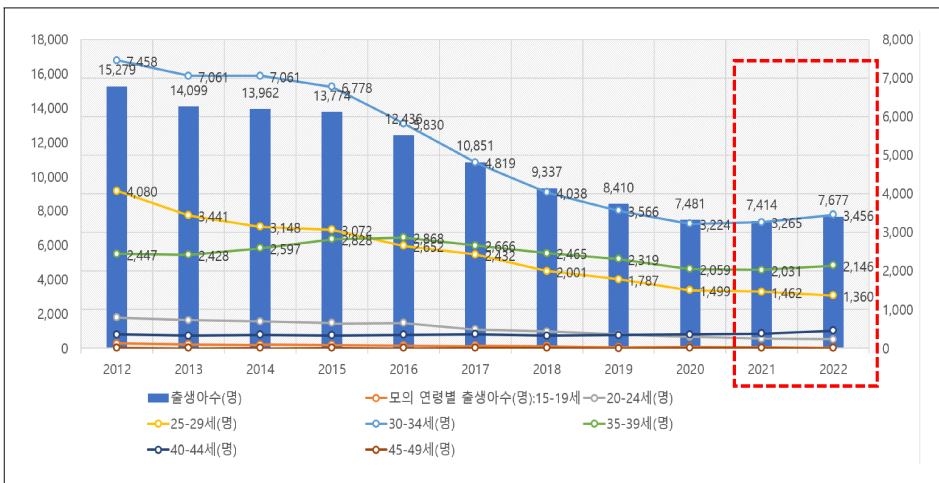


[그림 2-15] 전국 vs. 대전시 조출생률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대전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 (분자요인) 2021년 대비 2022년 대전시 30~39세 주출산 연령대의 출생아수 증가와 25~29세 여성의 출생아수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의 2021년의 분자요인 특징: 2020년 대비 2021년의 경우 출생아수 67명 감소. 주 출산 연령대 집단 중 30~34세 집단은 출생아수 증가, 나머지 2개 집단은 감소
 - 30~34세 모의 출생아 수 41명 증가
 - 25~29세 모의 출생아 수 37명 감소, 35~39세 모의 출생아 수 28명 감소
- 대전시의 2022년의 분자요인 특징: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우, 출생아수 286명 증가. 주출산 연령대 집단 중 1개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출생아수 증가
 - 30~34세 모의 출생아 수 191명 증가 > 35~39세 모의 출생아 수 115명 증가
 - 25~29세 모의 출생아 수 102명 감소



[그림 2-16]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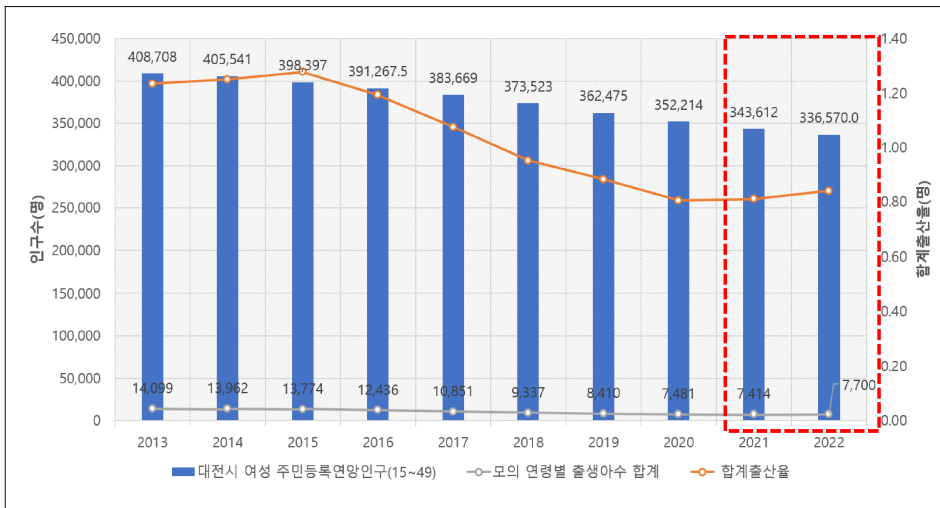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재구성

- (분모요인) 전반적으로 대전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15~49세)의 수는 감소세를 보임

[표 2-7] 분모요인(대전시 15~49세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증가율 변화 추이

연 도	인구 수(명)	전년대비 변화(명)	증가율(%)
2013	408,708		
2014	405,541	-3,167	-0.8
2015	398,397	-7,144	-1.8
2016	391,268	-7,129	-1.8
2017	383,669	-7,599	-1.9
2018	373,523	-10,146	-2.6
2019	362,475	-11,048	-3.0
2020	352,214	-10,262	-2.8
2021	343,612	-8,602	-2.4
2022	336,570	-7,042	-2.0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그림 2-17] 대전광역시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 변화와 출생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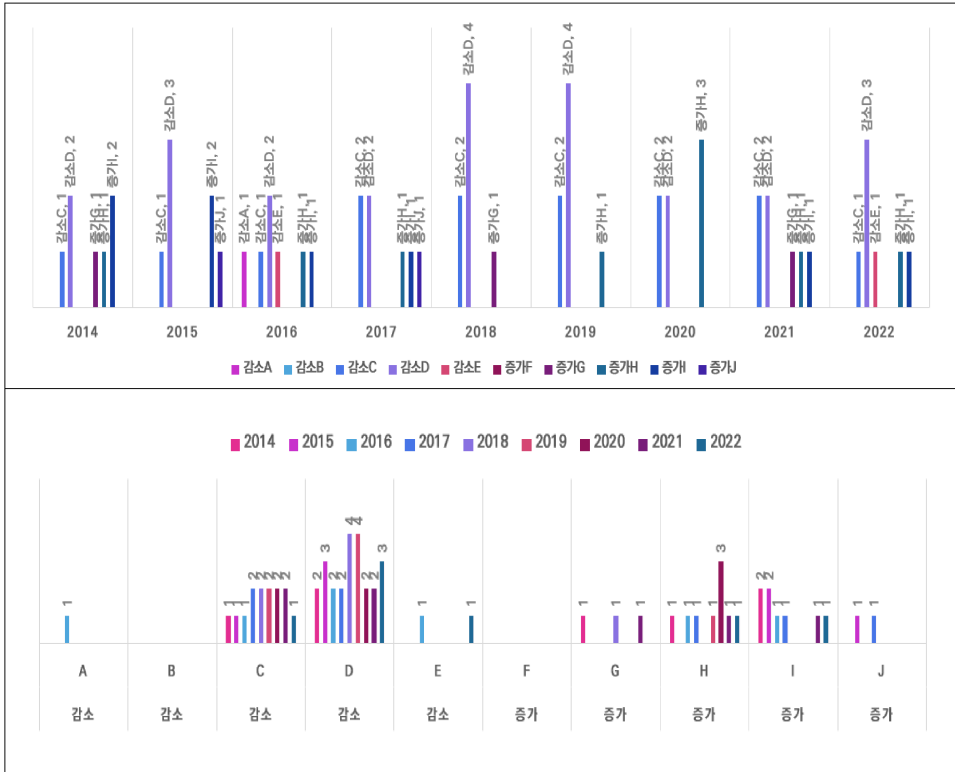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대전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분석 결과 해석

- 최성은 외(2019) <세종시 출생 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의 영향력”이 가장 컸음
 - 2012~2018년까지 대전시의 경우, 연령별 출산율 감소를 일으키는 대표 유형은 ‘감소 D유형’으로 분석된 바 있음. 이는 출생아수와 여성인구수가 모두 감소하고, 출생아수 감소폭이 여성인구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임
 - 반면, 2012~2018년까지 대전시의 연령별 출산율 증가를 이끈 대표 유형은 ‘증가 H유형’으로 출생아수는 증가하지만 분모인 여성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연령별 출산율이 증가(+)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였음
 - 또한, 그 다음으로 증가 유형에 많이 나타난 것은 증가 I유형과 J유형이었음. 증가 J유형은 출생아수와 여성인구수 모두 감소이나 분모의 감소율이 분자보다 커서 연령별 출산율이 증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최성은 외(2019)의 연구를 보완하여, 2019~2022년까지의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주 출산 연령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8] 대전시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2012~2022년)

시점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	전년대비 연령별 출산율 방향성 유형분석 결과	대전시 주출산연령대(25~39) 방향성 유형
2014	1.250	감소 C1, D2, 증가 G1, H1, I2	감소 D1, 증가 G1, I1
2015	1.277	감소 C1, D3, 증가 I2, J1	감소 D1, 증가 J1, I1
2016	1.192	감소 A1, C1, D2, E1, 증가 H1, I1	감소 A1, D1, 증가 I1
2017	1.075	감소 C2, D2, 증가 H1, I1, J1	감소 C2, D1
2018	0.952	감소 C2, D4, 증가 G1	감소 C2, D1
2019	0.883	감소 C2, D4, 증가 H1	감소 C2, D1
2020	0.805	감소 C2, D2, 증가 H3	감소 C2, D1
2021	0.810	감소 C2, D2, 증가 G1, H1, I1	감소 C2, 증가 I1
2022	0.840	감소 C1, D2, E1, 증가 H1, I1	감소 C1, E1, 증가 I1



주 : 유형 뒤에 붙은 숫자는 해당 유형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 2012~2018년까지 결과는 최성은·유삼현(2019), <세종시 출생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함. 2019~2022년 결과는 연구자가 추가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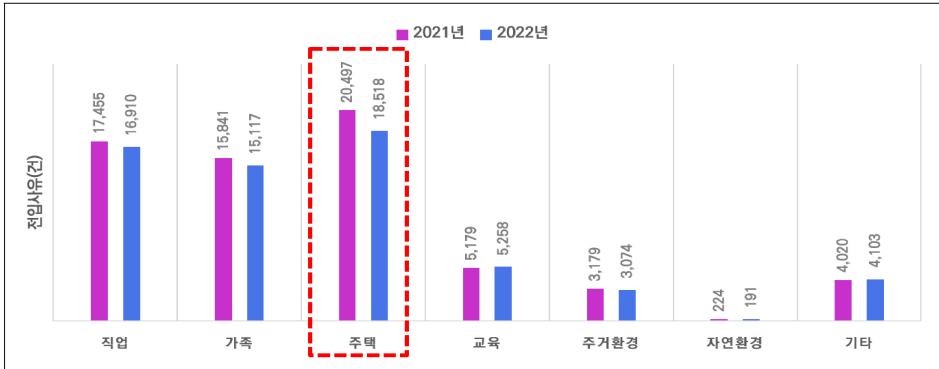
- 최근 4년간(2019~2022년)의 분석 결과, 대전시 주출산 연령대의 연령 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유형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히, 2021년부터 증가 I유형이 다시 나타났고, 감소 유형의 경우도, E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 감소 E유형은 출생아수와 여성인구가 모두 증가하지만, 여성인구 증가율이 출생아수보다 더 커서 연령별 출산율이 감소(-)방향을 띠게 되는 경우로서, 감소유형 중 증가 I유형으로 바뀌기 쉬운 비교적 긍정적인 유형임

○ 따라서 2022년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증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변화와 출생아수 증가를 일으킨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전시의 정책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2021~2022년 대전시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 (전국 ⇒ 대전으로 이주) 2021~2022년 합계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15~49세 여성들의 대전으로의 이주 사유 분석 결과

- 주택 > 직업 > 가족 > 교육 순(2021, 2022년 동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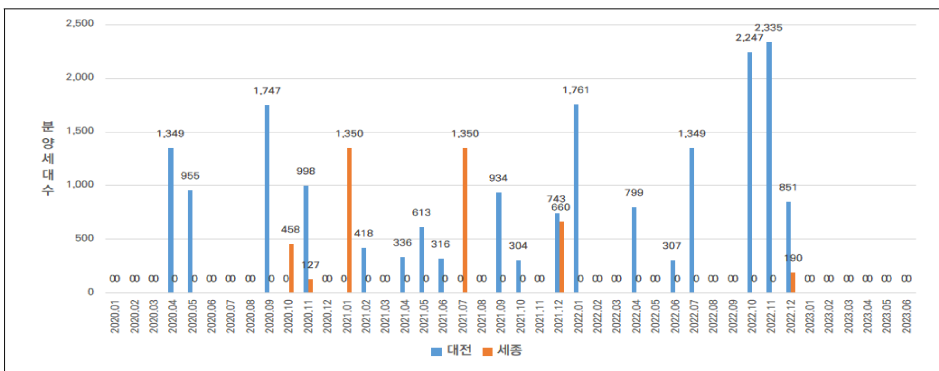


[그림 2-18] 대전으로 이주한 15~49세 여성의 전입 사유 분석 결과(2021~2022)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의 대전시의 주거 요인(분양 세대수, 전세 가격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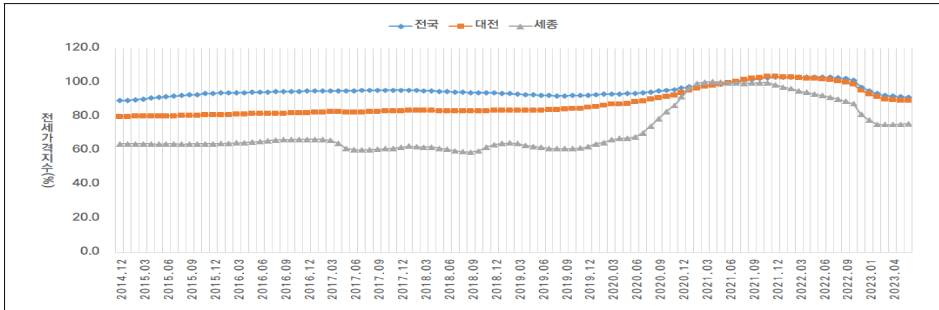
- 신규 분양 세대수 변화: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 대전은 18,362세대, 세종은 4,135세대 신규 분양이 이루어짐 ⇒ 신규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 사유의 인구 유입 영향이 있었음을 추정 가능함



[그림 2-19] 대전·세종 신규 분양세대수 변화(2020.1.~2023.6.)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2023), <주택 공급(분양·임대) 실적 및 계획('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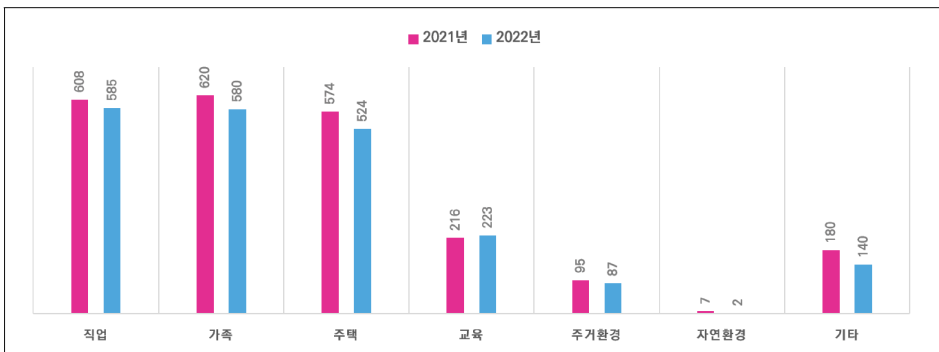
- 주택 가격의 변화: 전세가격지수는 상승 추세였으나, 인접 지자체인 세종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에 따른 외부효과 추정 가능



[그림 2-20] 전세가격지수(2014.12.~2023.04.)

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제공 자료 재구성

- (세종 ⇒ 대전으로 이주) 세종시의 15~49세 여성들의 대전으로의 이주 사유 분석 결과(2021~2022년) ‘주택’ 사유는 지속적으로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즉, 세종시 거주 여성들의 주거요인으로 인한 대전으로의 이동 발생 가능성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순
 -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순
- 따라서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2021년~2022년 사이 신규 분양 세대 수와 전세가격지수 등과 같은 주거 관련 요인이 대전으로의 여성 인구 유입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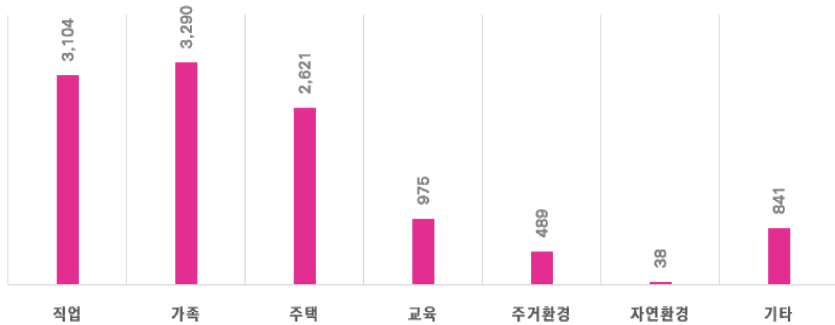
[그림 2-21] 대전으로 이주한 세종시 15~49세 여성의 전입 사유 분석 결과(2021~2022)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8~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 사유별 누적 결과에서도 '주거요인(주택 + 주거환경)'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표 2-9] 최근 5년간 대전으로의 전입한 여성(15~49세)의 이주 사유

구 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년 간 (2018~ 2022년)	전입 사유	직업	3,104(27.3)	328	299	1,106	1,119	252
		가족	3,290(29.0)	349	354	1,042	1,204	341
		주택	2,621(23.1)	222	231	684	1,201	283
		교육	975(8.6)	180	71	234	431	59
		주거환경	489(4.3)	41	48	158	209	33
		자연환경	38(0.3)	6	6	10	14	2
		기타	841(7.4)	88	88	255	329	81
합계		11,358	1,214	1,097	3,489	4,507	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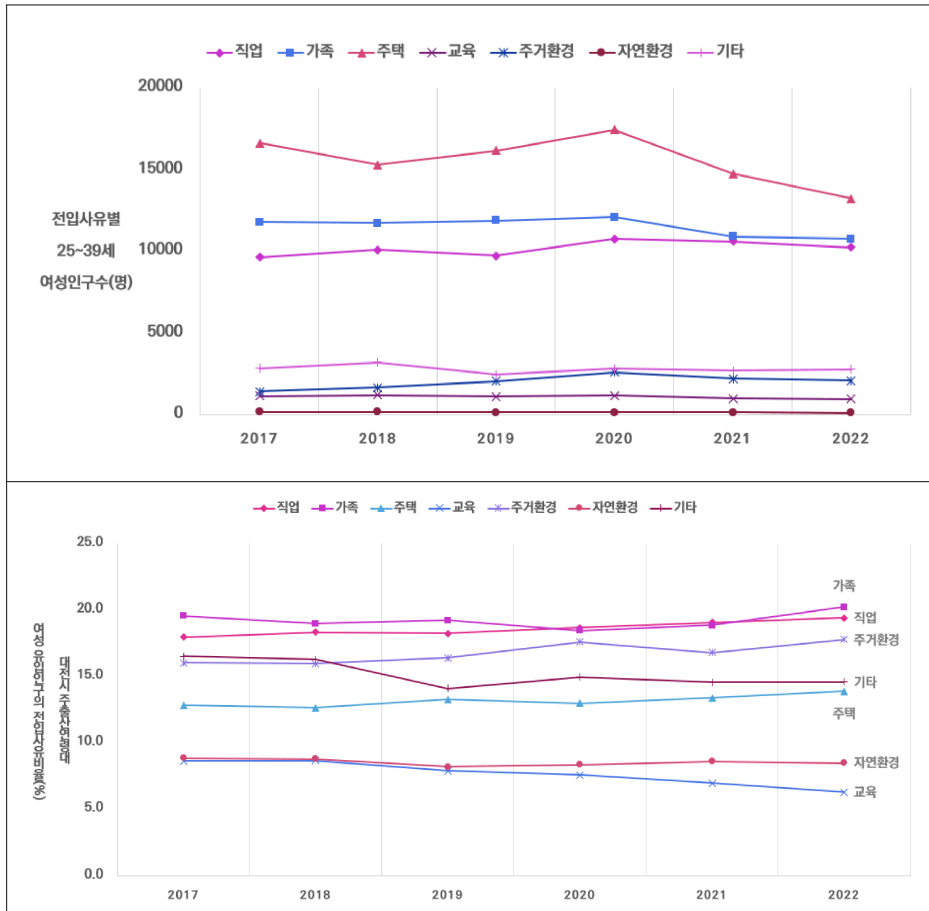
주: 2018~2022년 간 전입사유별 누적 결과임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8~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 2018~2022년 동안 대전 이외 지역에서 대전으로 전입(시·도간 전입)한 여성(15~49세)의 전입 사유를 누적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29.0%), 직업(27.3%), 주택(23.1%), 교육(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23.1%)과 주거환경(4.3%)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이주 사유 비중은 27.4%로 가족에 이어 2순위로 올라감

□ 대전시 저출산 대응 정책 검토: 대전형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 여부

- 대전시 정책적 요인으로서의 대전시의 출산장려정책의 강화(대전형 양육수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전형 양육수당)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에게 월 30만원씩 지원(단, ①, ②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실제 대전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 잠정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0.03명 증가, 조출생률도 5.1명에서 5.3명으로 증가함
- 생활권 공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이동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전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강화·확대와 주거요인 간 상호작용이 주변 지역 주 출산 연령대의 인구 유출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됨
- (예시) 대전시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전입 사유 변화 추이로 살펴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추정([부록 표 1-2 참조])
 - (사유별 인구 유입 규모) 충청지방통계청의 지원을 통하여 2017~2022년까지 대전으로 전입한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전입사유의 변화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 주택 > 가족 > 직업 순으로 유입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음
 - (전체 유입 인구 대비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유입사유별 특징) 그러나 전체 대전시 유입 인구의 유입사유별 해당 연령대 여성의 유입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가족 > 직업 > 주거환경 > 기타 순으로 분석됨. 이는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2021년 대비 2022년에 변화된 주요한 특징임



[그림 2-22] 대전시 주 출산 연령대(25~39세) 여성 인구의 전입 사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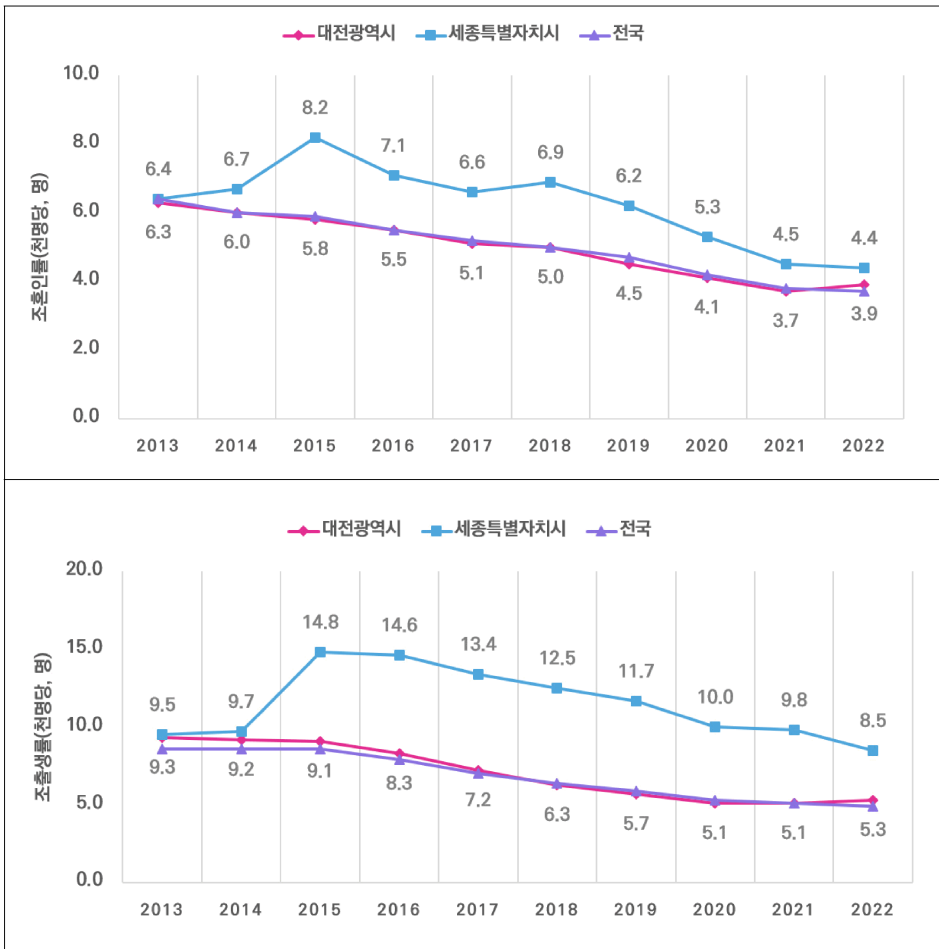
주: 대전시 주 출산 연령대(25~39세) 여성의 전입사유 비율 = (대전시 여성(25~39세)인구의 각 전입 사유) ÷ (대전시 전체 인구의 각 전입 사유) x 100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8~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 즉, 주 출산연령대 여성이 대전으로 전입을 선택한 기준은 '가족'이 가장 우선되고 있다는 것임. 다만, 상기 결과는 전입신고서로 분석되는 간단한 사유 분석 결과이므로, '가족' 사유가 반드시 자녀 출산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연령대 여성들이 '주 출산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족을 위한 대전으로의 이주 선택에 있어 대전형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주거요인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3) 사례 검토의 시사점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혼인과 임신,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은 광역시·도 중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1위 도시’ 세종시에도 나타나고 있음
- 인구 천 명당 혼인율과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도 점차 전국 평균에 수렴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그림 2-23] 전국, 세종, 대전의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변화 추이(2013~2022년)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3년 3월 16일자;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자료 재구성

- 합계출산율의 증가는 특정 연령 여성인구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유입과 출산으로 인한 자연 증가의 변주로 만들어지는 결과임
- 따라서 합계출산율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준거집단(전남 영광군, 대전시)과의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세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와 타 시·도의 출산지원정책이나 주거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생활권 공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전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강화·확대와 주거요인이 주 출산 연령대의 인구 유출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됨
 - ‘한 아이당 1,080만 원 지급’이라는 대전형 양육수당 정책이 대전-세종 생활권을 공유하는 ‘출산 의도가 있는 가정’에게 대전으로 이주할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음. 2014년 시작된 세종시 ‘출산축하금(구, 출산장려금) 120만 원’의 상대적인 효력 약화의 원인이기도 함
 - 또한, ‘출산 의도가 있는 가정’이 ‘주거 이전의 시기’가 맞물렸을 경우, 대전으로의 전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 2014~2015년 세종시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로 혼인이나 출산행위의 일시적 연기가 이주 후 회복되는 과정, 전입 후 다수의 이주민에 의해 발생하는 혼인과 자녀 낳기’ 행위가 대전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최성은·유삼현, 2019:96)
 - 이는 기존의 낮은 전세가격지수로 대전시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지 선택에 유리한 위치에 있던 세종시의 전세가격지수 상승으로 인한 외부효과, 대전시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와 같은 주거요인, 그리고 대전형 양육수당의 상호작용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관찰된 기간이 너무 짧아 사례수가 적고 인구이동과 임신, 출산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최소 10개월 이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최성은·유삼현, 2019 : 97~98)
- 준거집단 중 대전시는 세종시와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을 고민해야 하는 이웃 지역으로 협력적 공존과 더불어 정책 아이디어의 경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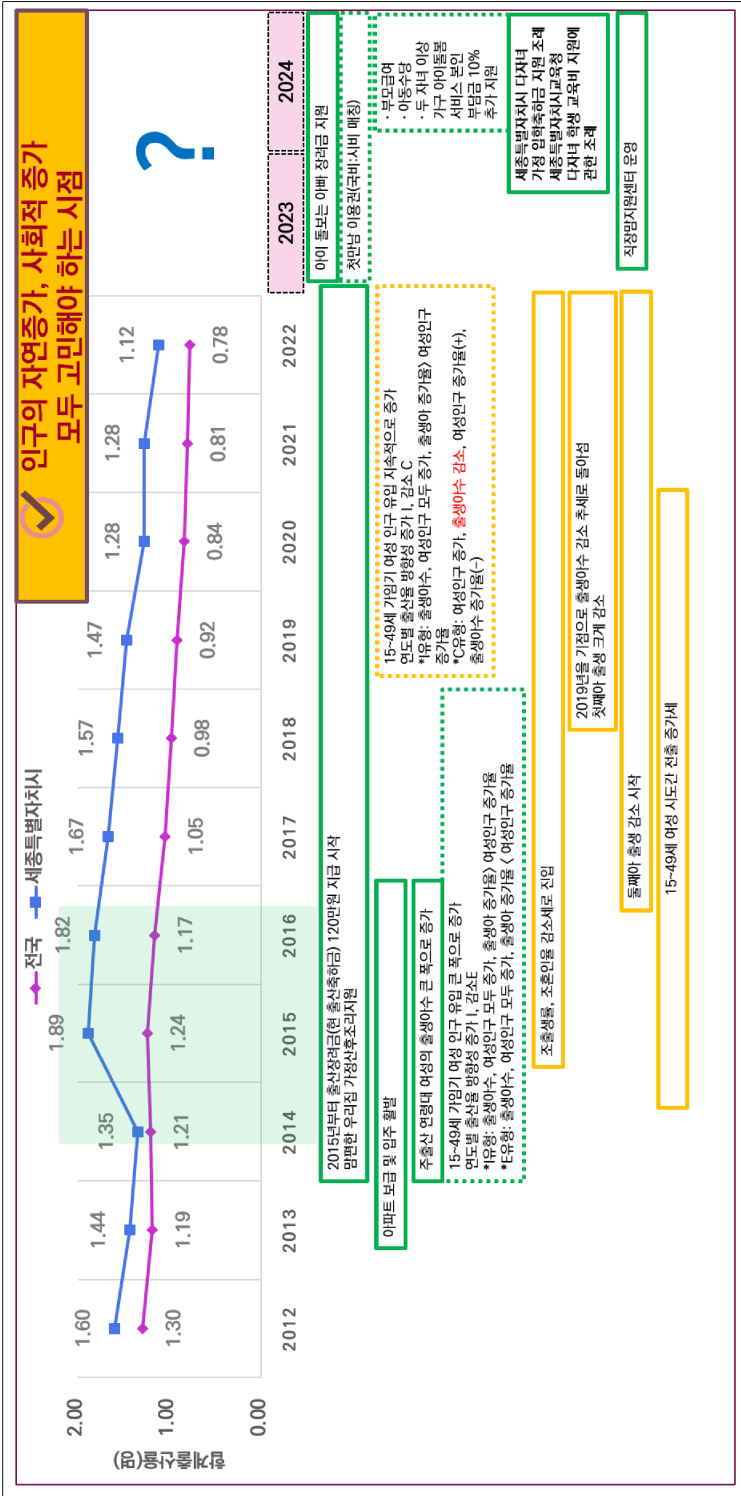
-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과도한 경계는 대전-세종을 생활권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는 두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두 지역 모두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음

3절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제안

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확대와 강화

세종시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 세종시 합계출산율이 최고치를 나타낸 2015년 전후로, 새로운 세종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아파트 보급 및 입주 시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나타냄
- 이후 2017~2022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정책적 이슈는 찾기 어려움. 이 시기가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전염병 대응 기간과 중첩되었음을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인 1위를 유지하던 세종시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응 논의가 시급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세종시는 2023년부터 '다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시의회, 시교육청 중심),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시정 4기 단체장 공약사항), 아빠의 육아 장려를 위한 정책지원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 셋째아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 교육비 지원(시 교육청),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급여 증액, 첫만남이용권 증액, 두 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등이 시행될 예정임
-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수준도 전 국가적 차원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쉽게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으나, 2024년부터 강화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과 제도들이 변화를 견인하여 출산율 1위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고수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세종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세종시를 새로운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그림 2-24] 세종시 합계출산율과 정책적 주요 이슈 변화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정책적 이슈 연구자 작성

2. 세종시 출생아수 감소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세종시 차원) 출산지원(출산축하금)에 대한 차등적 지급 방안 검토 필요

- 출산지원(출산축하금) 둘째아부터 지급액 확대 또는 인접 지자체(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금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함
 - 출산 지원의 방식은 반드시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다만,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 결정에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 내용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에게 월 30만원씩 지원 ①, ②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세종시 차원⇒ 중앙정부 공동 대응)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검토 필요

- 아빠 장려금(「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나 공무원은 제외 대상임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고, 자녀도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신청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180만원),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의 공동 대응 필요 사항)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시행'을 통해 출산의도가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다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므로,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

- 세종시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저출산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물론, 해당 제도 적용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첩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 대상 적용 시 지원 내용을 일반 시민과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차원) 적극적인 경력단절 해소로 출생-돌봄-교육-노동의 생애전반 환경의 공정성 제고

- 현 정부는 출생-돌봄-교육-노동 생애전반 환경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인구정책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해소는 이것의 주요한 전략이자 목표임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활성화 추진과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을 통한 근로환경에서의 공정성 제고
 - 세종시에서 현재 시정 4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지향하는 바는, 세종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세종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대표 사업계획의 하나임. 세종시 관내에서 기존 제도(가족친화인증 등)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최성은 외, 2023)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신설·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사업은 세종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운영 중이므로, 관련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 우수 사례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중앙-지자체 공동)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생애 전 주기적인 지원 강화 필요

- 첫아이 출산연령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임신(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시: 국가 지원에 세종시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난임 여성 중 건강보험 횡수 소진자가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대전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만44세 이하 난임 여성. 치료 3개월간, 한약 및 침구 치료 지원. 추진방법: 대전시 한의사회 위탁

-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후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다자녀 또는 다태아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 검토 필요
- 높은 교육열을 고려한 출산장려책 마련 검토 필요(예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발전특구 혜택)
 - 2022년 기준, 자녀 1인당 사교육비 평균 금액,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4위 차지(41.8만원, 전국평균 41만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사교육비를 고려하여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중앙-지자체 공동) 세종시를 다태아 출생과 다둥이 양육에 있어 최적의 도시로 만들기

- 다둥이 돌보미 지원 사업
 - 난임증가로 인하여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다태아임신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다둥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사회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국가차원에서의 다태아 관련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지원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출산전후 휴가가 30일 더 길게 부여되는 것일 뿐, 다둥이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서비스는 찾기 어려움
 - 이에 다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최대 4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자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는 산후조리기에 국한되지 않음. 따라서 그 기간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까지 고려한 생애 전 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다태아 출산에 따른 출산크레딧 확대 및 난임치료 및 시술 의료특구 조성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다태아 관련 지원 사업: (국비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인 경우 120일)

(중앙-지자체 공동) 국정과제 + 시정 4기 단체장 공약 + 정책 아이디어 연계

- 교육발전특구 조성 시 다동이 또는 다자녀 가구와 연계된 혜택 마련
- 세종미래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추가(청년 부부, 다자녀·다동이 가정 지원 방안 연계)
 - 이어지는 3장에서 다루게 될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으로 다자녀·다동이 가정을 위한 특화된 마을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세종시 차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출범 10년이 넘어서면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유형의 분화현상이 나타남. 대도시권 지역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경우 젊은 세대의 일자리, 교육 등으로 인한 유입이 많고 비/미혼율이 높은 곳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임
 - 지역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경청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년들의 인구이동을 관찰해야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함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안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2절 진단

3절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획·완화정책 제안

3장

3장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안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1. 개요

- 제3장은 국가 차원의 인구 미래전략 구축 및 실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세종시’ 활용 방안을 담고 있음

[표 3-1] 3장 주요 내용과 제안 배경

3장 주요 내용	제안 배경
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 사항(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를 수도권 인구 분산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재원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함
② 시정 4기 단체장 공약을 국가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세종미래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③ 세종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 제시((가칭) 광역인구 미래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가칭) 광역인구미래전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

- 1절은 개요와 문제 제기로 구성됨.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제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정책 사각지대로서의 세종시만의 예외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함
- 2절은 지역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인구감소 위기의 특징을 도출하고, 빈집 현황분석을 통해 세종미래마을 조성의 필요성과 확산 가능성을 진단함

- 3절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을 위한 정책 제안,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과제, 그리고 이 과정을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함

2. 국가정책의 시각지대로서의 세종시 다시 보기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용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2년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 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기초지원계정 75%, 광역지원계정 25%로 지정되어 운용되는 기금임(일몰기한 정해져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위기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재원으로서, 지방정부 주도적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짐
- 이중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 배분이 이루어지고,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됨
-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 내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광역지원계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단 2곳임

- (문제제기)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사유는 ‘불명확’하나, 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명확’함
- 세종시의 광역지원계정 지원 자격 적격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함
 -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라는 행안부 산출 기준에 관하여 세종시 사례의 예외성 인정 필요함

[표 3-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광역시·도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 [별표2]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에서는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확하게 재정과 인구 관련 어떤 지표와 가중치를 활용했는지에 관한 명시적 산출근거가 부재함
- 세종시의 경우,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A, B) 배분 대상 어느 기준에도 포함되지 못함
 -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에 따라 배분계수가 ‘0’으로 산출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고 있음. 이는 두 지역은 인구감소지역(기초)이 있어 이 광역지원계정 A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 2개가 있는 단층제 행정체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 광역지원계정 A의 지원대상은 아니나, 배분계수가 0.075로 계산되어 광역지원계정 B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표 3-3]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A, B 별 세종시 제외 사유

구분	배분기준	세종시 제외 사유
광역지원계정 A	<p>광역지원계정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해당 시도 배분 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lpha_{1i} \times \alpha_{2i}}{\sum (A_i \times \alpha_{1i} \times \alpha_{2i})}$ <p>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α_{1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α_{2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p> </div>	<p>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체계이므로, 배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제주특별자치도 동일한 사항)</p>
광역지원계정 B	<p>광역지원계정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해당 시도 배분금액 =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 0.1 × 해당 시도 배분계수</p> </div>	<p>배분계수 산출 결과값 '0' ※산출 근거는 불명확함. 유일한 근거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 [별표 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광역시·도>임. 배분계수 '0'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으로 고시되어 있음.</p>

주*: 광역지원계정 유형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A, B로 표기하여 제시함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 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배분 금액 (23년)	504	484	344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주: 억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한 금액이며, 산식에 따라 세부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년 8월 16일자,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왜 세종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이 필요한가?

- 행정안전부 광역지원계정 배분계수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세종시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으므로, 세종시의 광역지원계정 배분을 위한 적정성 재검토 후 지원이 요구됨
- ❶ 설치시기·행정체계의 특수성: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한 신생 도시임. 행정체계의 경우 단층제이며 행정시 없는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단층제이나 행정시 존재)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평가에 있어 예외적 적용 필요
 - 따라서 시기적, 행정체계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완전성이 큰 지역임. 기존 광역시·도를 평가하는 동일한 기준은 세종시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배분계수 적용 시 세종시를 예외적 사례로 고려해야 함
- ❷ 설치 목적성: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인구 분산, 행정수도 등 국가적 특수 목적을 가진 도시이므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예외적인 증양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나 인구 분산 효과는 미흡함

- ③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 : 동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과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진 읍·면 지역 간 큰 인구 격차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인구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동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미만에 그침
 -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세종시 출범 초기 재정특례 기한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세종시법은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3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 지방교부세 기초 누락분으로 인하여 같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제주 특별자치도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지방교부세를 지급받고 있음 ⇒ 세종시 재정 여건 악화 현상 심화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의 기준은 다른 광역시·도와는 확연히 다른 세종시의 재정 여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함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인구 격차 해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유인이 필요한 상황임

2절 진단

1.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현황: 소멸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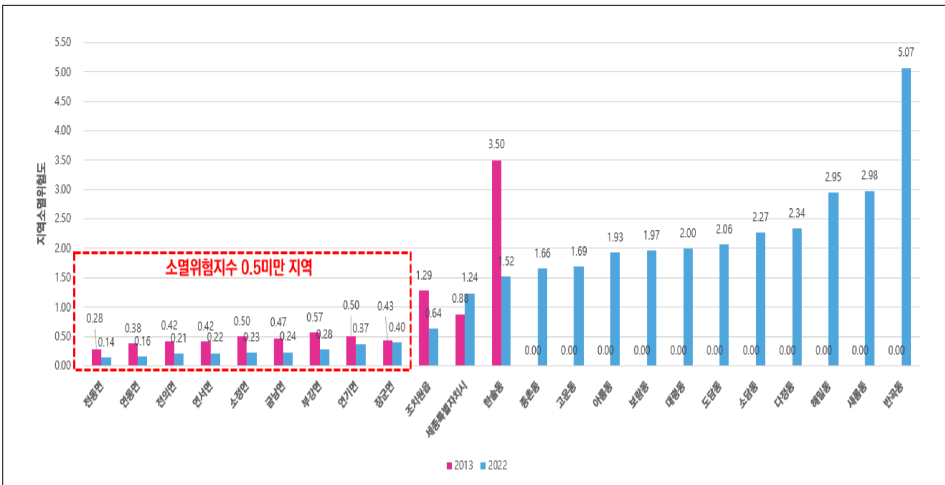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지역소멸지수를 활용하여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세종시의 읍과 면 지역의 청년인구 이동의 특징도 함께 살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소멸지수는 인구의 자연 증감을 예측하지만, 사회적 인구이동을 반영하지는 못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nabis.go.kr/>), 검색일: 2023년 5월 14일)
 - 따라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멸위험지수와 더불어 인구이동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도별 변화) 세종시 인구감소 위기 지역 간 격차 현황

[표 3-5]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2년)

구 분	2013년	2022년	소멸위험지수 변화
전동면	0.28	0.14	△0.14
연동면	0.38	0.16	△0.22
전의면	0.42	0.21	△0.21
연서면	0.42	0.22	△0.20
소정면	0.50	0.23	△0.27
금남면	0.47	0.24	△0.24
부강면	0.57	0.28	△0.29
연기면	0.50	0.37	△0.12
장군면	0.43	0.40	△0.04
조치원읍	1.29	0.64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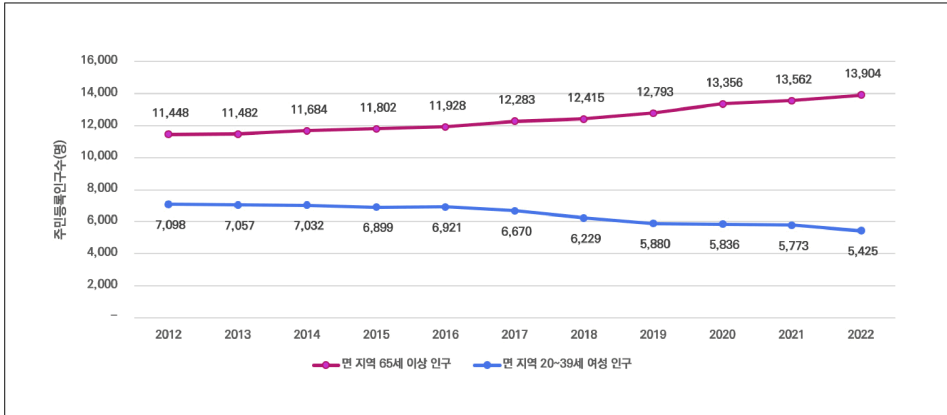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 (2022년 기준)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관내 9개 면 지역 모두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지역(조치원읍 0.6)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의 읍·면 지역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읍·면의 지역 소멸위험지수의 하락은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지역 내 불균형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증거임
- 소멸위험지수 감소 패턴도 지역 내(도시 지역 vs. 농촌지역 간) 상이함
- (동 지역 감소 패턴의 특징) 동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분동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특징적임(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
 - (읍·면 지역 감소 패턴의 특징) 읍·면 지역의 경우 20~39세 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타 지자체 인구감소 위기 양상과 동일한 패턴이 특징임



[그림 3-1] 세종시 읍면동별 소멸위험지수(2013년 ⇒ 2022년) 변화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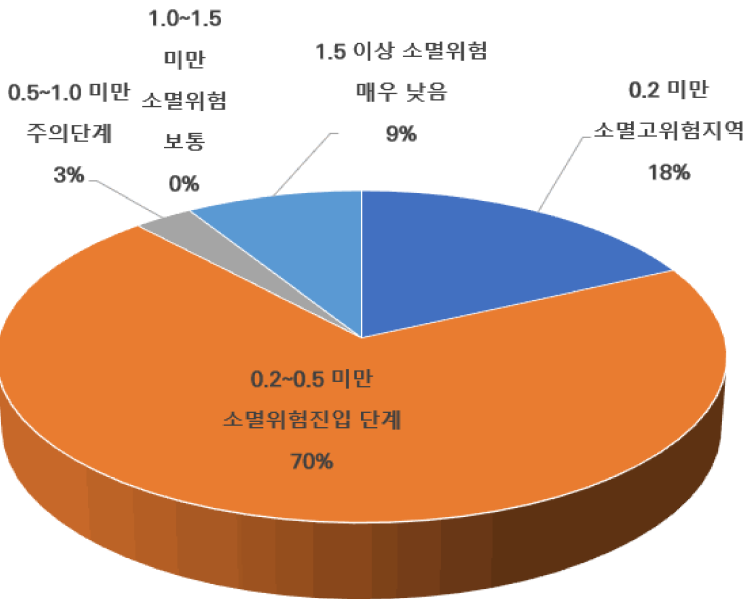
[그림 3-2] 세종시 9개 면 지역 65세 인구 및 20~39세 여성 인구 변화 추이 (2012~2022년)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 (지리적·공간적 인구감소 위기의 특징)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멸위험지역 (소멸 고위험 + 소멸위험진입 단계)은 전체 면적 중 88.4%를 차지함 (2022년 기준)
 - (소멸 고위험 단계) 세종시 전체 면적의 17.9%(83.1km²)가 해당됨
 - (소멸위험진입 단계) 세종시 전체 면적의 70.5%(327.7km²)가 해당됨
 - (소멸위험 주의 단계) 세종시 전체 면적의 2.9%(13.7km²)가 해당됨
 - (소멸위험 매우 낮음 단계) 세종시 전체 면적의 8.7%(40.5km²)가 해당됨
- (시사점) 세종시의 전체 면적의 88.4%를 차지하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세종시의 설치기관과 행정적 제약(2012년 7월 출범, 단층제)은 오히려 도농복합도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실험할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지원을 통하여 비단 세종시 지역 내 인구 격차를 해소와 더불어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수도권 인구 감소,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표 3-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단계명	면적(km2)	비율(%)
소멸고위험지역	83.1	17.9
소멸위험진입 단계	327.7	70.5
주의단계	13.7	2.9
소멸위험 보통	0.0	0.0
소멸위험 매우 낮음	40.5	8.7
세종시 전체 면적	46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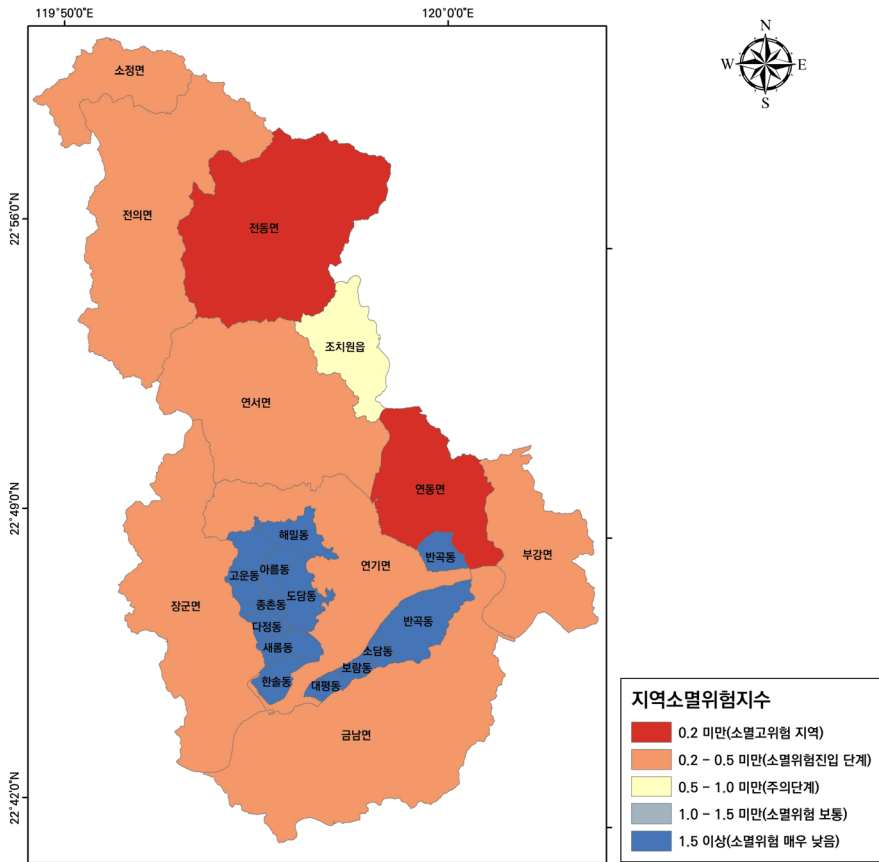


주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표 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단위: 곳,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2년	소멸 저위험	보통	주의	소멸위험	소멸 고위험	합계
세종특별자치시	12	0	1	8	1	22
읍·면 지역	0	0	1	8	1	10
동 지역	12	0	0	0	0	12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2.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지역 내 불균형의 지표 “빈집 증가”

□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 인구감소 위기 심화에 따른 빈집 증가

○ 지역소멸위험이 점차 높아지면서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및 유출로 인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

-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모든 분야를 축소시키며,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있음
- 세종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에서는 관리되지 않은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 경관 저해, 화재 및 붕괴위험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

○ (빈집 방지 원인) 빈집 방지 이유는 소유자 비용 부담 발생에 기인함

- 빈집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되나 철거할 경우, 해당 토지(나대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소유자 부담 증가
-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세율 0.1% / (토지) 시가표준액의 70%, 세율 0.2%
-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계획서 제출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건축사 검토비용 등의 발생으로 소유자의 건축물 해체신고 수가 적음

○ (법적 근거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빈집에 관한 법적 근거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어 세종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빈집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농어촌정비법」(농식품부·해수부 소관)
- 도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국토부 소관)

□ 세종시의 빈집 증가에 따른 문제점: “근린환경 악화와 사회적 문제와 비효율 증가”

○ 세종시 읍·면지역은 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경관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임

○ 빈집은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키며, 건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으로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함

- 세종시는 신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세종시 빈집 현황

- 2021년 세종시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빈집은 647호로 파악됨
 - 이 중 조치원읍은 111호이며, 면 지역은 전체 빈집의 82.8%인 536호가 분포하고 있음
 - 금남면(100호), 전의면(85호), 연서면(75호), 연동면(74호) 순으로 빈집 수가 많음
- 빈집 밀집도가 높은 권역은 조치원읍, 금남면, 연동면이며, 특히 조치원읍은 인접 격자 간의 빈집 밀집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그림 3-3] 참조)
- 일반 빈집은 424호(65.5%)이며, 특정 빈집(3등급, 4등급)은 223호(34.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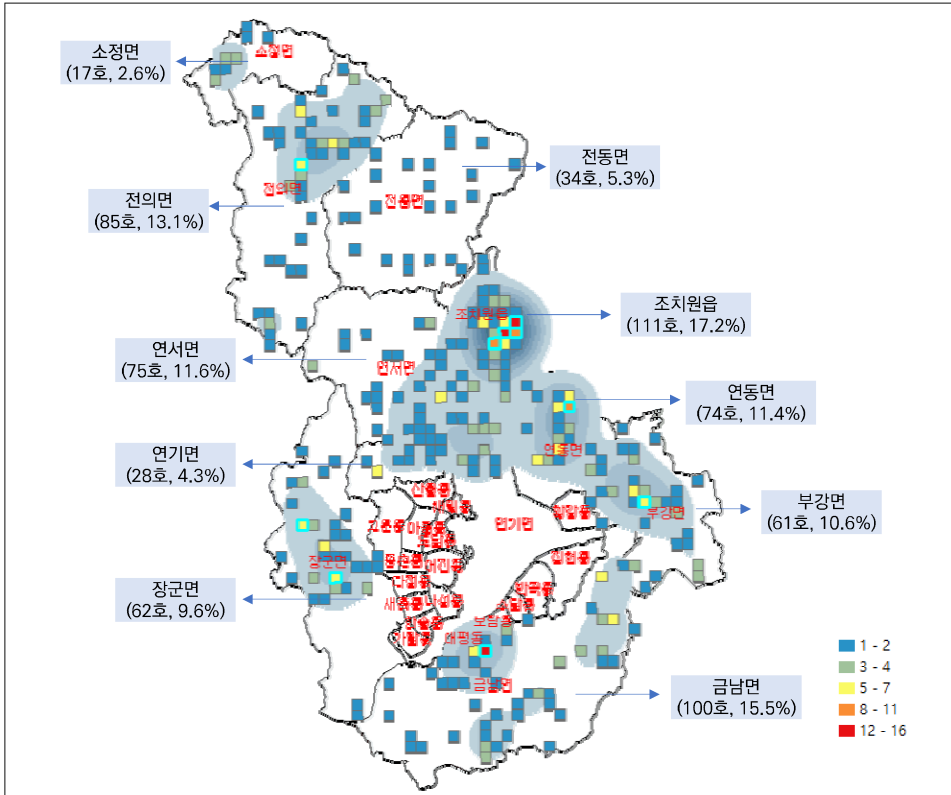
[표 3-8] 유형별 빈집 현황

등급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174호(26.9%)	250호(38.6%)	108호(16.7%)	115호(17.8%)

주택유형	단독주택	그 외 주택
	468호(77.7%)	134호(22.3%)

허가여부	허가	무허가
	603호(93.2%)	44호(6.8%)

전체 빈집	647호
-------	------



[그림 3-3] 세종시 빈집 분포 및 밀집 현황

주: 500m×500m 격자로 빈집 밀집도가 높은 지역 선정

□ 세종시 빈집 현황 검토의 시사점

- (시사점) 인구감소, 지역소멸,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빈집활용 및 주민수익사업의 모델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 추진이 필요함

3절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획·완화 정책 제안

1.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1)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운영(중·장기적 관점)

-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그 재원의 조달과 활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의 국가적인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인구불균형과 인구감소 위기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구 분산을 위한 적극적인 완화, 기획, 적응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적극적 관점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각 지역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은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함
- 다만, 이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기초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 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세종시 배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임

2) 지역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 (대 정부 건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00분의 10(광역지원계정 B)’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할 중앙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 드림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시기·행정체계의 특수성,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설치 목적 달성,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먼저 할당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어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이 세종시에 배분될 경우,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으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과 (가칭) 광역연구미래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조망해보고자 함
 - 세종미래마을조성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도농복합도시 인구감소위험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함

2. 세종미래마을조성 사업 시범 실시 후 전국 확산 추진

1)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개요

추진배경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낙후지역 증가함. 도심과의 격차 및 안전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미래 농촌 마을 모델 구축 필요함 시기임

[표 3-9]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3~'27(5개년간) * (시범사업) '23년도 4개마을 조성 / 20억원 • 사업내용: (1단계) 빈집철거, 정원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 (2단계) 빈집개량, 주민수익 모델 발굴 (3단계)귀농귀촌이 활성화된 공동체 마련 * (세종시 빈집현황) 647호(일반 424, 특정 223) /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22년, 세종시) • 추진경과: 세종미래마을 대상지 공모('23.1.30.~2.15) • 추진방향: 새마을회를 중간조직으로 활용, 주민이 직접 수립한 마을계획으로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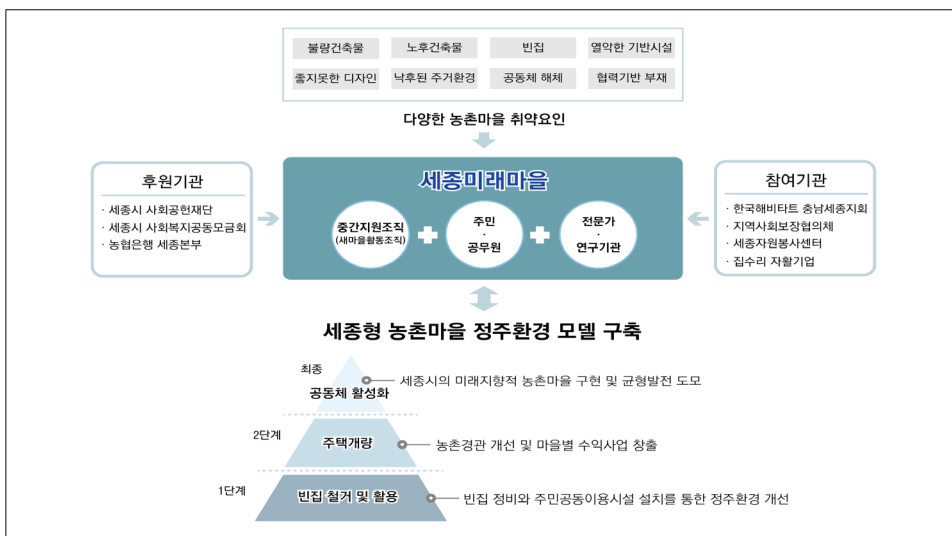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실 내부자료(2023), <세종특별자치시 건의자료(2023년 2월 10일자)> 일부 발췌

- 세종시는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주요 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 강화 및 공동체가 활성화된 계획적인 미래마을을 조성하고자 세종미래마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빈집철거, 활용, 노후주택 개량과 주민수익사업 모델 발굴 등 단순 빈집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농촌의 생활환경 및 경관을 개선함

- 전원생활을 기대하는 귀촌·퇴직자, 젊은 가족이 유입 가능한 여건 마련과 맞춤형 안전·치유·힐링 등의 공동체를 조성함
- 지역 특색과 거주자를 고려한 소득형 6차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빈집정비 방향은 정부의 최근 빈집정비 관련 정책을 따르면서, 세종시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추진함

□ 추진 방식

- 개별 빈집철거와 마을단위 시범사업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함
 - 개별단위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농촌)과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철거 및 주택개량 용자 알선 등을 지원함
 - 10개 읍면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5년간 빈집 275개 철거(매년 55채)
- 마을단위 시범사업은 빈집 비율이 20%(5호)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마을을 선정함
 - 빈집철거와 빈집을 활용한 텃밭, 공동정원, 주말바베큐장 사업, 주택개량 추가 지원금과 용자 알선 및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지원



[그림 3-4] 세종미래마을 추진 구상도

자료: [표 3-9]와 상동

시범마을 선정

- 대상 범위는 빈집정비 대상이 있는 마을 중 마을계획서를 제출한 마을로, 마을계획, 빈집정비 동의서 및 주민참여 적극성,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단에서 순위를 선정함

[표 3-10] 시범마을 현황

연번	마을명	연계 사업 반영	주민 제안 주요 내용
1	장군면 금암2리	마을만들기(농업정책과)	마을경관 개선 (빈집3호 정비, 금강 청벽 경관활용)
2	연동면 노송1리	마을만들기(농업정책과)	마을경관개선 (빈집4호 정비, 마을공용주차장, 꽃정원 조성)
3	연서면 봉암2리	취약지역개조(농림부) 마을만들기(농업정책과)	경관개선 및 소득증대 (빈집2호 정비, 주말농장운영 등)

2) 확산 추진을 위한 과제

농촌 정주환경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한 과제

-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은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전략 중 ‘기획정책과 적응 정책’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농촌 정주환경 모델 설립을 위한 다부처 통합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세종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에서 세종시 토론자료의 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미래 마을’을 제시하였음
 - 세종시, 새마을회, 농협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 철거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빈집 벌칙을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건의, 빈집법 통합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래 농촌마을 모델 구축과 확산을 강조함
- 국가 차원의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시작 모델로서의 확장
 - 새마을회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 빈집정비의 선도 모델이 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새 미래 마을 운동”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예측되는 미래에 맞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며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속성을 반영하여 인구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주안점 제안

- (개념정의) 빈집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운동(movement)
- (의제 1) 세대 간 협력으로 마을 돌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1인 가구 돌봄, 고독사 예방 등
- (의제 2) 안전한 농촌 지역 만들기
- (의제 3) 다태아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 강화
- (의제 4) 워케이션 + 농촌 관광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 (재원조달 방안: 단기적)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배분받을 경우,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모델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적)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운용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 농림부(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행정안전부(보행환경개선, 마을기업 육성 등), 국토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문체부(국토여행 활성화 사업 등) 등이 있음
- 각각의 부처별 공모가 개별적·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재활성화 계획의 적기 지원에 한계
- 특히, 도농복합도시이자 단층계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경우, 도심지역 외곽의 농촌은 인구소멸이 진행되어도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3. 추진체계 제안: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1) 설치·운영의 필요성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필요성 제안

- 지역의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위기에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차원에서의 대안
- (제도적 차원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위기의 측정과 대응을 위해서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인구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하향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백화점식 인구정책종합계획으로 차별성 부재, 자치단체별 인구·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전략기획 조직 부재
 - (기대효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및 지역소멸대응 기금(10년 일몰기한) 운용의 실효성 제고, 지역 맞춤형 인구 미래 전략 구상
- (조직적 차원의 필요성) 정책에 있어 종합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획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2) 추진 방안

- (추진체계 제안) 시·도연구원 활용한 전략기획 조직 운영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추진체계 마련
 - 지역 모니터링(합계출생률, 인구유입·유출, 생활인구, 체류인구, 인구감소지역 실태조사 등), 단기 사업 추진, 중장기 전략 마련(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등), 기초 자치단체 지원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재정적 차원) 국비 및 지자체 자체 자원 매칭 활용
 -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세종시를 포함한 시·도지역에 배분함으로써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3-1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구 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안)
근거 법·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u>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공공기관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연구원에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외에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부재. 센터 설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지원, 관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인구미래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상향식 전략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
재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0년 후 일몰)	국비(지역소멸대응기금 등) + 시비 매칭
차별성	하향식. 인구감소 지정 지역 한정.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초점. 1개 공공기관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상향식. 제외 지역 없음.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자연적 증가(출생)와 감소(사망, 고령화)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 가능

- (기획+완화+적응정책 추진체계)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활용한 중앙-지방 공동 대응은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생활인구와 인구이동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축적하고, 출산 결정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시와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이 모든 지역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2절 진단: 미혼한부모 지원 정책

3절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4장

4장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1절 제안 배경 및 목적

1. 개요

- (세부 연구 목적) 제4장에서는 미혼한부모의 출산과 양육 결정, 그리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대응 시각의 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응·완화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함
 - 국가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양육미혼한부모 지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인구 적응·완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 대상자 선정 이유
 - 미혼한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정부의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구 전략을 고려한 대상자집단에 부합하기 때문임
 - 최근, 미혼임신부의 불법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고, 미혼모의 출산 후 신생아 유기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주목할만한 정책적 대응은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출생아수 감소세 완화하기 위한 완화정책 사업이 유례없는 인구절벽을 경험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정책 내 사각지대로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적응·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가짐

- 이에 본 연구는 누구나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이자 집중해야 할 완화정책대상으로 ‘미혼한부모’를 선정하여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 제4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 제4장 주요 내용별 세부 사항

4장 주요 내용	세 부 사 항
① 현황 검토를 통한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한부모 현황 • 베이비박스 운영 실태 • 인공임신중절 실태 • 국내외 입양 현황
② 진단: 미혼한부모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중 미혼한부모 지원 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미혼한부모지원 사업유형별 발생가능한 문제점 • 법제도 측면에서의 충분성 검토(미혼한부모 지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가?)
③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별 정책 개선 방안 • 사업유형별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정책 제안 •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2. 미혼한부모를 둘러싼 이슈 점검: 왜 중요한 정책 대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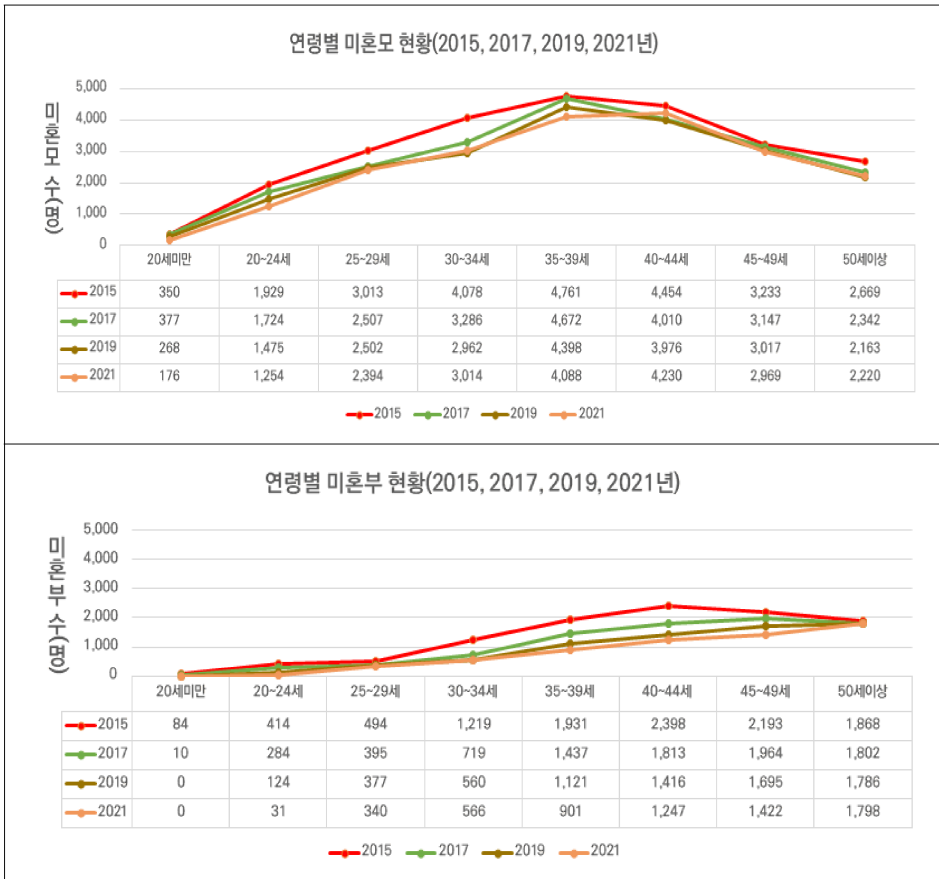
1) 미혼한부모 현황: “미혼한부모 연령집단별 지원 체계 강화 필요”

[단독] 생활고에 분유값 벌러 성매매까지 나선 엄마…홀로 남겨진 한 살배기 숨져 [박명원의 사건수첩]

미혼모인 A군 친모, 가족들과 관계 단절 기초생계급여 등 매달 137만원으로 생활 극심한 생활고로 양육비 감당 어려워지자 사건 당일도 아이 홀로 두고 성매매 나서 집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아이 숨진 채 발견
 法, 이례적으로 집유 선고…“사회도 일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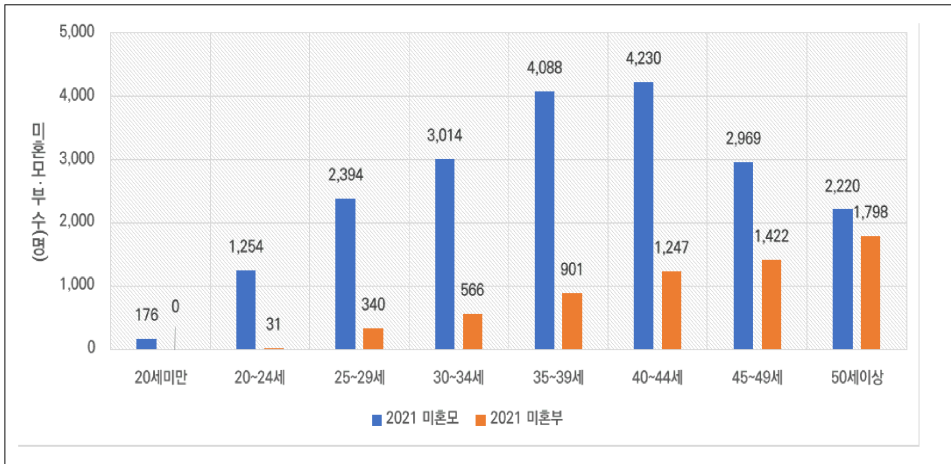
*자료: 인터넷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5500656?OutUrl=naver>. 2023년 2월 26일자

- (전국 미혼모·부 현황) 미혼한부모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2015년 대비 2021년 미혼모·부 규모는 24% 감소함
- (전국 미혼모 연령별 특징) 20대 미만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대신, 20세~39세 이하 연령집단은 52.8%를 차지함
 - 2021년 20세 미만 미혼모는 전체 미혼모의 0.9%를 차지함
 - 2021년 기준 40~44세 20.8%, 35~39세 20.1%, 30~34세 14.8%, 25~29세 11.8%, 20~24세 6.2% 순
 - 2021년 기준, 40대 이상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 46.3%



[그림 4-1] 연령별 미혼모부 현황(2015, 2017, 2019,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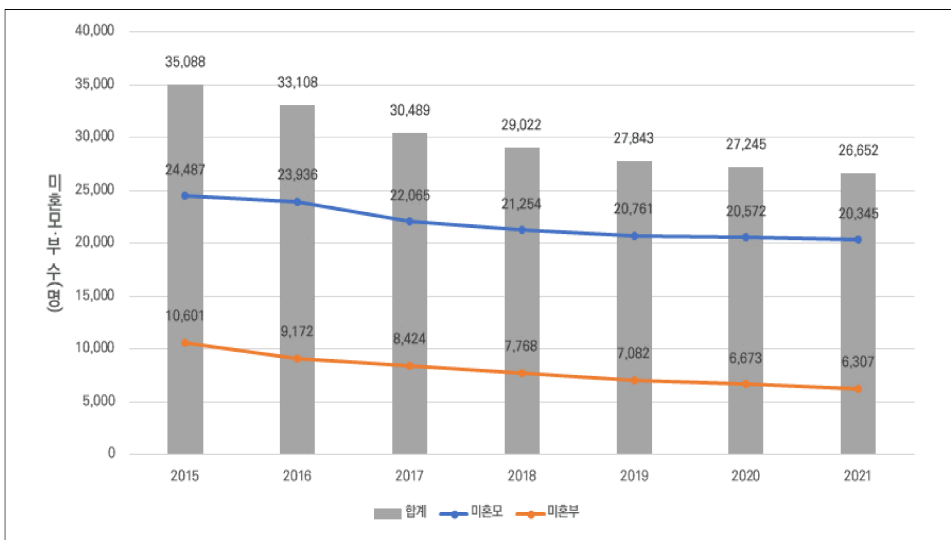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 국내 입양 소년·소녀 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현황 데이터 재구성



[그림 4-2] 전국 미혼모부 연령별 현황(2021년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데이터 재구성,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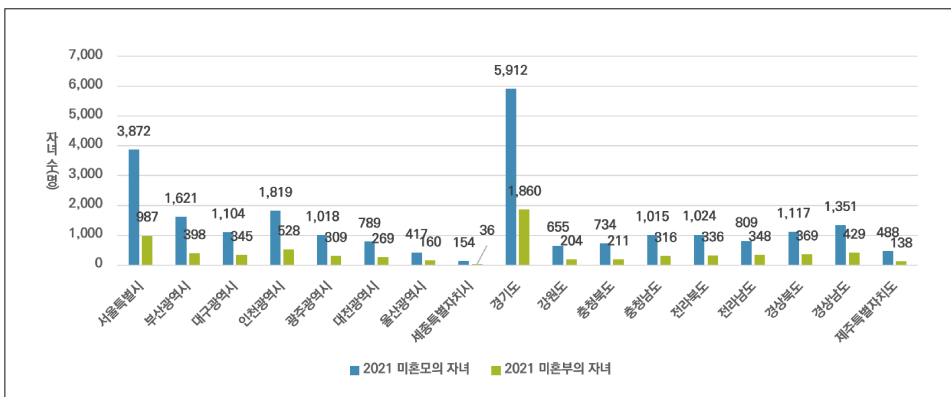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26,652명(미혼모 20,345명, 미혼부 6,307명)



[그림 4-3] 연도별 미혼모·부 현황(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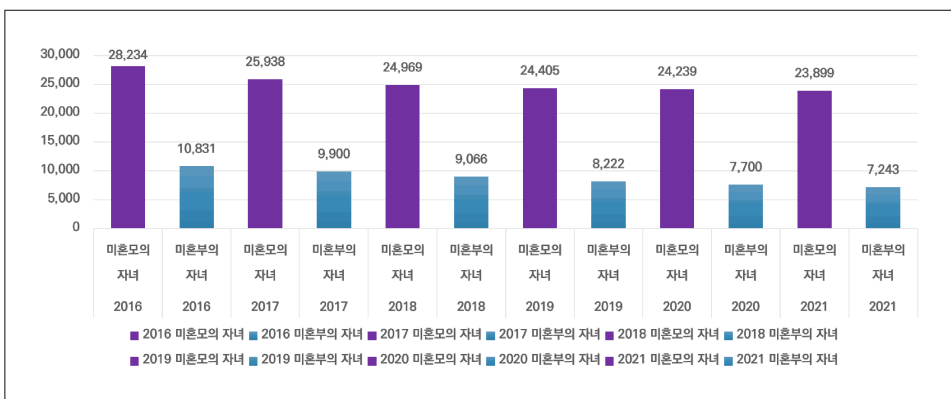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시도' 데이터 재구성, 각 년도.

- (전국 미혼부 연령별 특징) 미혼모에 비하여 미혼부의 경우,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21년 기준, 50세 이상 28.5%, 45~49세 22.5%, 40~44세 19.8%, 35~39세 14.3%, 30~34세 9.0%, 25~29세 5.4% 순
 - 2021년 기준, 40대 이상 미혼부가 차지하는 비중 70.8%
- 시·도별 미혼한부모의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미혼모의 자녀 수가 미혼부의 자녀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시·도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수 현황(2021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 국내 입양 소년·소녀 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현황 데이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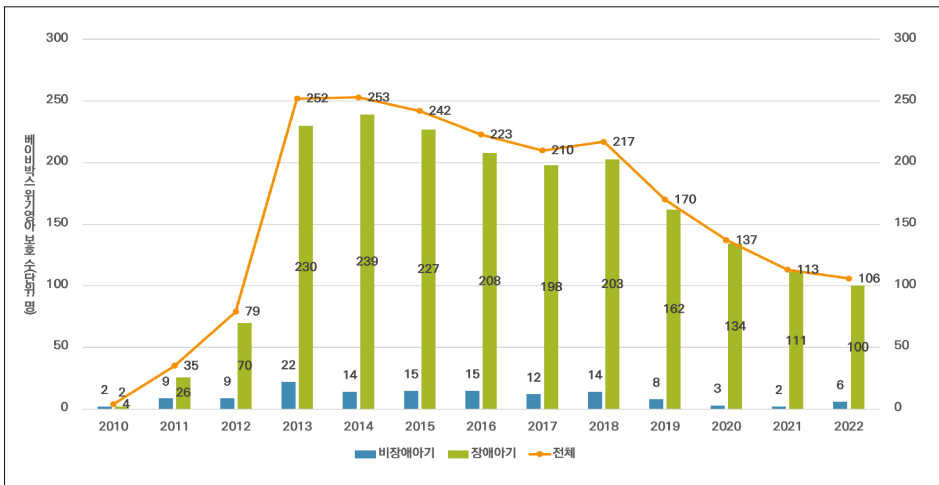
[그림 4-5] 연도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 국내 입양 소년·소녀 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현황 데이터 재구성

2) 베이비박스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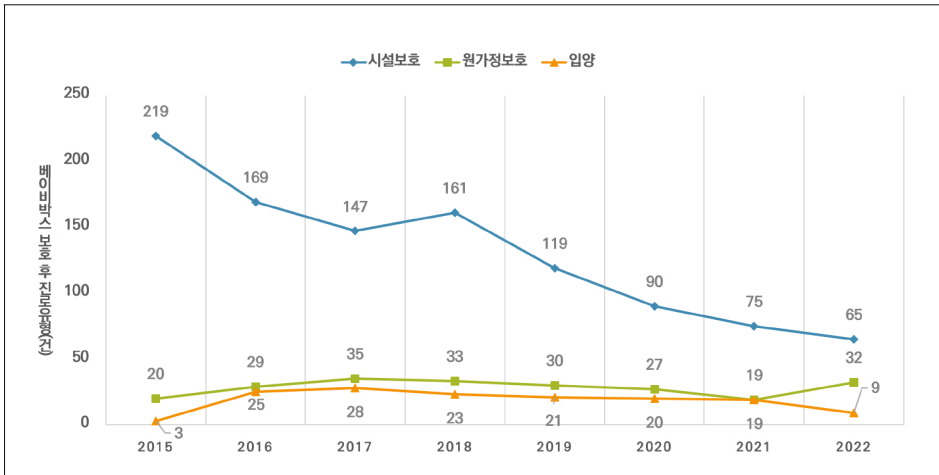
□ 베이비박스 운영 실태(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 최근 베이비박스 주요 특징: “20대 위기임산부와 미혼 위기임산부의 높은 비중, 원가정 보호 의지 증가 추세”
- 베이비박스는 국내에서 민간이 자체운영하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박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 12월에 최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위기영아는 주로 장애가 있는 아기가 비장애 아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2022년 기준 장애아기 94.3% 차지).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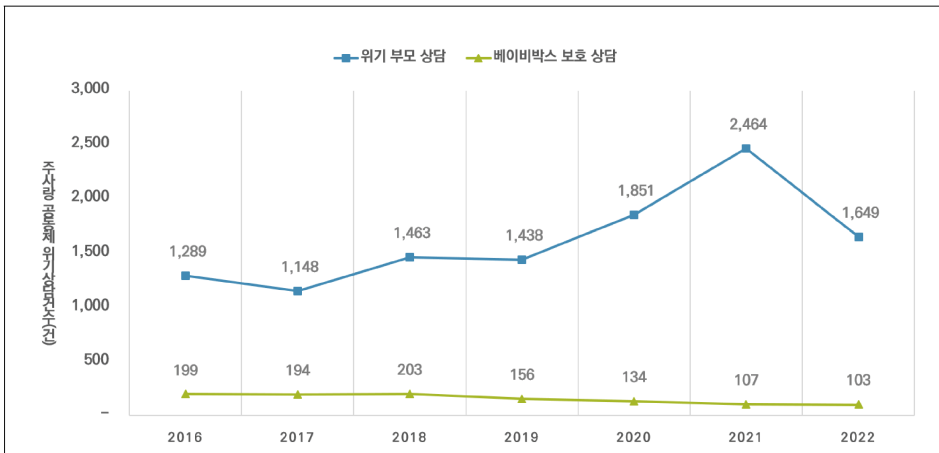
[그림 4-6] 연도별 베이비박스 위기영아 보호 수

자료 : 서울연구원(2023년 3월 2일자), 인포그래픽스 '341.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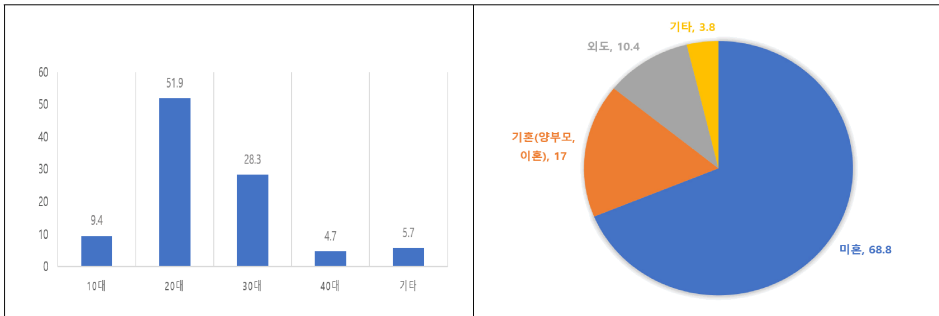
[그림 4-7] 연도별 베이비박스 보호 후 진로

자료: 서울연구원(2023년 3월 2일자), 인포그래픽스 '341.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 자료 재구성



[그림 4-8] 연도별 주사랑공동체 위기상담 건수

자료: 서울연구원(2023년 3월 2일자), 인포그래픽스 '341.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 자료 재구성



[그림 4-9] 2022년 기준, 주사랑공동체 내방 위기임산부 연령대 및 혼인상태(단위: %)

자료: 서울연구원(2023년 3월 2일자), 인포그래픽스 ‘341.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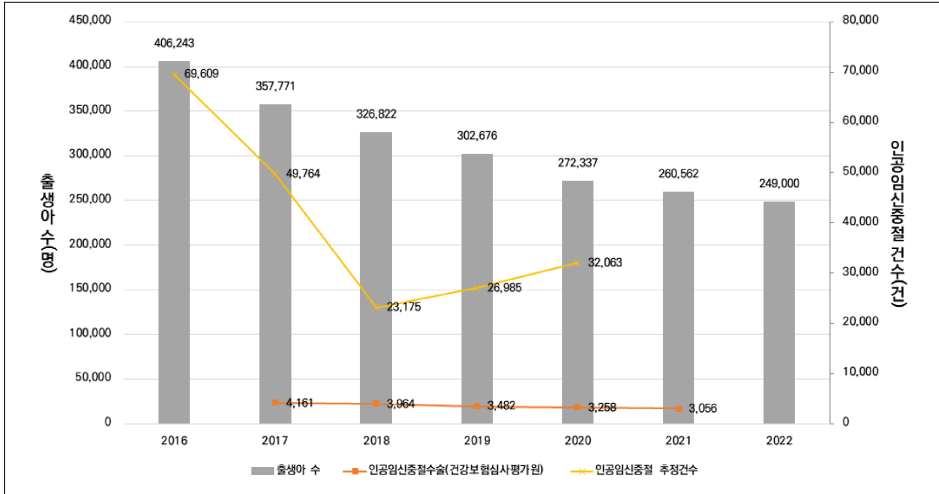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밝혀온 미혼모의 입양 결정 요인⁴⁾

- 미혼모가 임신을 인지한 후 타인의 증용과 설득에 회유되거나 양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이는 아동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
 - 노충래·김원희(2004): 미혼부와의 결별,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학력 수준, 가족의 임신 사실 미인지 등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드러남(미혼모 33명 대상 양적 연구 결과)
 - 임해영·이혁구(2013):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충분히 고민할 여유가 없이 주변인들의 시선,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포기, 좋은 엄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으로 입양을 결정함
 - 류정희 외(2021:60-61): 입양을 실행한 경우도 큰 죄책감과 상실의 아픔을 겪음
 - 박동진 외(2017): 미혼 상태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주변(부모 포함)인들이 낙태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할 것을 증용한 경우,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양 특례법 규정으로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할 생각도 함

4) 노충래, 김원희(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 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박동진, 김혜성, 김희숙, 이철아, 엄주희, 권오용(2017).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323-372.; 임해영, 이혁구(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3) 인공임신중절 실태

□ 인공임신중절 실태



[그림 4-10] 전국 출생아 수 변화추이와 인공임신중절 건수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원자료분석 결과 및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12, 2023.03.08,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데이터 재구성

- (합법적 + 불법적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추정치
 - 2020년 기준,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추정됨. 다소 부침은 있으나 감소추세
-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기준 2020년 3,258건, 2021년 3,056건
- (합법적 + 불법적 현황)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20년 추정치 약 32,063건(15~44세)
 - '출생아 수보다 낙태아 수가 더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움. 2020년 출생아 수 27만2천3백 명. 인공임신중절 추정치(합법적+불법적)의 약 9배
 - 인공임신중절률: 만 15~44세 여성인구 천 명당 3.3건 (만 15~49세 여성인구 천 명당 2.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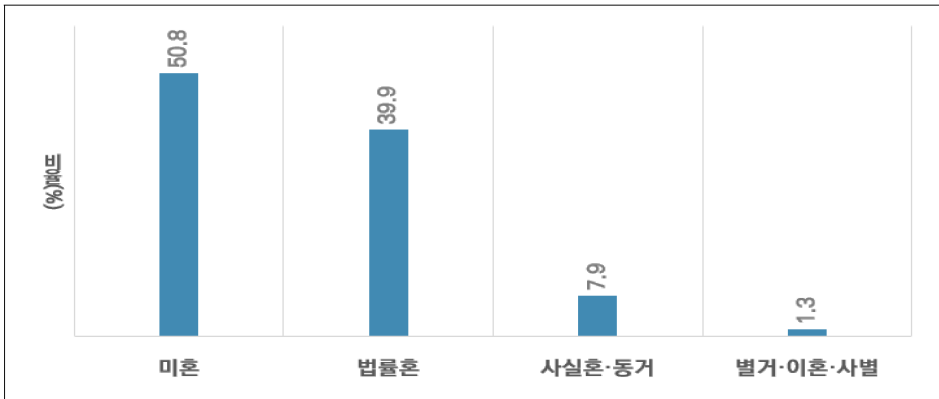
*추정방식 : 2021년 실태조사 15~44세 여성인공임신중절률을 2020년 연앙인구 만15~44세 여성 모집단 수를 곱하여 추정함
(5세 단위 연령 집단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sum_{n=1}^6 (\text{인공임신중절률}(n\text{집단}) \times \text{집단별 2020년 연앙인구}) = 32,063\text{건}$$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

- 인공임신중절 경험 당시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미혼 50.8%”로 가장 많은 응답률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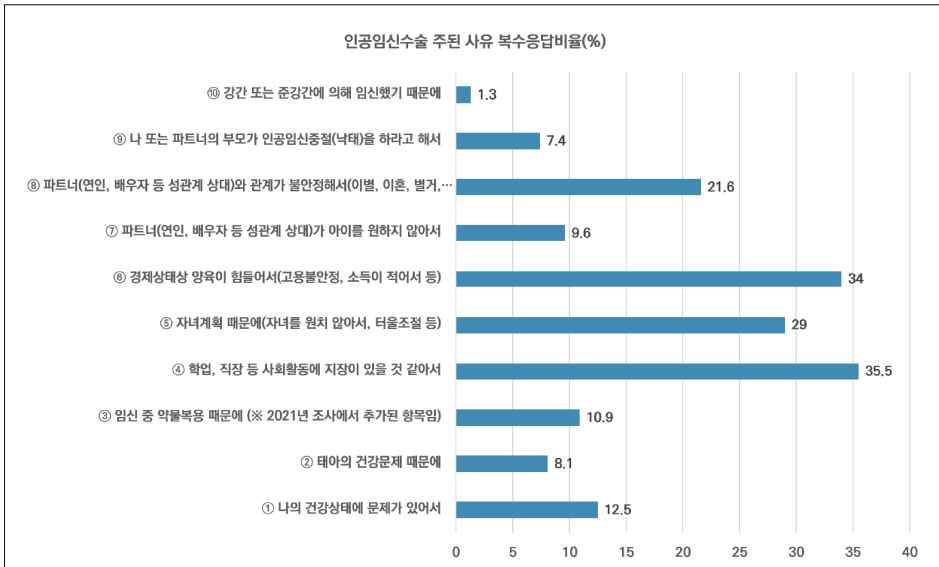


[그림 4-11] 인공임신중절 경험 당시 혼인상태(단위: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유 조사 결과

-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에 따른 합법적 사유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드러남
 - 만15~49세 여성 인공임신중절 주된 사유(복수응답, 2018년 조사 결과도 동일응답 순)
 - ① 1순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5.5%
 - ② 2순위: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4.0%
 - ③ 3순위: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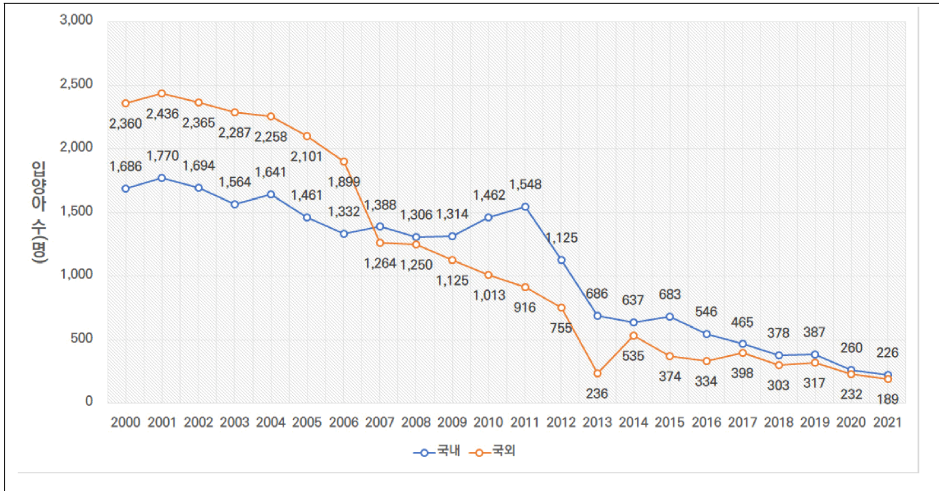


[그림 4-12] 만15~49세 여성의 인공임신수술 주된 사유(복수응답, 단위: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원자료분석 결과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사유 외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불법인 상황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이 중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주목해야 할 정책 대상자 집단은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경우임
 - 이들 집단을 ‘양육취약가구’로 정의하여, 국가적 차원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집중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함

4) 국내외 입양 현황



[그림 4-13] 국내외 입양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 국내 입양 소년·소녀 가정 현황>, 국내외 입양현황 데이터 재구성

○ 강화된 입양제도로 인하여 양육 한부모 증가

- 최근 20년간 국내외 입양건수는 크게 감소, 그러나 국제입양송출국(State of origin) 세계 3위 오명(2020년 기준, 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their Family-ISS(2021). Monthly Review. N 257 December, 2021)
- 2010년 대비 2021년 전체 입양건수 83.2% 감소(국내 입양 84.5% 감소, 국외 입양 81.3% 감소)
- 입양 감소 원인(추정):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이에 따라 입양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국외 입양보다는 가급적 원가정 우선 보호, 국내 대안가정 중심의 입양정책을 추진해 왔음. 따라서, 입양절차도 어려워져 입양건수가 크게 감소함
- 한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한부모가구도 증가하고 있음(<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

[표 4-2] 해외입양송출국 순위(2020년 기준)

State of origi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olombia	901	562	355	359	314	542	559	597	387
Ukraine	713	674	560	339	339	270	280	366	277
South Korea	797	206	494	406	362	396	303	254	266
India	362	298	242	233	323	518	456	503	263
China	3,998	3,316	2,734	2,817	2,475	2,189	1,773	1,059	250
Haiti	262	460	551	236	324	398	325	257	209
Bulgaria	350	421	323	262	324	289	201	270	169
Hungary	145	104	77	84	88	233	235	238	158
Taiwan	291	188	147	172	150	157	109	149	124
Thailand	251	272	207	172	250	218	215	208	117
Philippines	374	525	405	354	313	304	206	214	112
Vietnam	216	293	285	287	248	356	215	220	108
Nigeria	238	225	175	163	139	206	185	140	96
United states	178	167	155	160	147	89	140	76	89
Brasil	337	246	31	32	29	127	38	66	55
South Africa	81	147	176	172	103	130	112	113	53
Burkina Faso	87	74	99	56	61	59	37	59	45
Russia	2,442	1,703	381	210	151	319	260	221	44
Belarus	46	N/A	104	40	90	27	112	81	42
Jamaica	N/A	N/A	N/A	N/A	N/A	N/A	N/A	N/A	N/A
Republic of Congo (Brazzaville)	N/A	N/A	N/A	N/A	N/A	28	N/A	41	36
Burundi	N/A	N/A	N/A	N/A	N/A	40	59	53	36
Rumania	0	7	14	23	19	29	41	24	33
Peru	122	92	97	79	91	71	56	67	32
Lithuania	98	80	78	62	67	47	56	28	32
Madagascar	46	40	57	77	62	54	40	40	31
Liberia	N/A	N/A	N/A	N/A	N/A	22	30	51	29
Pakistan	N/A	N/A	N/A	N/A	N/A	N/A	N/A	26	28
Morocco	N/A	N/A	N/A	N/A	N/A	N/A	N/A	35	27
Uganda	246	289	203	208	191	60	27	37	26
Mexico	10	10	19	10	19	6	20	40	23
Ivory Coast	27	22	29	27	10	N/A	49	27	22
Latvia	59	131	96	189	89	84	79	38	20

자료 : 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their Family-ISS(2021). Monthly Review. N 257 December.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나.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 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意的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3조).
- 마.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 사.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 아.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 해외 입양 발생 유형: 미혼모 아동 비중이 가장 큼

[표 4-3] 해외 입양 발생 유형

(단위: 명(%))

구 분	미혼모아동	기아·빈곤	결손가정	합계
2012년	696(92.2)	1(0.1)	58(7.7)	755(100.0)
2013년	228(96.6)	1(0.4)	7(3.3)	236(100.0)
2014년	509(95.1)	-	26(4.9)	535(100.0)
2015년	358(95.7)	16(4.3)	-	374(100.0)
2016년	327(97.9)	2(0.6)	5(1.5)	334(100.0)
2017년	397(99.7)	-	1(0.3)	398(100.0)
2018년	302(99.7)	1(0.3)	-	303(100.0)
2019년	317(100.0)	-	-	317(100.0)
2020년	231(99.6)	-	1(0.4)	232(100.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2).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 포럼 자료집>. 2022년 1월 24일자

2절 진단 : 미혼한부모 지원 정책

1. 미혼한부모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중 양육 미혼한부모 관련 사업

○ 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미혼한부모지원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됨(검색일: 2023년 3월 10일 기준)

① 미혼모 보호: 미혼모 보호 사업은 출산지원, 양육지원 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생활지원은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이 주어지며, 공동생활 지원은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국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을 내용으로 함

②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는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혼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담고 있음

-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건강보험 지원 등)의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혼부의 아이일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해당 아동이 건강보험 지원 등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③ 양육 및 자립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④ 미혼한부모 교육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학업중단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단기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임.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지역별 지정·운영 현황) 서울 1개소, 부산 1개소, 대구·경북 1개소 (대구), 인천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세종 1개소(대전),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 제주 1개소

[표 4-4]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중 미혼한부모 관련 내용

사업명 및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수행 기관	미혼한부모 관련 특정 조항
<p>〈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명의인 우편통보 요금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p>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p>	<p>지방 자치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로 미혼한부모 여부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자녀 양육여부 확인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의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을 현장조사를 거쳐 미혼부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 추정) 제출(유전자검사 결과 사후에 제출. 부정수급 시, 기지급된 아동양육비 환수) •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 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만 35세이상 한부모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 하는 것은 “미혼인 한부모”만 해당. 미혼한부모가족 여부는 관할 읍면 동을 통해 확인 및 관리 (지침 170쪽) • 미혼한부모 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미혼, 혼인 무효)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 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한 부모로 보지 않으며, 혼인취소 역시 미혼한부모로 보지 않음 (지침, 171쪽)

사업명 및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수행기관	미혼한부모 관련 특정 조항
<p><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등 	<p>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p>	<p>지방자치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서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제외(지침, 167쪽 참조)
<p><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사례관리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 사업홍보 등 • 연구개발 	<p>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p>	<p>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의 경우 “교통비 지급 기준”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등·하교시 지원 한도 3만원의 교통비 정액지원 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미혼모 대안위탁교육기관에 통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p><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p>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p>	<p>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 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로 유형 구분. 이 중 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9개소가 있음(2022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이하 ‘지침’>. 135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대상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사업명 및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수행기관	미혼한부모 관련 특정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스 지원 • 공동생활 가정형(매입 임대)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p>필요로 하는 자가 대상임.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가 가능함. 입소기간은 1년 이내로,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입소자의 경우 학교 졸업시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지침에 규정(지침, 236쪽).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의 경우,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입소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하면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주거, 식사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시설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해 5세 미만 자녀양육 미혼모 입소 가능).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와 식사,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자도 입소 가능 -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입소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기준에 부합하면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미혼모가 있을 경우, 2년+최장 6개월 내 연장 가능)

사업명 및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수행 기관	미혼한부모 관련 특정 조항
				-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주거 및 식사 제공, 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프로그램 실시,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단, 공동생활지원형 시설은 보장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지급 시 참고해야 함
<p>〈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자료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로드된 자료)

[표 4-5]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발달시기	임신기	출산 후 0~6개월	3세 미만 (36개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7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이용))	초기 상담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중 위기지원사업 대상			
	초기 상담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중 교육문화 상담사업(내부규정)			

자료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로드된 자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019~2022년): “시설 부족”

- 미혼한부모의 자립생활까지 연결되는 지원시설 미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적 단절이 관찰됨

[표 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24	124	122	121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42	42	42	42
	공동생활지원	3	3	2	2
	자립생활지원	2	2	2	2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	2	2	2
	공동생활지원	1	1	1	1
	자립생활지원	-	-	-	-
미혼모자가 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2	22	23	23
	공동생활지원	40	41	39	38
		2	2	2	2
일시지원복지시설		10	9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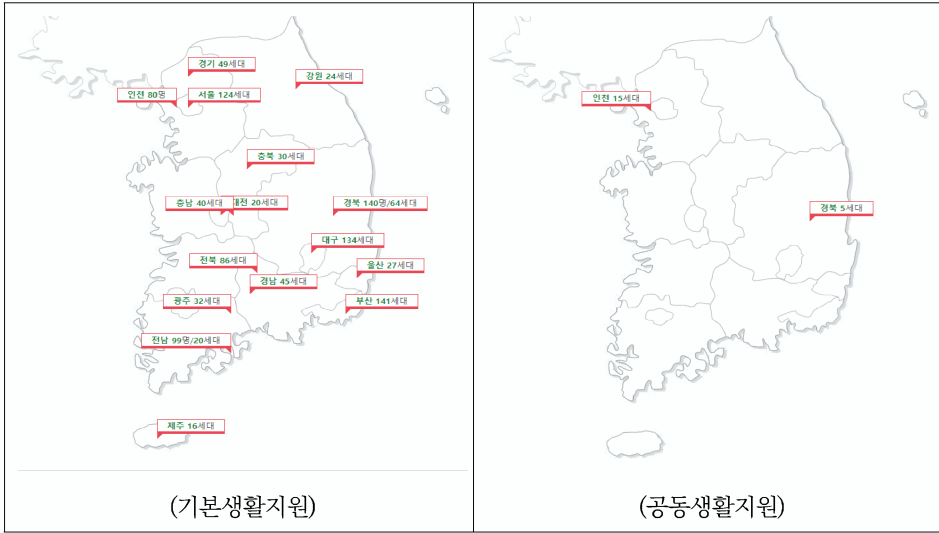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년 3월 15일)

- 2023년 10월 1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과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표 4-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시설 유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7)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제2호 각 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년 6개월 이내	6개월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나.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다.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라. 일시지원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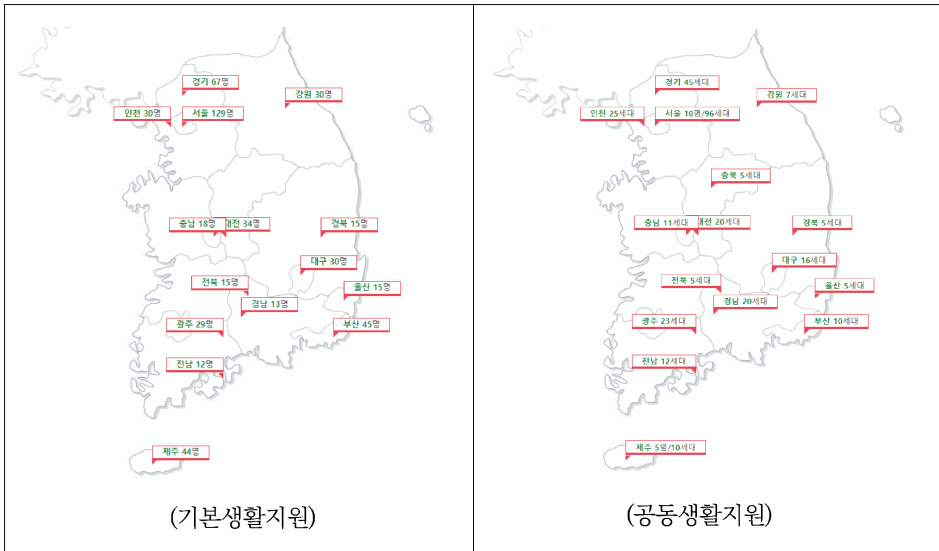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2023년 10월 12일 개정)」 [별표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 재구성



[그림 4-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 현황

주: 2023년 11월 1일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상에 시설유형 변경에 따른 시설현황 업데이트 정보가 부재하여, 2023년 3월 15일자 검색 자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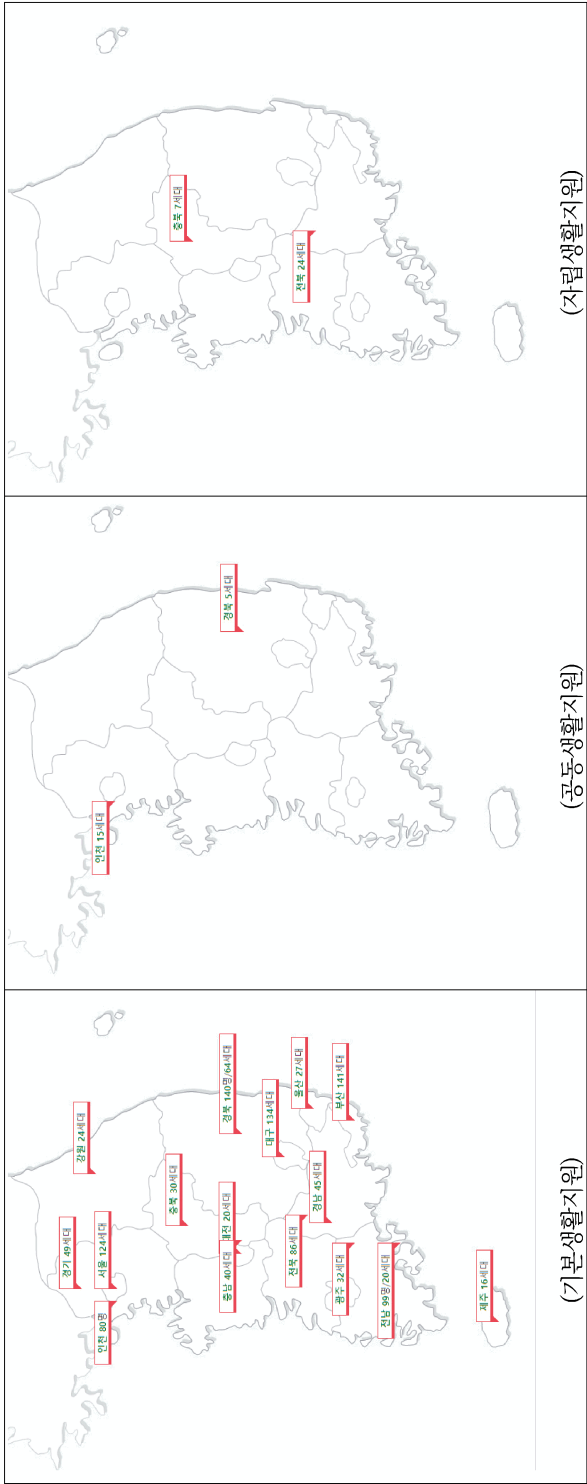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년 3월 15일)



[그림 4-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주: 상동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년 3월 15일)



[그림 4-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주 : 상동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년 3월 15일)

2. 미혼한부모 지원 정책의 문제점 진단

1) 진단 개요

미혼한부모 지원 제도에서 찾은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과 개선 필요

- (미혼한부모지원 사업 검토의견) 2023년 10월 12일자로 한부모가족 보호 시설이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시설, 일시지원시설 유형으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추가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나 방향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 내 시설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부모의 기존 생활권을 고려한 시설유형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검토 시점 기준(2023년 11월) 정부의 미혼한부모지원 사업은 기존 한부모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하나로 분류되어 존재하며, 청소년미혼모 중심의 사업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따라서 미혼모·부의 전 주기적 생애를 고려한-임신 초기부터 한부모의 자립까지- 안정적인 경제활동·주거 환경 및 자녀 양육 및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진은 자녀의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유형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보완하여 제시하는 바임. 이것은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정책 제안이므로, 추후 개별 사업별(유형별) 정책설계와 그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사업 유형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⁵⁾

미혼모 보호 측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은 여전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짐.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명칭 변경(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이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없이는 낙인효과는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지역별로 보호 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 각각의 유형별 보호 시설이 충분히 생활권 내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혼한부모의 경우,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급부행정의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신청주의 제도의 한계)
- 임신기(초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상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에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임신초기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보호시설 인프라로 인하여 임신 후 6개월 이후에 입소 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⁶⁾
- 시설입소자 중심의 상담·의료 지원의 한계가 있음. 시설입소자 외 양육 미혼한부모의 경우는 지원을 받기 어려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임신부 초기 지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미혼모·부 지원사업을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지원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지원은 비교적 강화되었음

5) 정덕진(2019), '양육미혼모의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4; 윤동경·김연옥(2019),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비교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이용우·양호정(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70.; 변수정 외(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민숙(2022), <미혼부모·한부모 자립 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109호

6)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상담사 전화인터뷰 내용(2023년 3월 21일)

- 그러나 실제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보면, 20대 이상자 비중이 크므로, 청소년 중심 지원 체계가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지원 대상자 연령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절차적 유연성 결여) '출생신고'가 양육지원에 기본 요건이나 친자부인 소송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입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이용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퇴소 통보를 받기도 함

- 이용 대상 조건이 이용의 책임성을 묻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융통성이 없어 실제 돌봐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를 더욱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양육 및 자립

○ 시설입소신청 거부, 자격요건의 미스매치, 시설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원 체계 이탈 요인 산재함

○ 미혼가족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마저도, 1, 2, 3차 지원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없음

-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단계별로 기본생활지원(1차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지원(2차 지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3차 지원시설)로 구분됨 (2023년 10월 12일 규칙 개정 이전 기준). 1차에서 2차, 그다음 3차로 이동하면서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성이었음

- 그러나 시설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단절이 발생하며, 그 가운데 사각 지대가 발생해왔음

-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1차 지원시설에 입소했던 미혼모가 2차 지원시설로 바로 입소가 어렵게 되면, 2차 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비(300~500만원)를 받기 어려워짐

- 이때 3차 시설 이용도 어려워짐. 3차 시설은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등을 개별로 구입 준비한 후 입소하도록 되어 있어 정착지원비를 못 얻은 미혼모는 어려움이 생기게 됨

- 또한, 1, 2, 3차 시설이 동일지역 내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것도 실패하면, 지원 체계로 이탈되는 결과로 이어짐

- 따라서 시설 밖 양육미혼한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및 경제적 자립과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이 필요함

미혼한부모교육

- 미혼한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입양숙려제도에 따른 1주일이라고 할 수 있음
-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 출생 이후 1주일 이 지난 후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음
 - 입양숙려제는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상담과 직접양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기간(7일) 동안 어떻게 교육과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자녀 직접양육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연구진 추가 제안)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유형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전반에 있어, 해당 가정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 만약, 미혼부 출생 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과연, 양육비 지원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측면을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가를 아동의 입장에서 촘촘하게 검토해야 함.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때 법적 분쟁 및 환수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여지가 크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3) 법·제도 측면에서의 충분성 검토

- (진단)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을 위한 충분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가?
- 점검 포인트 ‘누구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장치가 충분한가?’
 -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함
 - 한부모 관련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민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부록 표 1-3] 참조)
 - 여기에서는 관련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대상으로 미혼한부모 생애주기 유형을 설정하여, 그 연관성을 검토함

[표 4-8] 법률 검토를 위한 유형 구분

생애주기 구분	미혼한부모 생애주기 유형 구분	
미혼모 중심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신 초기, 중기, 해산/출산기	A
미혼모·부 중심 (자녀 양육 선택부터 경제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 지위에 따른 보호 체계 강화	B
	자립 준비기	C
	주거복지체계 강화	D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지원	E
아동 중심 (출생부터 만18세미만까지)	입양 숙려기간	F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G

□ 「한부모가족지원법」 검토 결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조문을 토대로 미혼한부모 생애주기 유형 간의 연관성을 검토함. 제1장 총칙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한부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관성은 거의 전 조문에 걸쳐 보통 수준임
- 이에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한부모지원시설 부분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F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통 이상 연관성이 발견됨
 - A (임신초기~해산/출산기) 유형: 제2장의 경우, 청소년한부모 교육 및 건강관리, 미혼모 건강관리가 연관성이 높은 편이며, 제3장의 경우, 한부모복지시설 관련하여 연관성이 높음
 - B (미혼모·부 지위에 따른 보호 체계 강화), C (자립 준비기), D(주거 복지체계강화), E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지원) 유형: 제2장에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 F (입양숙려기간) 유형: 모든 법조문에서 관련된 사항 없음
 - G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유형: 제2장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내에 아동의 교육과 보호와 연관성이 높은 법조문이 포함되어 있음(예: 아동교육비,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자녀 양육비 청구 관련 등)
-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양육을 원하는 미혼한부모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안전망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지금의 법·제도는 1절에서 살펴본 미혼모를 둘러싼 이슈 점검 결과에서와 같이 양육 미혼한부모의 다층적이고 중첩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이어지는 3절에서는 사업유형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안해보고자 함.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에 있어서의 정책적 디커플링⁷⁾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7) 조직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제도화된 환경의 압력에 적응하기 위해 발생될 문제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조직 활동과 분리되어 느슨하게 운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과정을 일컫음

[표 4-9] 「한부모가족지원법률」 점검 결과(관련성 낮음 -, 관련성 보통 ○, 관련성 높음 ◎)

법제명	관 련 조 문	생애주기 유형						
		A	B	C	D	E	F	G
한부모가족법(약칭): 제4장 비용 및 제5장 보칙 제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	○	○	○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	○	○	○	-
		제4조(정의)	○	○	○	○	○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	○	○	○	-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	-	-	-	-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	-	-	-	-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	-	-	-	-	-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	-
		제6조(실태조사 등)	○	○	○	○	○	-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	-	-	-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	-	-	-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	○	○	○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	○	○	○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	○	○	○	-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	○	○	○	-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	○	○	○	-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	○	○	○	○	-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	○	○	○	○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	◎	◎	◎	-		
제14조(고용의 촉진)	-	○	○	○	◎	-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	○	○	◎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	○	○	◎	-		
제16조(시설 우선이용)	-	○	○	○	◎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	◎	◎	◎	-		

법제명	관 련 조 문	생애주기 유형								
		A	B	C	D	E	F	G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	◎	-	-	○	-	○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	◎	○	-	-	-	-	◎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	○	◎	◎	◎	-	○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	-	-	-	-	-	○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	-	-	-	-	-	-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호·교육)	-	-	-	-	-	-	-	◎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	-	-	◎	-	-	-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	○	○	○	○	-	○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	○	○	-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	-	-	-	-	-	-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	-	-	-	-	-	-	-
		제22조(수탁 의무)	-	-	-	-	-	-	-	-
		제23조(감독)	-	-	-	-	-	-	-	-
		제24조(시설 폐쇄 등)	-	-	-	-	-	-	-	-
		제24조의2(청문)	-	-	-	-	-	-	-	-

주: A- 임신 초기, 중기, 해산/출산기, B-미혼모·부 지위에 따른 보호 체계 강화, C-자립 준비기, D-주거복지체계 강화, E-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지원, F-임양 숙려기간, G-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3절 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1. 사업유형별 정책 개선 방안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일원화 및 홍보 강화
- 읍면동 주민센터 비공개 안심상담 창구 개설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교육(개인 정보 보호 등) 강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거주기간 연장(임신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안정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의 장애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밖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상담 의료 및 지원 정책 마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미혼한부모 중 20대 이상자 비중이 크므로, 청소년 중심 지원 체계가 사각 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지원 대상자 연령층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출생 미신고 미혼부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절차 개선안 보완 필요
 -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제도 밖으로 내모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예: 시설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자녀 양육 및 자립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미혼한부모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추가 설치 및 역할 확대
- 양육 한부모 지원 요건의 소득수준 과감히 폐지 또는 중위소득 기준 조정(예시: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양육 한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 지역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시설 단계별 설치 확대
- 미혼한부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더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당사자의 조부모와 함께 동거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체계의 확장 강화 필요
 - 미혼한부모 지원은 주로 제한된 정책추진체계에 갇혀 있어, 확장성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임.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부 사업에 지나지 않아, 양육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확장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부모가구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하여, 정책적 이슈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제한된 정책추진체계를 넘어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생성해 나가야 함**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근거하여, 양육 미혼모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미혼한부모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입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모자 지원 강화를 통해 원가정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양숙려제도 원칙 대한 질적 수준 제고 필요(상담과 교육 지원 강화)

□ (추가 제안)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내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필요

- 한부모지원을 위한 절차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의 기본권과 권익이 얼마나 보호 되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부모지원 사업은 주로 한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양육미혼한부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반드시, 그 가구 내 아동의 기본권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정책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과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때 법적 분쟁 및 환수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여지가 크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 강화는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강화 방안은 후술하겠음)
- 사업 유형별 문제점 대비 개선방안을 아래 [표 4-10]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는 바임

[표 4-10]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사업 유형별	문제점 (다카플링 현상)	개선 방안
① 미혼모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은 여전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가짐 • 미혼한부모의 경우,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급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신청주의 제도의 한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임신 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 (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상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잘 자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시설임소자 중심의 상담·의료 지원의 한계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장구 일원화, 홍보 • 읍면동 주민센터 비공개 안심상담 창구 개설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교육(개인정보보호 등) 강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거주기간 연장(임신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안정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의 장애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미혼모·부 지원사업을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지원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청소년에 한해 초기 지원이 강화되었음 • 출생신고도 양육지원에 기본 요건이나 출생신고가 친자부인 소송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입소를 하더라도 더이상 이용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퇴소통보를 받기도 함 • 이용 대상 조건이 이용의 책임성을 묻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융통성이 없어 실제 탈퇴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를 더욱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밖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상담 의료 및 지원 정책 마련 • 실제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보면, 20대 이상자 비중이 크므로, 청소년 중심 지원 체계가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지원 대상자 연령층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출생 미신고 미혼부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산정절차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범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필요(시설보호 및 복지서비스)
③ 양육 및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소거부, 자격요건의 미스매치, 지원체계가 이탈 요인 산재, 시설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한부모 지원” 거점기관 추가 설치 및 역할 확대 • 양육 한부모 지원 요건의 소득수준 과감히 폐지 또는 중위소득 기준 조정(예시: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양육 한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유형별	문제 점 (다커플링 현상)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단계별로 기본생활지원(1차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지원(2차 지원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3차 지원시설)로 구분됨(2023년 10월 12일 규칙 개정 이전 기준). 1차에서 2차, 그다음 3차로 이동하면서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성이었음 • 그러나 시설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단절이 발생하며,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시설 단계별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미혼한부모의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 • 양육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일·생활균형 지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더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당사자의 조부모와 함께 동거 시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 환경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양육 미혼모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 강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④ 미혼한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임양특례법에서는 아동 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후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 이 시기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모자 지원 강화를 통해 원가정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양숙려제도 원칙 대한 질적 수준 제고 필요(상담과 교육 지원 강화)
⑤ 추가 제안: 미혼한부모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내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리 증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길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범람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과연, 이 과정에서 시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때 법적 분쟁 및 환수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여지가 크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데이트 자료)> 및 실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정책 제안을 담음

2. 사업유형별 법률 개정안 제안

1) 개정안 제안의 의의

한부모 관련 법률 검토 배경과 제안 내용 개요

- 여기에서는 앞서 [표 4-10]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 방안과 [표 4-16]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예시의 실행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적 개선(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해보고자 함

특별법으로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제시의 의의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실질적 의미의 특별법임. 행정법 분야의 특례가 필요한 경우 중 ‘복지 등의 분야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입법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양육미혼한부모 지원을 생애주기 전 주기별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과 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2) 사업 유형별 개정안 제시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①: 미혼모보호 측면

-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제안
 - 미혼모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중 시설 보호와 더불어, 시설 밖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함
- 첫째, 제4조(정의)에 2호를 추가하여,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직계존속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세대를 이룬 모자 또는 부자 가구를 포함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목적) 지원대상자 범위에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당사자의 조부모와 함께 동거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추가하기 위함

○ 둘째, 2023년 4월 11일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이 기능을 강조하여 재편됨.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혼한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미혼한부모에 대한 조문을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함

- 미혼모의 경우, 임신초기부터 시설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또는 기간 연장 조치 필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내에서 유형별 시설을 임신·출산·양육시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설 입소 중심의 미혼한부모 지원의 한계가 있음. 시설 유형 외에도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단서 조항 신설 필요
- 예를 들어, 만19세 미만자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년전세임대 사업 제도의 예외 대상(만19세 미만자 신청 불가)임. 또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등 보증금 금액이 상당할 경우 기초자산 형성이 어려운 미혼한부모의 경우 어려움이 큰 만큼, 단서조항 추가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표 4-11]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 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p>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p> <p>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제1항은 현재,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라는 특례조항이 있음. 그러나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가 아닌,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기 위한 특례조항일 뿐, 양육 미혼한부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님 • 제5조의2제2항에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에 대한 특례를 미혼한부모를 고려하여 더 두텁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제4조(정의)에 2호를 추가하여,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직계존속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세대를 이룬 모자 또는 부자 가구를 포함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구분	현행	제안 사항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2023. 4. 11.> 1. 출산지원시설: 생략 2. 양육지원시설: 생략 3. 생활지원시설: 생략 4. 일시지원시설: 생략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4월 시설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이 재편됨. 그러나 '미혼한부모'에 정책 대상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는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미혼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를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함 • 첫째, 미혼모의 경우, 임신초기부터 시설 거주 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또는 기간 연장 조치 필요(예: 미혼모의 경우, 출산지원시설 입소 시 임신초기부터 우선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 설치·운영하여 한 지역 내에서 유형별 시설을 임신·출산·양육시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예: 제19조의2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할 것)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입소 중심의 미혼한부모 지원의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관련 사항이 '노력하여야 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예시: '주거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본인 및 자녀의 장애나 소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②: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제안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개선방안 중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함(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는 절차에 중점을 둔 사업이므로 강화 또는 확대 필요성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③항에서 제시한 아동의 연령과 미혼모·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과 미혼모 또는 부의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일반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연령과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40대의 미혼한부모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청년과 신중년의 경우 다양한 정책 지원의 기회가 존재함. 그러나 40대의 경우 청년기를 넘어서 신중년에도 부합하지 못해 자립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판단됨
 - 물론 연령 기준의 적절성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복지 급여의 중복, 중첩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뒤,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함

[표 4-12]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 분	현 행	제 안 사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생략)	

구분	현행	제안사항
	<p>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u>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u> <신설 2020. 10. 20.></p> <p>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p>제12조의②항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와 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p> <p>제12조의③항 (개정안)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추가적인 복지 급여 지급 제공 시 아동의 연령을 더 높이거나(예시: 5세 이하 → 8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예시: 34세 이하 → 49세 이하)</p>

□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⑥: 양육 및 자립에 관한 사항

- 미혼한부모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제안
 - 미혼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그들의 자립 지원 강화를 정책 개선방안 중 자녀 양육 및 돌봄, 그리고 자립지원 측면에서의 법률상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에는 미혼모의 산전(産前)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실제 시설입소 또는 지원 사업 추진 시 미혼모의 임신초기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므로, 대통령령을 통해 미혼모의 산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시설 현황을 진단하여, 확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신초기 미혼모의 입주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건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①: 미혼모 보호 측면’ 참조)
- 또한, 시설 밖 미혼모 역시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정책 지원이 필요함

[표 4-13]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u>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u>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u>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초기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임신 초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 입소자 외의 미혼모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④: 미혼한부모 교육 관련

- 미혼한부모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 제안
 - 여기에서는 입양과 관련한 교육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혼한부모의 경우,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입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모자지원 제도를 통해 원가정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것은 ‘교육’이자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임

[표 4-14] 미혼한부모 교육관련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입양 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를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가 어려운 미혼한부모의 경우, 입양 동의 전 숙려기간을 충실히 보내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u>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u>이 시급함 • 예시: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양육을 위한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입양숙려제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입양동이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특례법 제13조제1항) • 지원대상: 미혼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⑥: 추가 제안(미혼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 관련

- 여기에서는 미혼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와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의 법률상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가족친화 논의에 주요한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담론 확산
- 첫째, 가족친화 논의에 주요한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근거 규정 개선을 제안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구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1항과 2항으로 구분하여, 미혼모 등의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적극적 개선 조치 방안)
 - 소극적 개선 조치 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미혼모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적극적 개선 조치의 예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혼모 등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표 4-15] 추가 제안을 위해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추가 제안 사항	<p>「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특별 조사 문항을 추가하여, 자녀양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개념정의: “양육취약가구”)에게 더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p>(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에 따른 <u>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혼모 등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p>

3.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혼한부모의 생애 전 주기적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자녀양육 결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를 취해야 하며, 태어난 아기가 그 기본권을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1절~2절을 통해 양육 미혼한부모 가구 관련 법·제도의 디커플링 현상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또는 부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미혼모 중심 지원, 자녀 양육 선택부터 경제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 중심의 지원, 출생부터 만18세 까지 아동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임

[표 4-16]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 예시

구 분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 예시	
미혼모 중심 (임신부터 출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초기, 중기, 해산/출산기: (현행) 초기 양육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 임신 초기부터 미혼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원하는 누구나 시설 입소를 통해 임신초기부터 해산 및 출산기까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미혼모·부 중심 (자녀 양육 선택부터 경제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 지위에 따른 보호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 보호 및 지원,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아동 4대 기본권 보장) • 미혼부 자녀출생신고및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확보 용이한 절차 마련 • 미혼한부모 지원 대상자 확대(소득기준 확대) • 중간지원조직 및 거버넌스 지역별 확충
	자립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 등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 강화 • 자립준비기 주거복지지원 확대(시설입소자) • 임신기부터 자립생활까지 연결되는 생활시설 수 확대및 기간 연장(지역 간격차해소) • 자녀 및 한부모 특성(장애 등)을 고려한 생활시설 다양화-입소 거부에 따른 대응방안

구분	양육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 예시	
	주거복지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정 보호 및 직접 양육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 시설 밖 한부모 지원체계 강화 • 기초 자산 부족 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 마련(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단독가구로서 인정 기준 확대(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로 인정 등)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민간서비스 바우처 지급 등 고려 • 양육 미혼한부모 출산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출산크레딧등 확대를 통한 미혼한부모의 노후생활 지원체계 마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대상으로 양육 미혼모 포함 • 양육 미혼한부모고용주 대상 지원 인센티브 검토 • '양육취약가구'를 정의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
아동 중심 (출생부터 만18세미만까지)	입양 숙려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출산 1주일 후 입양 또는 직접 양육 선택하는 모자지원제도(시설입소자 중심)⇒ 입양숙려기간 적정 지원체계 마련, 시설 입소가 어려운 미혼한부모 대상 입양 숙려제도강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미혼한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지원(돌봄, 교육 등) • 다태아 출생과 양육 시 추가 지원 • 시설입소자 및 시설 밖 미혼한부모와 아동을 위한 상담의료 및 지원정책 강화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주기적 지원 강화

누구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보호

임신초기 ▶ 임신 중기 ▶ 해산/출산기

- 초기 양육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이 아닌 임신초기부터 미혼모와 태아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
- 원하는 누구나 시설 입소를 통해 임신초기부터 해산 및 출산기까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임양숙려기간

: 출산 1주일 후 입양 또는 직접양육 선택

- 임양특별법 상 임양숙려 기간 직접 지원체계 마련
- 시설입소가 어려운 미혼한부모 대상 임양숙려제도 강화

직접 양육을 가급적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함

- 미혼모/부 보호 및 지원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개인정보 및 생활보호, 아동 4대 기본권 보장)
-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비 이행확보 용이한 절차 마련
- 미혼한부모 지원대상자 확대(소득기준 확대)
- 중고지원조직 및 가버넌스 지역별 확충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직접 양육(원가정 보호)

자립준비기

- 청소년 한부모 등 교육 및 자립훈련 제도 강화
- 자립준비기 주거복지지원 확대(시설입소자)

- 임신기부터 자립생활까지 연결되는 생활시설 수 확대 및 기간 단정(지역 간격차 해소)

- 자녀 및 한부모 특성(장애) 등을 고려한 생활시설 다양화
- 입소 거부에 따른 대응방안

주거

- 원가정 보호 및 직접 양육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 시설 밖 한부모 지원체계 강화
- 기초 자산 부족 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 마련(차세대 지원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단독가구로서 인정 기준 확대(주거분법 상 주거여부차별 인정 등)

경제활동

- 아이돌봄 민간서비스 비용저 지원 등 고려
- 양육 미혼 한부모 출산세예외제도, 자녀세예외제 금액 확대

- 출산크레딧 등 확대를 통한 미혼한부모의 노후생활 지원체계 마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실적 및 개발 상담 대상으로 양육 미혼모 포함
- 양육 미혼 한부모고용주 대상 지원 인센티브 검토
- 양육취약가구를 정의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

- 양육 미혼 한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지원(돌봄, 교육 등)
- 다태아 출생과 양육 시 추가 지원
- 시설입소자 및 시설 밖 미혼 한부모와 아동을 위한 상담 의료 및 지원정책 강화

[그림 4-17]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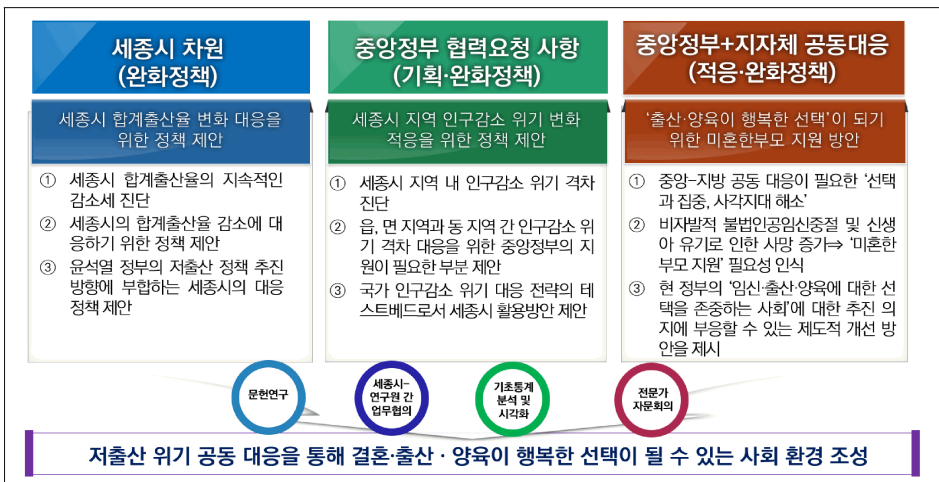
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측면

□ 연구의 목적과 세부 목적별 주요 내용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① 세종시만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②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설계하여, 중앙정부와의 공동해법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부 목적 ❶: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 세부 목적 ❷: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기획·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
- 세부 목적 ❸: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응·완화정책 아이디어 제시(양육미혼한부모 지원 강화)



[그림 5-1] 연구 세부 목적별 주요 내용

2. 연구의 차별성 측면

□ 연구 세부 목적에 따른 차별성

- 인구감소 위기에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세종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대안 제시
 - 세종시가 갖는 합계출산율 1위의 상징성은 비단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의 희망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합계출산율 감소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완화 정책을 제시함
-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 모색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 강조
 - 세종시를 포함한 전 지역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체계 제시
- 저출산 위기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시각의 교차점 모색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원칙과 전략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아,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냄
 - 지역 개인주의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양육미혼 한부모 지원 등)함으로써 지역 간 무분별한 인구경쟁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

□ 연구 추진 방식의 차별성과 한계: 인구정책 유형에 맞춘 옴니버스 형태 구성

- (옴니버스 형태의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각각의 장별로 정부의 인구 정책 3가지 유형, '완화, 적응, 기획'을 고려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의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구성과는 상이한 구성으로 추진되어, 주제별 범위가 크고 다양함

- 이에 따라 기존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의 정책 제안 사항을 적극 활용하였고, 선행연구에게 제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진단을 추진하였음. 따라서 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근거 및 분석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힘
- (세종시-대전세종연구원 간 협업의 결과물) 세종시(단체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규제혁신담당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 등),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2023년 2월)에 따라 일부 인구가동 현황 자료에 대한 충청지방통계청의 분석 지원이 이루어짐

2절 정책 제안

1. 세부 목적별 정책 아이디어 요약

1)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 (세종시 차원) 출산지원(출산축하금)에 대한 차등적 지급 방안 검토 필요
 - 출산지원(출산축하금) 둘째아부터 지급액 확대 또는 인접 지자체(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금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함
 - 출산 지원의 방식은 반드시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다만,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 결정에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세종시 차원⇒ 중앙정부 공동 대응)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검토 필요
 - 아빠 장려금(「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나 공무원은 제외 대상임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고, 자녀도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신청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180만원),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의 공동 대응 필요 사항)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 제도 시행'을 통해 출산의도가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다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므로,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

- 세종시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저출산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물론, 해당 제도 적용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첩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 대상 적용 시 지원 내용을 일반 시민과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차원) 적극적인 경력단절 해소로 출생-돌봄-교육-노동의 생애전반 환경의 공정성 제고

- 현 정부는 출생-돌봄-교육-노동 생애전반 환경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인구정책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해소는 이것의 주요한 전략이자 목표임
-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활성화 추진과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을 통한 근로환경에서의 공정성 제고
 - 세종시에서 현재 시정 4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지향하는 바는, 세종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세종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대표 사업계획의 하나임. 세종시 관내에서 기존 제도(가족친화인증 등)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최성은 외, 2023)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신설·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사업은 세종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운영 중이므로, 관련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 우수 사례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중앙-지자체 공동)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생애 전 주기적인 지원 강화 필요**

- 첫아이 출산연령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임신(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시: 국가 지원에 세종시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난임 여성 중 건강보험 횡수 소진자가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후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다자녀 또는 다태아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 검토 필요
- 높은 교육열을 고려한 출산장려책 마련 검토 필요(예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발전특구 혜택)
 - 2022년 기준, 자녀 1인당 사교육비 평균 금액,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4위 차지(41.8만원, 전국평균 41만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사교육비를 고려하여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중앙-지자체 공동) 세종시를 다태아 출생과 다둥이 양육에 있어 최적의 도시로 만들기**

- 다둥이 돌보미 지원 사업
 - 난임증가로 인하여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다태아임신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다둥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사회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국가차원에서의 다태아 관련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지원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출산전후 휴가가 30일 더 길게 부여되는 것일 뿐, 다둥이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서비스는 찾기 어려움
 - 이에 다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최대 40일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자녀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는 산후조리기에 국한되지 않음. 따라서 그 기간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까지 고려한 생애 전 주기적 시각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다태아 출산에 따른 출산크레딧 확대 및 난임치료 및 시술 의료특구 조성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중앙-지자체 공동) 국정과제 + 시정 4기 단체장 공약 + 정책 아이디어 연계**
- 교육발전특구 조성 시 다둥이 또는 다자녀 가구와 연계된 혜택 마련
 - 세종미래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추가(청년 부부, 다자녀·다둥이 가정 지원 방안 연계)
 - 3장에서 제안한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으로 다자녀·다둥이 가정을 위한 특화된 마을돌봄지원 사업을 참조
- (세종시 차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출범 10년이 넘어서면서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유형의 분화현상이 나타남. 대도시권 지역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경우 젊은 세대의 일자리, 교육 등으로 인한 유입이 많고 비/미혼율이 높은 곳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임
 - 지역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경청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년들의 인구이동을 관찰해야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함

2) 세종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제안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운영(중·장기적 관점)

-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그 재원의 조달과 활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지역 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의 국가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인구 불균형과 인구감소 위기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구 분산을 위한 적극적인 완화, 기획, 적응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적극적 관점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각 지역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은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함
- 다만, 이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기초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 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세종시 배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임

지역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 (대 정부 건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00분의 10(광역지원계정 B)’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할 중앙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 드림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시기·행정체계의 특수성,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설치 목적 달성,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먼저 할당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어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이 세종시에 배분될 경우,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으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과 (가칭) 광역인구미래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조망해보고자 함
- 세종미래마을조성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도농복합도시 인구감소위험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함

□ **농촌 정주환경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한 과제**

-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은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전략 중 ‘기획정책과 적응 정책’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농촌 정주환경 모델 설립을 위한 다부처 통합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세종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에서 세종시 토론자료의 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미래 마을’을 제시하였음
 - 세종시, 새마을회, 농협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빈집 철거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빈집 별착을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건의, 빈집법 통합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래 농촌마을 모델 구축과 확산을 강조함
- 국가 차원의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시작 모델로서의 확장
 - 새마을회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 빈집정비의 선도 모델이 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새 미래 마을 운동”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예측되는 미래에 맞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며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속성을 반영하여 인구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새 미래 마을 운동의 주안점 제안
 - (개념정의) 빈집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운동(movement)

- (의제 1) 세대 간 협력으로 마을 돌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1인 가구 돌봄, 고독사 예방 등
- (의제 2) 안전한 농촌 지역 만들기
- (의제 3) 다태아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 강화
- (의제 4) 워케이션 + 농촌 관광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
- (재원조달 방안: 단기적)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배분받을 경우,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모델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적)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운용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 농림부(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행정안전부(보행환경개선, 마을기업 육성 등), 국토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문체부(국도여행 활성화 사업 등) 등이 있음
 - 각각의 부처별 공모가 개별적·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재활성화 계획의 적기 지원에 한계
 - 특히, 도농복합도시이자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경우, 도심지역 외곽의 농촌은 인구소멸이 진행되어도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추진체계 제안: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 지역의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위기에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차원에서의 대안
- (추진체계 제안) 시·도연구원 활용한 전략기획 조직 운영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추진체계 마련
 - 지역 모니터링(합계출생률, 인구유입·유출, 생활인구, 체류인구, 인구 감소지역 실태조사 등), 단기 사업 추진, 중장기 전략 마련(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등), 기초 자치단체 지원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재정적 차원) 국비 및 지자체 자체 재원 매칭 활용
 -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세종시를 포함한 시·도지역에 배분함으로써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5-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구 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안)
근거 법·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 설치·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공공기관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도 연구원에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외에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부재. 센터 설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지원, 관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인구미래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상향식 전략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
재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0년 후 일몰)	국비(지역소멸대응기금 등) + 시비 매칭
차별성	하향식. 인구감소 지정 지역 한정.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초점. 1개 공공기관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상향식. 제외 지역 없음.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자연적 증가(출생)와 감소(사망, 고령화)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 가능

- (기획+완화+적응정책 추진체계)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활용한 중앙-지방 공동 대응은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생활인구와 인구이동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축적하고, 출산 결정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시와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상생연구시스템이 모든 지역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 방안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표 5-2] 양육 미혼한부모지원 관련 사업 유형별 개선방안

사업 유형별	문제점(디커플링 현상)	개 선 방 안
① 미혼모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은 여전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기증 • 미혼한부모의 경우,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급부 행정의 시각자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신청주의 제도의 한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임신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상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상의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잘 자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시설임소자 중심의 상담·의료 지원의 한계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장구 일원화, 홍보 • 읍면동 주민센터 비공개 안심상담 창구 개설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교육(개인정보보호 등) 강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행 거주기간 연장(임신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안정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행의 경우, 미혼모의 장애 여부,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미혼모·부 지원사업을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지원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청소년에 한해 초기 지원이 강화되었음 • 출생신고도 양육지원에 기본 요건이나 출생신고가 친자 부인소송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임소를 하더라도 더이상 이용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퇴소통보를 받기도 함 • 이용 대상 조건이 이용의 책임성을 묻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융통성이 없어 실제 돌봐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를 더욱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밖 양육 미혼한부모를 위한 상담 의료 및 지원 정책 마련 • 실제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보면, 20대 이상자 비중이 크므로, 청소년 중심 지원 체계가 시각자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지원 대상자 연령층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출생 미신고 미혼부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절차 개선안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만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검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 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필요(시설보호 및 복지서비스)
③ 양육 및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소거부, 자격요건의 미스매치, 지원체계가 이탈 요인 산재, 시설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한부모 지원” 거점기관 추가 설치 및 역할 확대 • 양육 한부모 지원 요건의 소득수준 과감히 폐지 또는 중위소득

사업 유형별	문제점(디커플링 현상)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단계별로 기본생활지원 (1차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지원(2차 지원시설), 모자가족 복지시설(3차 지원시설)로 구분됨(2023년 10월 12일 규칙 개정 이전 기준). 1차에서 2차, 그다음 3차로 이동하면서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성이었음 • 그러나 시설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단절이 발생하며,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음 •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미혼한부모의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 • 양육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일·생활균형 지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조정(예시: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양육 한부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 지역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시설 단계별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미혼모가구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양육 미혼모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제 및 개발 상담 등 강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더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당사자의 조부모와 함께 동거 시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구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약가구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양육 미혼모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제 및 개발 상담 등 강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④ 미혼한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임양특례법에서는 아동 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후 친생부모의 임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 이 시기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숙려기간(1주일) 동안 모자 지원 강화를 통해 원가정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양숙려제도 원칙 대한 질적 수준 제고 필요(상담과 교육 지원 강화)
⑤ 추가 제안: 미혼한부모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내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 민약, 미혼부 출생신고 전 지원 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된 경우, 신청 시점까지 소급 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과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때 법적 분쟁 및 환수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될 여지가 크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데이트 자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정책 제안을 담음

□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① : 미혼모보호 측면

[표 5-3]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제1항은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라는 특례조항이 있음. 그러나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가 아닌,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기 위한 특례조항일 뿐, 양육 미혼한부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님 • 제5조의2제2항에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에 대한 특례를 미혼한부모를 고려하여 더 두텁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제4조(정의)에 2호를 추가하여,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직계 존속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세대를 이룬 모자 또는 부자 가구를 포함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2023. 4. 11.> 1. 출산지원시설: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4월 시설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이 재편됨. 그러나 ‘미혼한부모’에 정책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미혼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를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함

구분	현행	제안사항
	<p>2. 양육지원시설: 생략 3. 생활지원시설: 생략 4. 일시지원시설: 생략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미혼모의 경우, 임신초기부터 시설 거주 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또는 기간 연장 조치 필요(예: 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시설 입소 시 임신초기부터 우선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대 설치·운영하여 한 지역 내에서 유형별 시설을 임신·출산·양육시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예: 제19조의2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유형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할 것)
<p>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거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입소 중심의 미혼한부모 지원의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이 '노력하여야 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예시: '주거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본인 및 자녀의 장애나 소득에 따라 국도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② :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표 5-4] 미혼한부모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상 개선 과제(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 사항
한부모가 축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생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학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제12조의 ②항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아동양육비와 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 제12조의 ③항 (개정안)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추가적인 복지 급여 지급 제공 시 아동의 연령을 더 높이거나(예시: 5세 이하 → 8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시: 34세 이하 → 49세 이하)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⑥ : 양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표 5-5]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에 임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초기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임신 초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율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 임소자 외의 미혼모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④ : 미혼한부모 교육 관련

[표 5-6] 미혼한부모 교육관련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행	제안사항
임양특례법	<p>제13조(임양동의의 요건 등)</p> <p>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 이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p> <p>※ 임양숙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p>제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임소가 어려운 미혼한부모의 경우, 임양 동의 전 숙려기간을 충실히 보내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임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예시: 아동최우선의 원조를 고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양육을 위한 상담방법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도록 조차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 행	제 안 사항
	<p>「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상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동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특례법 제13조 제1항) • 지원대상: 미혼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⑥ : 추가 제한(미혼한부모 경제적 지원 및 아동의 기본권 보호와 권의 증진 측면) 관련
[표 5-7] 추가 제한을 위해 법률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연구진 제안)

구분	현 행	제 안 사항
추가 제안 사항	<p>「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상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상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양육취안가구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p>
추가 제안 사항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p> <p>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 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 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 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 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미혼모 등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경력실계 및 개발 상담 등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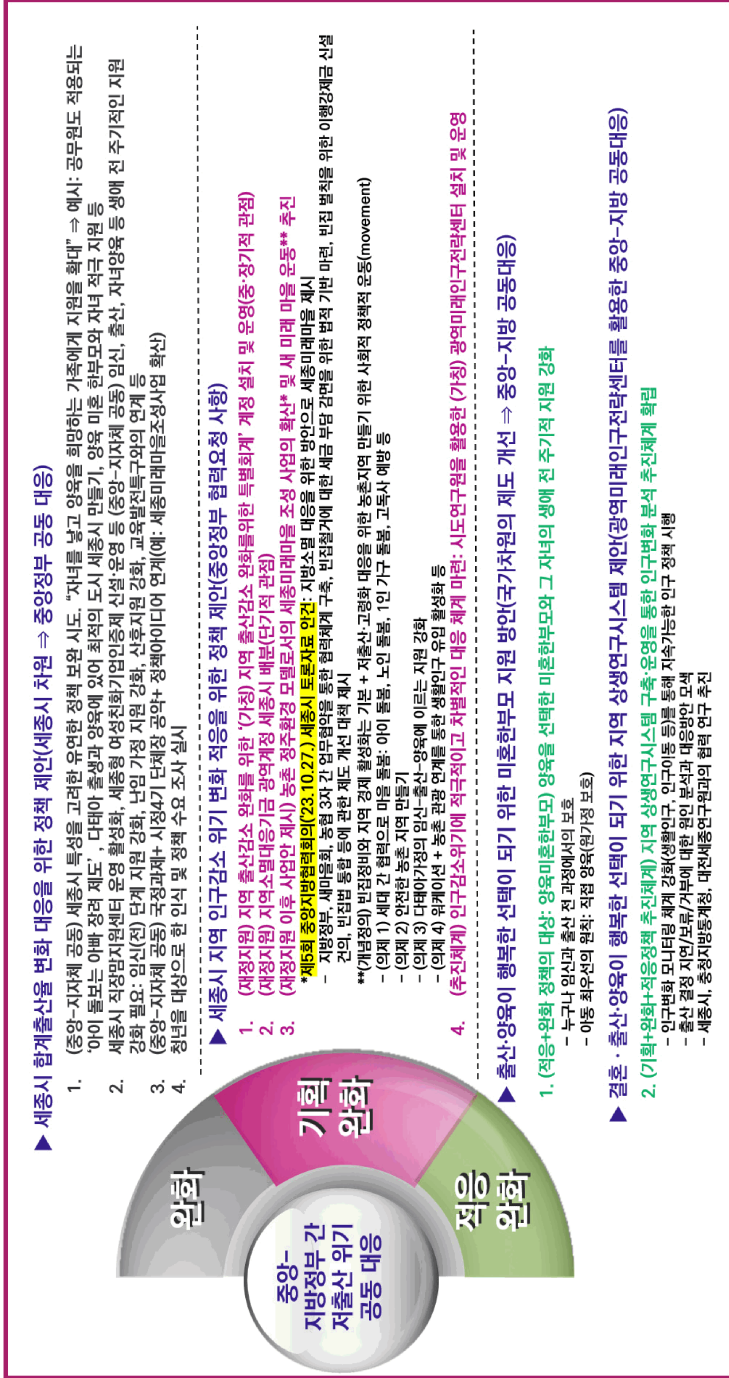
□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의 전 주기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



[그림 5-2] 양육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생애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

2. 정부의 인구정책 유형별 정책 제한

□ (정책 제언 종합)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한



[그림 5-3] (정책 제언 종합)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한

참고 문헌

- 노충래·김원희(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23), <주택 공급(분양·임대) 실적 및 계획(22~24)>.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2).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 포럼 자료집>. 2022년 1월 24일자.
- 류정희·이상정·이주연·권지성·김진석·이현주(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동진·김혜성·김희숙·이설아·엄주희·권오용(2017),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323-372.
- 변수정·김유경·최인선·김지연·최수정· 김희주(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 국내 입양 소년·소녀 가정 현황>.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서울연구원(2023),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 인포그래픽스 341호. 2023년 3월 2일자.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실 내부자료(2023), <세종특별자치시 건의자료(2023년 2월 10일자)>.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3년 1월 6일자 업로드 자료)>
- 윤동경·김연옥(2019),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비교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6(1)호
- 이상림(2018), <시군구 지역출산율과 신혼부부비율>,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우·양호정(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 이윤경(2021),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No.291. 2021년 1월.
- 임해영·이혁구(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정덕진(2019), 양육미혼모의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 최성은(2018),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은·유삼현(2019), <세종시 출생 지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은·최영준(2022),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재이해: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제39권 1호
- 최성은 외(202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2020),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2022년 5월 22일자.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3년 3월 16일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여성가족패널조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2022년 8월 16일자.

허민숙(2022),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NARS 입법정책>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국내이동통계>, 각 년도.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신혼부부통계>, 각 년도.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각 년도.

부 록

[부록 표 1-1]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 현황

구 분	대전광역시	전남 영광군
인구수	1,445,214명('23.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52,258명('23.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19세~34세 청년인구 총인구수대비 23.6% 차지(348,000명)	(23년 4월 기준) 19세~34세 청년인구 총인구수대비 13.8% 차지(7,236명)
	'25년 144만⇒'30년 140만⇒'50년 125만	(중립 시나리오*) '25년 52,641명⇒'30년 51,031명⇒'40년 47,025명
중위연령	'20년 41.8세⇒'30년 48.1세 ⇒'50년 55.9세	(전남) '20년 48.5세⇒'30년 55.8세⇒'50년 64.7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년 21만명⇒'35년 38만명 ⇒'50년 47만명 '20년 13.8%⇒'35년 28.1% ⇒'50년 37.8%	'23년 16,134명 30.8%
총부양비	'20년 35.7%⇒'35년 58.4% ⇒'50년 89.6%	(전남) '20년 52.9%⇒'35년 83.1% ⇒'50년 130.4%
노년부양비	'20년 18.7%⇒'35년 44.5% ⇒'50년 71.7%	(전남) '20년 35.0%⇒'35년 69.9%⇒'50년 114.2%
유소년 부양비	'20년 16.9%⇒'35년 13.8% ⇒'50년 17.9%	(전남) '20년 17.9%⇒'35년 13.2%⇒'50년 16.2%
노령화자수	'20년 110.6명⇒'35년 322.1명⇒'50년 399.8명	(전남) '20년 195.0명⇒'35년 528.8명⇒'50년 701.1명
출생아수	7,677명('22년)	393명('22년)
합계출산율	0.84('22년)	1.80('22년)
조출생률	5.3명('22년)	7.6명('22년)
자연증가율	'20년 -0.01%⇒'30년 -0.07%⇒'50년 -0.79%	(전남) '20년 -0.44%⇒'30년 0.68%⇒'50년 -0.49%
학령인구 (6~21세)	'20년 26만명⇒'35년 14만명 ⇒'50년 14만명	6,079명('23년 4월 기준)

주* : 광주전남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영광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의 제2장 3절의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비관, 중립, 긍정) 중 중립 시나리오를 가져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광주전남연구원(2022), <영광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부록 표 1-2] 대전시 주 출산연령대 여성 인구 전입사유 및 사유별 비율

(단위: 명, %)

전입사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업	9624	10099	9719	10754	10595	10,251
가족	11790	11730	11877	12092	10920	10,749
주택	16641	15294	16176	17474	14771	13,256
교육	1131	1184	1114	1158	997	955
주거환경	1425	1644	2041	2586	2202	2,090
자연환경	155	166	152	152	141	108
기타	2824	3209	2431	2817	2682	2,776
직업	17.9	18.3	18.2	18.7	19.0	19.4
가족	19.5	19.0	19.2	18.4	18.8	20.2
주택	12.8	12.6	13.2	13.0	13.4	13.8
교육	8.6	8.7	7.9	7.6	7.0	6.3
주거환경	16.0	15.9	16.4	17.6	16.8	17.7
자연환경	8.8	8.8	8.2	8.3	8.6	8.5
기타	16.5	16.3	14.1	14.9	14.5	14.6

주: 대전시 주 출산 연령대(25~39세) 여성의 전입사유 비율= (대전시 여성(25~39세)인구의 각 전입 사유) ÷ (대전시 전체 인구의 각 전입 사유) x 100

자료: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18~2022년 MDIS 분석 결과(충청지방통계청 제공) 연구자 재가공

[부록 표 1-3] 양육 미혼한부모 가구 관련 법·제도 현황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민법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p>※ 부모의 법적 결혼 유무에 따라 자녀의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음. 미혼부, 미혼모의 자녀의 경우, 혼인 외의 자에 해당</p> <p>제781조(자의 성과 본)</p> <p>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p> <p>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p>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미성년 미혼모	<p>제909조(친권자)</p> <p>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p> <p>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p> <p>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p> <p>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p> <p>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p> <p>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p> <p>[전문개정 1990. 1. 13.]</p> <p>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p> <p>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 3. 31.></p> <p>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p> <p>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p>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 항제2호	출생 신고 시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p>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p> <p>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p>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인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p>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p>
	출생신고 의무자	<p>제46조(신고의무자)</p> <p>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p> <p>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거하는 친족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p> <p>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p>※ 2016년 법 개정. 증명서 발급 방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가 강화됨,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일반증명서가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p> <p>※ 예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면 자녀는 생존한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되므로 미혼모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면 자녀는 기재되지 않음. 다만, 미혼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재가 필요한 경우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다만 일반증명서의 사용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 봐야할 문제(송효진, 2019년 70쪽)</p>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p>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p> <p>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p> <p>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p> <p>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p>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p>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태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p> <p>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정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p>	<p>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p> <p>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녀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p> <p>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p> <p>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p> <p>[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p>
<p>한부모가족 지원법</p>	<p>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p>	<p>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p> <p>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p> <p>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p> <p>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p>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p>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p> <p>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p> <p>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07. 10. 17.]</p>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p>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학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p> <p>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p>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당</p>

법제명	구 분	법 조 항
		<p>· 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 [중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8. 12. 18.>]</p>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8.] [중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8. 12. 18.>]</p>
	제19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p>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p> <p>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p> <p>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p> <p>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p> <p>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p> <p>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p> <p>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p> <p>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p> <p>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p> <p>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p> <p>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p> <p>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p> <p>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등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p>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p> <p>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p> <p>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11. 4. 12.]</p>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 양육 비혼모가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부터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자녀의 생부가 특정되어야 하고 연락처 등 정보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가 많은 이혼 한부모보다도 더 지난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송효진, 2019:79)</p>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의 자녀	<p>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비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20. 5. 19., 2022.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p> <p>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p> <p>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본조신설 2013. 5. 28.]</p>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p>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p>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노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p>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p> <p>[전문개정 2007. 10. 17.]</p>
입양특례법		<p>제1조(목적)</p> <p>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p>제3조(국가 등의 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제명	구분	법 조 항
		<p>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13조 (입양동의를 요건 등)	<p>제13조(입양동의를의 요건 등)</p> <p>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p> <hr/> <p>※ 입양숙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입양동의를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특례법 제13조제1항) - 지원대상: 미혼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

ISBN 979-11-6075-414-8 93350